

발간등록번호

12-1790242-000042-01

| 2021. 12.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 2021. 12.

발 행 인 | 정현찬

발 행 처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우) 03171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T타워 16층

대표전화 02-6260-1200

인 쇄 처 | 학예사 402-05-90488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기관] 재단법인 전북연구원

연 구 친

연구책임 **황 영 모**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배 균 기**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희 진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인 우 |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문 지 영 | 한살림연합 국제연대실 실장

정 호 중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이 병 훈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요약

1. 연구목적과 내용

□ 연구목적

- ‘국가식량계획’의 ‘먹거리 보장,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 정책의 실행을 위해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 마련
- 첫째,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국가식량계획에 근거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정책’ 마련에 필요한 정책자문 근거 마련
- 둘째, 범 부처 합동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먹거리돌봄’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부처간 정책협업 추진의 근거 마련

□ 연구내용

- 첫째, 먹거리돌봄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 돌봄과 먹거리돌봄’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 먹거리 체계’의 관점으로 정리함
- 둘째, 우리 사회 먹거리돌봄의 배경인 먹거리 보장 ‘현황과 수준’이 어떠한지 진단하고, 먹거리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의함
- 셋째, 먹거리돌봄 관련 사례를 ‘지역사회+통합돌봄+푸드플랜’의 관점에서 선정하고, 사례별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먹거리돌봄 과제의 시사점을 논의함
- 넷째, 현황진단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대응방향을 정리하고, 부처가 정책을 개선하고 이행할 수준을 고려하여 정책방안을 제안함

2. 주요 연구결과

□ 먹거리돌봄 개념 검토

- 첫째,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파악하는 ‘먹거리돌봄’의 관점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여러 사유로 자립적 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 먹거리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세부수단 중 하나임

-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먹거리돌봄 대상은 복지정책 분야의 방법을 따라 선별하게 되며, 주요한 정책은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합하는 방향에서 구성됨
- 즉, 먹거리 불안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생애주기의 특정기간(고령자 중심)에 취약계층이 되어 먹거리 취약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임
- 둘째,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파악하는 ‘먹거리돌봄’의 관점임.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논의에서는 영양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먹거리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영역을 강조하고 있음
 - 먹거리 불안은 관행적인 먹거리 체계가 야기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푸드시스템(지역 먹거리 체계)으로 보완해야 하며, 그 방향이 먹거리 기본권임
 - 푸드플랜에서 먹거리돌봄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수준의 문제로 나타나며, 누구나 일시적으로 영양 불균형의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함
- ‘푸드플랜 정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은 정책목적이 다르지만, 공통 영역(먹거리돌봄)이 있고, 정책 간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기회가 만들어짐
 -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응 전략이며,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복지)의 다른 분야 정책과 상호작용함

□ 먹거리 보장 현황진단 결과와 논의

- 첫째, 높은 결식률과 영양교육 미경험자가 많아 사회적 대책이 중요함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19년 기준), 결식인구 37.37%,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1.8%, 영양교육 미경험자 86.14%로 나타남
- 둘째, 소득수준·연령·지역에 따른 먹거리 취약성 대응이 필요함
 - 20대~50대가 전체 결식자 58.5%, 먹거리 부족 경험 60대~80대 이상 60.3%, 소득 1분위+2분위 전체 결식자의 80.1%, 영양교육 미경험 20대~60대 82.2%, 결식률은 도시 86.8% > 농촌 13.2%, 식비부족 경험자 비율 도시 79.8% > 농촌 20.2%,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도시 77.3% > 농촌 22.7%
- 셋째, 지역사회 먹거리 기반이 먹거리 취약성을 낮추는 데 기여함

- 먹거리 결식률을 낮추는 것은 단순한 영양공급을 넘어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 결식률에 영향을 주는 기반(먹거리 인프라)과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 먹거리 거점, 사회복지 기반이 결식률을 낮추는 요인이 됨을 확인함

□ 먹거리돌봄 사례분석 결과와 논의

- ‘①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한 먹거리돌봄 확대 방안, ②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실천활동의 정책화 방안’에 중점을 두어 사례를 분석하였음
 - 지역사회 조직자원이 결합해 사업·활동으로 실행하고 있고, 방식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지자체 자체시책, 민간 실천활동’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첫째,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이뤄지는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는 다른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여러 시사점을 보여줌
- 둘째, 지역사회에서 먹거리돌봄 서비스(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는 주체 (행정+민간), 돌봄방식(H/W+S/W), 돌봄대상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셋째, 먹거리돌봄이 절대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 추진체계가 강조됨
 -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돌봄 : ①서귀포시 통합돌봄 ‘흔디거념’, ②부산시 진구 ‘온마을 사랑채’, ③부산시 북구 ‘공유 먹거리돌봄’
 - 지자체 지원 먹거리돌봄 : ①서울시 ‘마을부엌’, ②부천시 ‘마을부엌’, ③대전 동구 ‘나눔냉장고’, ④전주시 ‘엄마의 밥상’, ⑤남해군 ‘농촌마을부엌’
 - 민간 주도 먹거리돌봄 : ①한살림제주 ‘지역살림’, ②익산시 ‘청년식당’, ③따뜻한 마음 ‘선한 영향력 가게’
 - 외국의 먹거리돌봄 : ①뉴욕시 ‘City meals on wheels’, ②뉴욕시 ‘City Harvest’, ③독일 ‘Food Sharing’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정책과제

1. ‘먹거리돌봄 지원 법률’의 근거 마련

- 먹거리돌봄은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자립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돌봄’의 기초로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 근거를 마련

- 먹거리 불안은 ‘지역 먹거리 체계’로 대응해야 하므로 사회복지 제도가 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정책과제-요약]

진단과 방향	대응과제	제안 프로그램(안)	추진근거	관련부처
‘근거’의 마련	해당 법률의 제정과 개정	①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법률제정	복지부
‘융합’을 실현	지역사회 돌봄에 먹거리를 융합	②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돌봄 강화	법률제정 조례제정 표준모델	복지부 농식품부 행안부
		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용 먹거리돌봄 확대	정책활용 활동촉진 지원활동	복지부 지자체
‘고립’을 연결	마을 공동밥상 먹거리돌봄 확대	④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	정책활용 지침개선	국토부 농식품부
‘식재료’ 보완	돌봄 식재료에 지역 먹거리 공급	⑤ 먹거리돌봄 식재료 조달 방식 개선	법률개정 정책개선	농식품부
‘체계’를 구축	지역먹거리돌봄 실행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 구축	법률근거 조례제정	복지부 지자체
		⑦ 먹거리돌봄형 예비사회적기업 정책도입	정책활용 지침마련	농식품부 고용부
‘영향’을 확대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확대	⑧ 먹거리 기부 촉진과 선한영향력 거점 확대	정책개선 민간협력	협력재단 농식품부
‘불안’을 감소	일시적 취약계층 먹거리돌봄	⑨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돌봄 정책 추진검토	중기정책 검토	농식품부 지자체

정하지 못하는 먹거리 지원 근거를 ‘농정 영역’의 법률적 근거를 활용

2.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한 먹거리돌봄 강화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서 다루는 통합돌봄 주요사업으로 ‘먹거리돌봄’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따른 자치입법(조례)에 먹거리돌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안)을 마련
- 선도사업 지역의 모니터링을 반영하여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 등의 먹거리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표준모델(안)’ 마련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규정 구조의 개선]

기존 법률(안)	개선 법률(안)
① 보건의료 이동지원 서비스	
② 재활치료 서비스	
③ 장기요양·일상생활지원 서비스	
④ 주거지원 서비스	
	→ (추가) ①~④의 서비스는 동일
	⑤ 먹거리돌봄 서비스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먹거리돌봄 확대

- 취약계층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건강한 식생활 유지, 영양상태 개선 할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기관 발굴과 서비스를 준비
- 시도별 ‘먹거리돌봄’ 프로그램 제공 기관을 지자체가 기획·발굴하고, 사업을 담당하는 시도별 지원기관(각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이 역할 수행

4.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로 먹거리돌봄 강화

- ‘생활 SOC복합화 사업’의 지침을 개선하여 ‘먹거리돌봄 커뮤니티키친’ 조성을 추진(생활SOC 복합화 5대 사업 중 ‘복지시설 특화형’에 반영)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침을 개선, 지역특화 재생사업 중 ‘지역사회통합 돌봄 특화모델’에 ‘커뮤니티키친, 식생활 체험공간’ 등을 명시하여 시설 구축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중 세부 정책사업에 커뮤니티키친 시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사업의 지침으로 제시(나눔냉장고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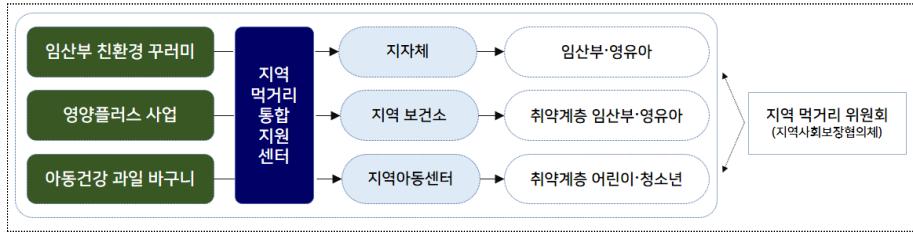
[커뮤니티키친 구축 시 고려사항]

- 주요시설 : 조리·취사 공간, 식사공간, 교육실, 다목적실, 도시텃밭 등
- 운영주체 : 지역주민 주도 공동체 방식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비영리법인 등)
- 프로그램 : 로컬푸드를 매개로 하는 먹거리돌봄 관련 활동·사업, 공동체 먹거리 지원 활동 프로그램 (돌봄밥상, 공동체밥상, 소셜다이닝 등)

5. ‘먹거리돌봄 프로그램 식재료 조달’ 방식의 개선

- 먹거리돌봄 식재료 조달 방식의 개선은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근거를 통해 추진
- 여러 부처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정책)의 식재료’ 조달·공급을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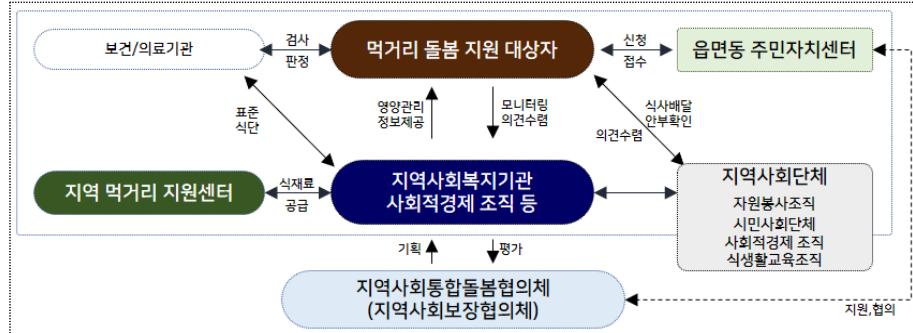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식재료 조달방식 개선]



6.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의 구축

-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체’에 먹거리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 먹거리 기본조례에 따른 ‘지역 먹거리 위원회’에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담당 주체로 구성된 ‘(가칭)먹거리돌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포함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와 기 수립·시행 중인 지역 푸드 플랜에 지역산 식재료를 식품지원 정책 사업에 우선 공급하는 체계 마련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7.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의 도입

- 먹거리돌봄에 특화된 예비 사회적기업을 농림축산식품부 부처형 정책으로 도입,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서비스 촉진과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목적과 대상사업 분야, 지원사항 등을 마련

8. ‘먹거리 기부 촉진과 선한 영향력 거점 확대’ 지원

- 먹거리돌봄 활성화는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발적인 취약계층 먹거리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민간기업·공공기관의 먹거리 기부활동 촉진, 선한 영향력 가게의 확산 지원 등

9.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정책' 추진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고 등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직면하여 겪고 있는 최악의 배고픔에 긴급 대응하는 체계 마련 요청
- 최소한의 기간을 지원하되, 지속 지원 여부 등은 지역사회보장제도(기구) 등이 맡아서 판단하는 방안으로 추진

차 례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6
3. 주요개념 검토	8
제2장. 먹거리 보장 현황진단	13
1. 먹거리 취약계층, 수준 진단	17
1.1.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17
1.2. 지역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19
1.3. 연령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24
1.4. 소득수준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27
2.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관계분석	29
2.1. 선행연구 검토	29
2.2. 분석모형 설정	30
2.3. 분석결과 논의	33
2.4. 분석의 한계점	36
3. 먹거리 보장 진단, 종합논의	38
3.1. 높은 결식률과 영양교육 미경험자, 사회적 대책	38
3.2. 소득수준·연령·지역에 따른 먹거리 취약성 대응	39
3.3. 지역사회 먹거리 기반을 통한 먹거리 취약성 하향	41
제3장. 먹거리돌봄 사례분석	43
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사례	47
1.1.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 ‘흔디거념’	47

1.2. 부산시 진구, 건강한 밥상 ‘온마을 사랑채’	50
1.3. 부산시 북구, ‘공유공간 먹거리돌봄’	53
2. ‘지자체 지원’의 먹거리돌봄 사례	57
2.1. 서울시, ‘함께 모여 만드는 마을부엌’	57
2.2. 부천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61
2.3. 대전 동구, 음식나눔 ‘나눔냉장고-채움가게’	63
2.4. 전주시, 밥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65
2.5.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체 마을부엌’	67
3. 민간 차원의 먹거리돌봄 사례	69
3.1. 한살림제주, ‘먹거리돌봄 지역살림’	69
3.2. 익산시, 청소년 자립 ‘청년식당’	72
3.3. 따뜻한 마음이 만든 ‘선한 영향력 가게’	74
4. 외국의 먹거리돌봄 사례	76
4.1. 뉴욕시, ‘City meals on wheels’	76
4.2. 뉴욕시, ‘City Harvest’	79
4.3. 독일, ‘Food Sharing’	82
5. 먹거리돌봄 사례 종합논의	85
5.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효과와 수준 확인	85
5.2.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주체, 방식, 대상 확대	87
5.3. 사회적 영향 확대와 지역사회 추진체계 강조	88
제4장.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정책과제	91
1. ‘먹거리돌봄 지원 법률’의 근거 마련	96
1.1.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먹거리돌봄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96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취약계층 식품지원 근거 활용	99

2.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한 먹거리돌봄 강화	102
2.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강화	102
2.2. 법적 근거와 서비스 표준화 기준 마련	105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먹거리돌봄 확대	110
3.1.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돌봄 확대	110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먹거리돌봄 결합	111
4.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로 먹거리돌봄 강화	115
4.1. 지역 먹거리돌봄 실천공간 확대 추진	115
4.2. 부처 사업 활용 커뮤니티키친 조성 확대	116
5. ‘먹거리돌봄 프로그램 식재료 조달’ 방식의 개선	122
5.1. 식재료 지원사업의 조달체계 개선	122
5.2. 지역 먹거리 공급 선순환체계 구축	123
6.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의 구축	125
6.1. 지역사회 내 먹거리돌봄 전달체계 구성	125
6.2. 법률·조례를 통한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126
7.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의 도입	129
7.1.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129
7.2. 먹거리돌봄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130
8. ‘먹거리 기부 촉진과 선한 영향력 거점 확대’ 지원	132
8.1. 먹거리 기부와 나눔 활성화 확산	132
8.2. 먹거리 기부촉진 및 선한 영향력 거점 확산	133
9.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정책’ 추진 검토	137
9.1. 비상 상황시 긴급 먹거리 지원 추진	137
9.2. 지역자원 활용 신속한 긴급 먹거리 제공	137

참고자료. 141

부록. 145

1.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안) 147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74
3. 먹거리 지원 주요 정책 178
4. 먹거리돌봄 관련 주요현황 183

표 차례

제1장

표 1-1. 문제의식과 연구과제	7
표 1-2. 연구의 내용·구성·방법	7
표 1-3. ‘돌봄의 사회화’에 관한 논의	9

제2장

표 2-1. 먹거리 보장 관련 현황 진단 분석방법	16
표 2-2. 먹거리 지원(돌봄) 필요자 비율	18
표 2-3. 광역 시·도별 결식률 비중 (2019년)	20
표 2-4. 광역 시도별 식비부족 경험 비중 (2019년)	21
표 2-5. 광역 시·도별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비중 (2019년)	23
표 2-6. 소득분위별 결식률 (2019년)	28
표 2-7. 소득분위별 식비부족자 비율 (2019년)	28
표 2-8.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관계분석 결과	34

제3장

표 3-1. 먹거리돌봄 사례분석 대상	46
표 3-2. 서귀포시 커뮤니티키친 운영현황	48
표 3-3. 부산 진구 식사·영양관리사업 업무협약의 기관별 역할분담	51
표 3-4. 서울시의 마을부엌 기능	58
표 3-5. 서울시의 마을부엌 유형	59

제4장

표 4-1.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정책과제	95
표 4-2.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규정 구조의 개선 내용	99
표 4-3. 지역사회통합돌봄 내의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검토사항	108
표 4-4. 커뮤니티키친 구축 시 고려사항	120
표 4-5. 먹거리돌봄 관련 주요 정책 프로그램	122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새로운 정책의 상호작용과 통합화 과정	12
------------------------------	----

제2장

그림 2-1. 결식률과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율	17
그림 2-2.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	18
그림 2-3. 도시-농촌 지역의 '결식률' 비교 (2019년)	19
그림 2-4. 광역 시·도별 결식률 비중 (2019년)	20
그림 2-5. 도시-농촌 지역의 '식비부족 경험 비율' 비교 (2019년)	21
그림 2-6. 광역 시·도별 '식비부족 경험 비율' 비교 (2019년)	22
그림 2-7. 도시-농촌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비교 (2019년)	23
그림 2-8. 광역 시·도별 '먹거리 취약계층' 비교 (2019년)	24
그림 2-9. 연령별 결식률 분포 (2019년, %)	25
그림 2-10. 연령별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율 (2019년, %)	26
그림 2-11. 연령별 식생활 형편에 따른 먹거리 부족자 (2019년, %)	26
그림 2-12. 연령별 식비 부족 경험자 (2019년, %)	27
그림 2-13. 소득수준별 결식자 및 식비 부족 경험자 (2019년, %)	28
그림 2-14.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및 '먹거리 결핍-영향요인' 분석틀	37

제3장

그림 3-1. 서귀포시 식사배달 서비스의 주요내용	48
그림 3-2. 서귀포시 커뮤니티키친 주요 활동	49
그림 3-3. 부산 진구 식사 서비스 지원센터 체계	51
그림 3-4. 부산 진구 맞춤형 식사 계획	52
그림 3-5. 부산 북구 식사 서비스 주요 활동	54
그림 3-6. 부산 북구 '새뜨락 커뮤니티센터' 먹거리돌봄 주요 활동-1	55
그림 3-7. 부산 북구 '새뜨락 커뮤니티센터' 먹거리돌봄 주요 활동-2	55
그림 3-8. 서울시 '마을부엌' 주요 활동	60
그림 3-9. 부천시 '마을부엌'의 마을공동체 먹거리 활동	61
그림 3-10. 부천시 '마을부엌'의 식생활 교육 주요 활동	62
그림 3-11. 부천시 '마을부엌'의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63

그림 3-12. 대전 동구 ‘나눔냉장고’의 주요활동	64
그림 3-13. 전주시 밥 굽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의 주요활동	66
그림 3-14.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급식’의 주요활동	68
그림 3-15. 한살림제주의 ‘먹거리돌봄 지역살림’의 실행구조	70
그림 3-16. 한살림제주의 ‘공동체 먹거리돌봄’ 추진과정	71
그림 3-17. 한살림제주의 ‘먹거리돌봄 지역살림’의 확대전략	71
그림 3-18. 익산시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의 추진과정	72
그림 3-19. 익산시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의 활동	74
그림 3-20. ‘선한 영향력 가게’ 주요활동	75
그림 3-21. ‘City meals on wheels’ 주요활동-1	76
그림 3-22. ‘City meals on wheels’ 주요활동-2	77
그림 3-23. ‘City meals on wheels’ 주요활동-3	78
그림 3-24. ‘City Harvest’의 먹거리 구조활동 트럭	79
그림 3-25. ‘City Harvest’의 이동장터	80
그림 3-26. 먹거리 제공처 위치	81
그림 3-27. ‘City Harvest’의 주요활동	81
그림 3-28. ‘Food Sharing’의 주요활동-1	82
그림 3-29. ‘Food Sharing’의 주요활동-2	83
그림 3-30. ‘Food Sharing’의 주요활동-3	84

제4장

그림 4-1.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대응방향	94
그림 4-2.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정책의 서비스 영역 구조 변경	98
그림 4-3.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구조와 지원내용	102
그림 4-4.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 따른 추진체계	109
그림 4-5. 부산 진구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113
그림 4-6. 생활SOC 복합화사업 + 커뮤니티 키친 결합 모형	117
그림 4-7. 먹거리 ‘나눔냉장고’ 운영체계 구상	121
그림 4-8.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식재료 조달방식 개선 제안	123
그림 4-9.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 구상	127
그림 4-10.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128
그림 4-11. 농어촌상생기금을 통한 기부의 추진절차	134
그림 4-12.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돌봄 추진구조 구상	138

제1장

연구개요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충격으로 학교급식 중단, 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폐쇄, 경로식당 휴업,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푸드뱅크 운영이 중단되어 먹거리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더욱 늘고 있음
 - 우리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을 유지하던 공적 먹거리 공급체계가 무력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먼저 큰 타격을 가하고 있음
 - 이는 최소한의 먹거리 사회 안전망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인간이 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먹거리 기본권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배제’의 현실임
- 우리 사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식료품 및 식사비에 지출하는 비중이 차이가 있어, 소득 수준별로 먹거리 지출에 대한 부담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음¹
 - 여기에 코로나19로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²하고 있어, 이 상황이 계속된다

1 소득 1분위 계층은 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 및 식사비 관련 지출이 30.6%, 2분위 계층은 28.9%를 차지하는 등 먹거리 지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국제 인도주의 기구(Cconcern Worldwide)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먹거리 빈곤 인구가 2억6,500만 명이나 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황영모 외, 2020)

- 면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및 일자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늘었고, 공·학교급식 등을 통한 급식·식사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최소한의 먹거리 확보가 어려운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황윤재, 2021)
- 한편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2018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강과 의료보장, 돌봄보장이 결합된 ‘커뮤니티 케어’로 요약할 수 있음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상 생활 전반을 결정짓는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돌봄 서비스는 아직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도화된 공적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있지만, 생활의 기본적인 돌봄 요구인 ‘먹거리’를 총족시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많음
- 일상생활과 삶의 전체적 과정과 밀접히 결합된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로 나아가야 하는 배경임
- 자원배분의 공평성이라는 원칙으로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표적화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식의 돌봄은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경직성 등으로 ‘부분의 치료와 회복’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큼
 - 먹거리는 개인의 사적인 경제영역의 선택이 아니라 ‘먹거리 보장’을 강조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식의 ‘먹거리돌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서는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 돌봄’을 정책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활동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³

3 대전시 대덕구는 한밭랫츠와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로컬 푸드(한밭가득)를 먹이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밥 짖는 아이 없는 도시를 기지로 결식 아이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엄마의 밥상’이란 이름으로 매일 전하고 있음. 서울시 구로구는 지역에 온종일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먹거리돌봄(급식)까지 역할을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는 마을공동체가 공유부엌을 마련해 학교 밖 아이들과 먹거리 소외계층에 대한 먹거리 나눔을 하고 있음. 인천시는 노인돌봄 서비스를 통해 결식노인을 찾아내고 어르신들 댁까지 식사를 직접 배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먹거리

- 정부 정책⁴의 긍정적 방향 속에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혁신적인 실천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의 창의적 실천모델 등이 제시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021년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국가식량 계획’을 의결하였는데, ‘먹거리 보장’을 강조하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과 지역사회의 실행역량 강화’를 과제로 제안하였음
- 이제는 국가식량계획의 주요 전략을 통해 먹거리 보장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한 ‘먹거리돌봄’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적인 추진을 준비해 나가야 하겠음
- 이 연구는 ‘국가식량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 나갈지를 검토하고 내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국가식량계획에 근거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정책’ 마련에 필요한 정책자문 근거를 마련함
 - 둘째, 범 부처 합동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먹거리돌봄’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부처간 정책협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이 연구는 사회적 현실 변화를 반영한 ‘먹거리돌봄’의 의미를 정립하고,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방안을 제안하여 사회적·정책적 논의의 근거(녹서綠書, green paper)⁵로 활용될 수 있음

그냥드림’으로 배고픔을 감내하는 이들의 아픔까지 보듬고 있음

- 4 식품지원 등의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 추진의 경직성으로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 (지역사회)에서는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음. 먹거리돌봄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영양플러스사업, 어린이집·유치원 기반 영양관리사업, 결식아동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학교 기반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지원,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관리사업, 어르신 영양관리사업, 실버건강식 생활사업(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결식우려 노인 급식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영양관리사업,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푸드뱅크, 푸드마켓), 농식품비우처 지원(시범)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 5 녹서는 유럽연합, 영국연방 등의 정부가 정책의 제안을 의논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제공한 임시적인 자문용 공문서로 통과된 법안을 바꾸는 기회를 주는 첫 단계가 되는 수단 등으로 사용됨

2. 연구내용과 방법

- 이상의 연구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 견지하는 먹거리돌봄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대별할 수 있겠음
 - 첫째, 먹거리돌봄은 사회복지 영역의 지원정책을 넘어 먹거리 정의의 사회적 가치에 기반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관점에서 파악되고 확대되어야 함
 - 둘째, 먹거리돌봄 관련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식재료 지원,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과 같이 내용적 분절을 넘어 먹거리를 매개로 한 종합적인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되어야 함
 - 셋째, 먹거리돌봄 관련 정책은 부처별 사업의 칸막이 한계를 넘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정책을 개편해 나가야 함
 - 넷째, 먹거리 지원 기준선에 근거한 개별 사회복지 정책을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먹거리돌봄 시스템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실행할 작동체계와 담당주체의 역할을 강조해 나가야 함
 - 다섯째, 이를 위해서는 먹거리의 시민사회 역량(먹거리 시민 육성, 사회자본 등)을 강화하면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수단을 구상하고 마련해야 함
-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연구는 ‘국가식량계획’의 중점과제로 제시된 ‘먹거리 보장,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의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표 1-1 문제의식과 연구과제

문제의식	대응방향	연구과제
사회복지 지원 정책에 간힘	복지적 시혜 넘어 먹거리 정의 가치 정립	먹거리돌봄의 사회적 의미
취약계층 식재료지원에 그침	건강·의료·돌봄 내용적 분절 극복과 연계	통합 돌봄에 먹거리를 반영
부처별 정책의 분절적 시행	기준 개별 정책사업 연계·통합방안 필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전환
기준선 근거한 평균적 지원	최소지원 넘는 필요 근거 지역사회 대응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체계
정책 미 포괄 사각지대 여전	지역사회역량으로 먹거리 취약계층 돌봄	지역사회의 담당주체 육성

- 이 연구의 핵심내용은 크게 ‘①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먹거리돌봄 연계 방안, ②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확대 방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먹거리돌봄의 의미에 대해, ‘사회적 돌봄과 먹거리돌봄’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 먹거리 체계’의 관점으로 정리함
- 둘째, 우리 사회 먹거리돌봄의 배경인 먹거리 보장 ‘현황과 수준’이 어떠한지 진단하고, 먹거리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의함
- 셋째, 먹거리돌봄 관련 사례를 ‘지역사회+통합돌봄+푸드플랜’의 관점에서 선정하고, 사례별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먹거리돌봄 과제의 시사점을 논의함
- 넷째, 현황진단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대응방향을 정리하고, 정책방안을 부처가 정책을 개선하고 이행할 수준을 고려하여 제안함

표 1-2 연구의 내용·구성·방법

연구구성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① 먹거리돌봄 개념 검토	· 사회적 돌봄과 먹거리돌봄의 의미 검토 ·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 먹거리 체계 관점 대별	자료검토
② 먹거리 보장 현황 진단	· 먹거리 보장수준 현황진단(결식·취약계층·영양교육) · 먹거리 취약성과 영향 요인 관계 분석	통계분석 자료분석
③ 먹거리돌봄 사례 분석	· 지역사회통합돌봄 내의 먹거리돌봄 사례 · 지자체 지원 및 민간주도 먹거리돌봄 사례	현장조사 자료분석 세미나
④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정책과제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대응방향 (7개 방향)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정책과제 (9개 과제)	자료분석 자문회의 세미나

- 다섯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기 위한 의안자료를 마련함⁶

3. 주요개념 검토

- 이 연구의 주제인 ‘먹거리돌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루는 ‘사회적 돌봄’의 일환이면서, 먹거리 체계 구축의 목적인 ‘먹거리 보장’과 논의의 맥락이 중첩되어 있음
- ‘먹거리돌봄’은 취약계층 대상의 식품지원과 같은 복지적 시혜가 아니라, 먹거리에 있어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의 성격을 가짐
- 특히 개인·가족, 시설·기관에 의존·집중되어 왔던 관행적 ‘돌봄’이 생활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 돌봄으로 전환되고, 실천 단위가 ‘지역사회’라는 점에서 먹거리돌봄은 ‘지역사회의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 돌봄’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사회적 돌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먹거리돌봄’에 대한 시각을 정리하여 이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논의와 정책과제 구상의 근거로 삼고자 함

□ ‘사회적 돌봄’의 검토

- ‘돌봄’은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지역·사회·국가 범위에서 이뤄지는 활동으로 정의함(이현진, 2021)
- 돌봄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실천과 오랜 논의의 주제였는데, ‘수동적 개념’

6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정책과제는 정부 부처의 정책이행을 제안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특위의 권한을 고려하였음

으로서 돌봄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병자,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돌보는 행위’임(Daly, 2002)

- 반면 ‘능동적’ 관점에서의 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정상적·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행위’임(Sipila & Kroger, 2004)
- 돌봄에 대한 논의는 시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⁷, 현대사회에서 돌봄은 ‘삶의 과정에서 보편적 욕구로서 포괄적 시민권 차원에서 삶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으로 개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음(김홍주, 2021)
- ‘돌봄 서비스’는 ‘잔여적이고, 시혜적이며, 특수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와 시민권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것임(Daly & Lewis, 2000)
- 한편,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논의에서 돌봄은 ‘여성과 가정’을 넘어선 시민의 문제이며, 공공의 문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음(김홍주, 2021)
- 그러나 정부 중심의 표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돌봄은 지역사회의 연대가 낮아, 개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강제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등은 질병·건강·복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돌봄의 욕구가 높아져 ‘지역사회 돌봄’의 수요가 커지고 있음(Boult et al, 2008)
- 즉,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응한 유연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돌봄 활동을 위해서는 주체 간의 사회적 관

표 1-3 ‘돌봄의 사회화’에 관한 논의

구 분	‘사회화’의 관점에서의 돌봄	‘복지 국가’ 관점에서의 돌봄
주 체 (실천기반)	시민 사회적 개념화 → 시민 참여가 주된 기반	복지 국가적 개념화 → 국가(정부) 역할 강조
관 계 (대상관계)	돌봄 공공성 논의 → 공급자와 수혜자를 동일시	국가 중심 공공성 논의 → 공급자와 수혜자 이원화
자 원 (활용자원)	돌봄 공공성 논의 → 지역사회의 연대·네트워크	국가 중심 사회서비스 → 정부지원 민간위탁 서비스

자료 : 김홍주 (2021); 이현진(2021)에서 정리

7 이러한 점에서 ‘공공성’은 근대의 산물이지만, ‘돌봄’은 인류 역사의 결과로 ‘돌봄의 사회화’가 관건으로 강조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김홍주(2021)를 참조

계성이 강조되는 것임(김용득, 2018; 이현진, 2021)

- 요컨대, ‘돌봄의 사회화’⁸는 개인·가족이 담당해 왔던 돌봄의 책임을 사회로 넓히고, 시혜적인 재정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역량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돌봄’인 것임 (Daly & Lewis, 2000)

□ ‘먹거리돌봄’의 검토

- ‘먹거리돌봄’은 시혜적·자선적 차원의 선별적 ‘식품제공’(food charity)이 아니며, 보편적 인권 차원의 ‘먹거리 보장’으로 전환하는 것(food security & sovereignty)임 (김홍주, 2021; UN CESCR, 1999)
- 이러한 먹거리돌봄의 근거는 헌법(10조, 34조, 37조), 보건의료기본법(10조), 국민건강증진법(2조, 3조, 6조, 15조, 19조), 국민건강영양관리법(1조, 2조, 3조, 10조)에서 찾을 수 있음
- ‘먹거리돌봄’이 이뤄지는 형태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사회적 관계 맺기 등이 이뤄짐
- 특히 식품지원 활동 등은 지역사회 조직과 연계한 다른 돌봄 서비스와 결합되고 통합될 때, 돌봄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
- 지역사회 서비스와 식품지원의 결합사례는 독거노인(식사+간병+말벗 등 돌봄 서비스), 저소득층(의료서비스+영양·보충식품 제공), 실업자(무료급식+일자리 정보 제공), 학교 밖 청소년(급식+교육서비스 등 정서 지원)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2019년부터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돌봄 대상자가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먹거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 방식의 전환을 의미함
- 한편, ‘사회적 돌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고, ‘지역 먹거

8 돌봄을 공공재(public goods)가 아닌 커먼즈(commons)로 인식하는 것으로 다양한 돌봄 주체들의 활동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정부 지원의 사회 서비스 개념과 차이가 있음(김홍주, 2021)

리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실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먹거리돌봄’을 이해하는 입장과 시각을 다음과 같이 대별할 수 있음

- 첫째,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파악하는 ‘먹거리돌봄’의 관점임.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여러 사유로 자립적 생활 영위가 어려운 사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 먹거리돌봄은 돌봄 서비스의 세부수단 중 하나임
-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먹거리돌봄의 대상은 복지정책 분야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선별하게 되며, 주요한 정책은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합하는 방향에서 구성됨
- 즉, 먹거리 불안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고, 생애주기의 특정기간(고령자 중심)에 취약계층이 되어 먹거리 취약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임
- 둘째, ‘지역 먹거리 체계’에서 파악하는 ‘먹거리돌봄’의 관점임.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논의에서는 영양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먹거리 불안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영역을 강조하고 있음
- 먹거리 불안은 관행적인 먹거리 체계가 야기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푸드시스템(지역 먹거리 체계)으로 보완해야 하며, 그 방향이 먹거리 기본권임
- 푸드플랜에서 먹거리돌봄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 수준의 문제로 나타나며, 누구나 일시적으로 영양 불균형의 상태에 처할 수 있음을 강조함
- 먹거리돌봄의 주요 정책 내용은 개인+가족의 생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활 통합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여기에 ‘지역사회’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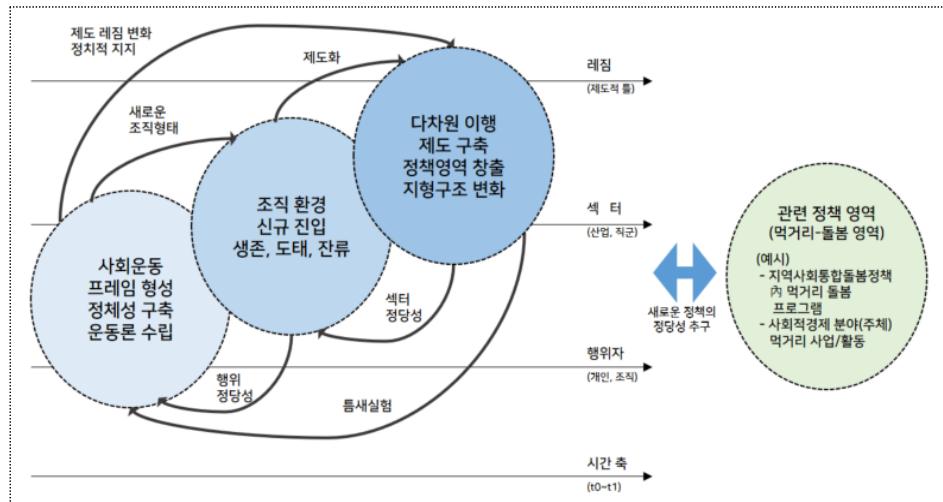
□ 먹거리 체계와 통합돌봄의 검토

- 우리 사회의 먹거리 정책(전략)이 사회운동⁹이 정책화·제도화되어온 경로를 고려할 때, 지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상호작용하면서 다차원적인 정책영역을 만들고, 구조 변화 과정으로 진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분야별 정책은 해당 정책구조에 고정화되기 보다, 정책의 배경과

9 학교급식 운동을 통한 무상·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로컬푸드 정책화, 식생활 교육 운동을 통한 식생활 교육의 제도화 등이 그것임(횡영모, 2021)

- 출발점이 다른 정책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 변화와 제도 마련으로 이행하는 등 진화할 수 있음 (그림 1-1 참고)
- 이렇게 본다면 ‘푸드플랜 정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은 정책의 목적 이 다를지라도 공통의 관심 영역(먹거리돌봄)이 있고, 그 영역에서 정책 간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겠음
 -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를 갖추기 위한 대응전략인데, 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복지) 등과 같은 다른 분야의 정책과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먹거리돌봄’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임

그림 1-1 새로운 정책의 상호작용과 통합화 과정



자료 : Hassink et al.(2014), 이인우(2021)에서 수정

제2장

먹거리 보장 현황진단

먹거리 보장 현황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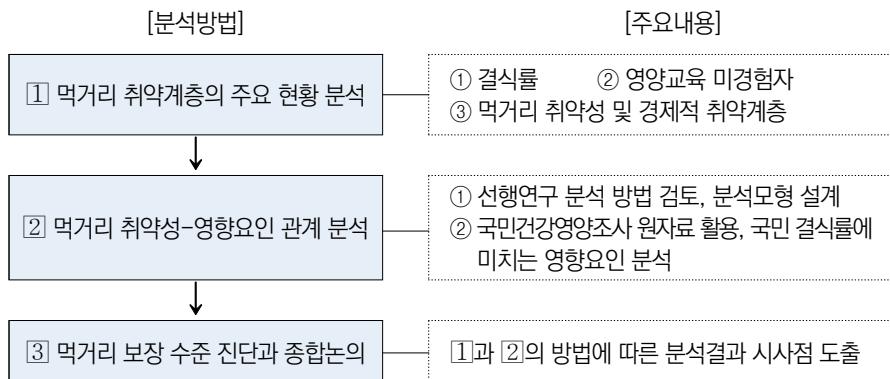
- 우리 사회에서 먹거리돌봄의 의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음
- 최소한의 먹거리가 어느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지를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을 탐색하고 먹거리 보장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함
- 이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국민건강영양조사’¹⁰ 원자료를 가공하여 분석함으로써 국가 전체 국민들의 식생활 현황, 먹거리 취약계층을 검토해봄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표본 수는 8,110명임
 - 표본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현황을 반영한 정밀도가 낮은 제약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하여 모집단(국가 전체 인구)에 근사한 수치(약 5,138만 명)를 바탕으로 현황을 진단함
- 이와 함께 가장 최근 연도(2019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획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결식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설정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수행함
 - 이를 통해 국민의 결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들을 규명하고, 이에 대

10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영양상 태를 평가하고 영양 취약집단과 시급한 영양 문제를 파악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영양관리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음. 주요 조사내용은 ‘검진조사,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등이며, 영양조사는 조사 1일 전 음식 및 식품 섭취 내용, 식행태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식이보충제 이용, 에너지 및 영양소 주요 기여 음식에 대한 섭취 빈도, 식품안정성, 수유 등임

한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 이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먹거리 보장 현황·수준 진단’은 <표 2-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첫째, 먹거리 취약계층의 현황은 ①결식률, ②영양교육 미경험자, ③먹거리 취약성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분석하여 진단하고자 함
 - ‘결식률, 영양교육 미경험자, 먹거리 취약성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비교하여 현황을 진단함
- 둘째, 먹거리 취약성 영향요인 관계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결식률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함
 -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분석방법을 검토하고, 모형을 설계하여, 결식률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계 효과를 추출하고자 함
- 셋째, 먹거리 취약계층의 현황분석과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먹거리 보장 현황을 개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함
 - 국민 결식률 수준을 종합적으로 살펴 특징을 검토하고, 먹거리 보장에 주요한 영향요인이 되는 자원 등을 살펴 정책과제 논의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함

표 2-1 먹거리 보장 관련 현황 진단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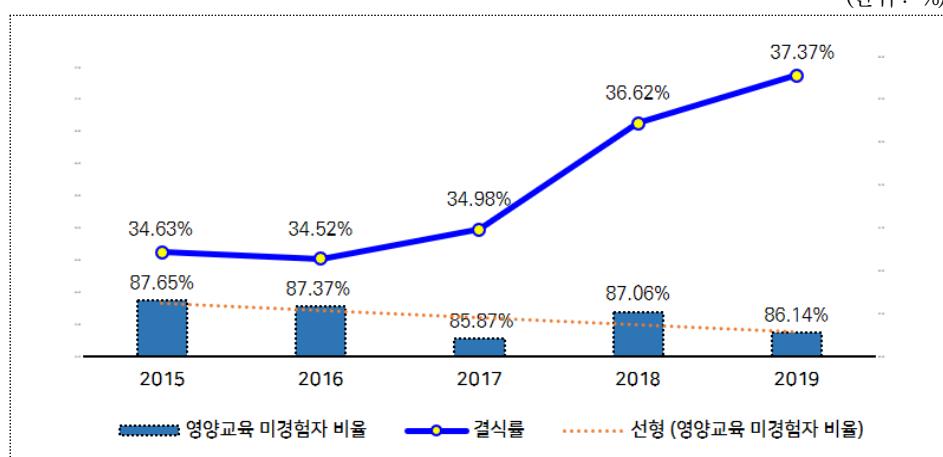
1. 먹거리 취약계층, 수준 진단

1.1.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 전국을 기준으로 ‘1일 1회 이상 결식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4.63%에서 2017년 34.98%, 2019년 37.3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율은 2015년 87.65%, 2016년 87.37%, 2017년 85.87%, 2018년 87.06%, 2019년 86.14%로 약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반적으로 ‘결식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며,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중’은 약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양교육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음

그림 2-1 결식률과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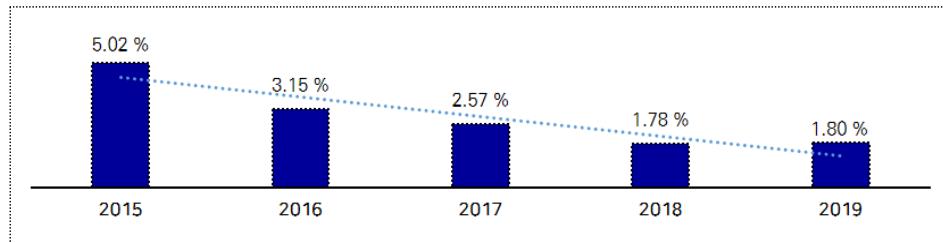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기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먹거리 부족을 경험한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5.02%에서 2017년 2.57%, 2019년 1.80%로 해마다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먹거리 취약계층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2-2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

(단위 : %)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 한편, 국민 전체적으로 먹거리 지원(돌봄)은 ‘결식을 경험한 사람, 영양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먹거리 지원(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수준을 살펴보면, 결식인구는 37.37%, 영양교육 미경험자는 86.14%, 경제적인 먹거리 취약계층은 1.80%로 요약할 수 있음
- 경제적인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결식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의 국민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2 먹거리 지원(돌봄) 필요자 비율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CAGR
결식인구 비율	34.63	34.52	34.98	36.62	37.37	1.9%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율	87.65	87.37	85.87	87.06	86.14	△0.4%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비율	5.02	3.15	2.57	1.78	1.80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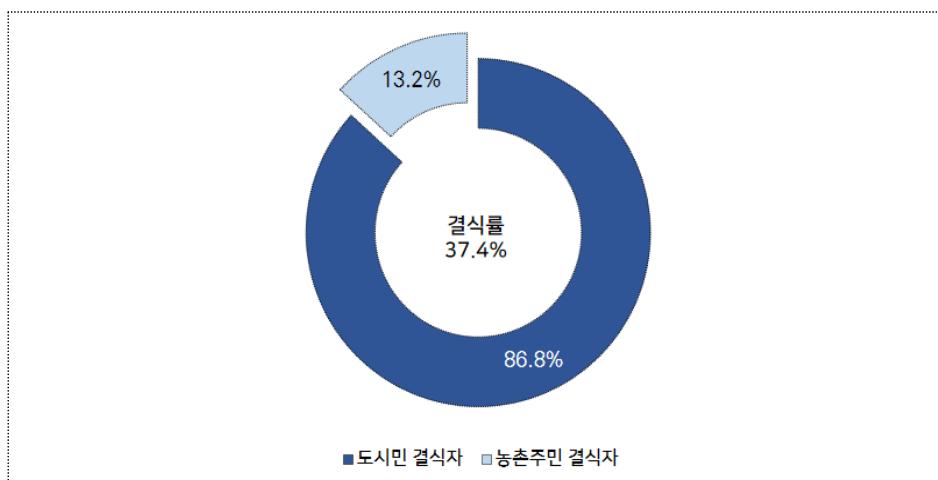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1.2. 지역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 ‘결식률’의 지역별 비교

- 먹거리 보장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 지역(동)과 농촌 지역(읍/면)을 기준으로 ‘결식률’을 비교하였음
- 도시와 농촌의 결식 수준을 비교한 결과, 2019년 기준 도시민은 86.8%, 농촌주민은 13.2%로 나타나, 도시지역 결식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2-3 도시-농촌 지역의 ‘결식률’ 비교 (2019년)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기준으로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결식률을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결식률이 26.7%로 가장 높으며, 서울시(18.6%), 경남도(7.0%), 부산시(6.6%), 인천시(6.5%), 대구시(5.1%), 경북도(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광역 시·도별 결식률을 살펴보면, 인구가 몰려 있는 대도시 권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임

표 2-3 광역 시·도별 결식률 비중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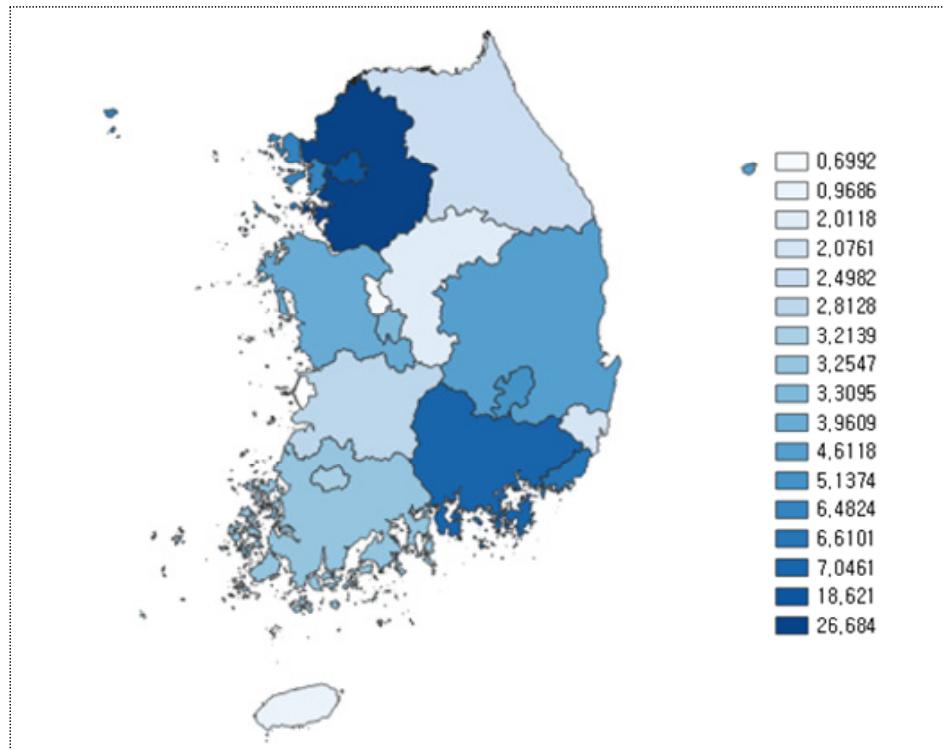
(단위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비중(%)	18.6	6.6	5.1	6.5	3.2	3.3	2.1	0.7	26.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비중(%)	2.5	2.0	4.0	2.8	3.3	4.6	7.0	1.0	37.4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2-4 광역 시·도별 결식률 비중 (2019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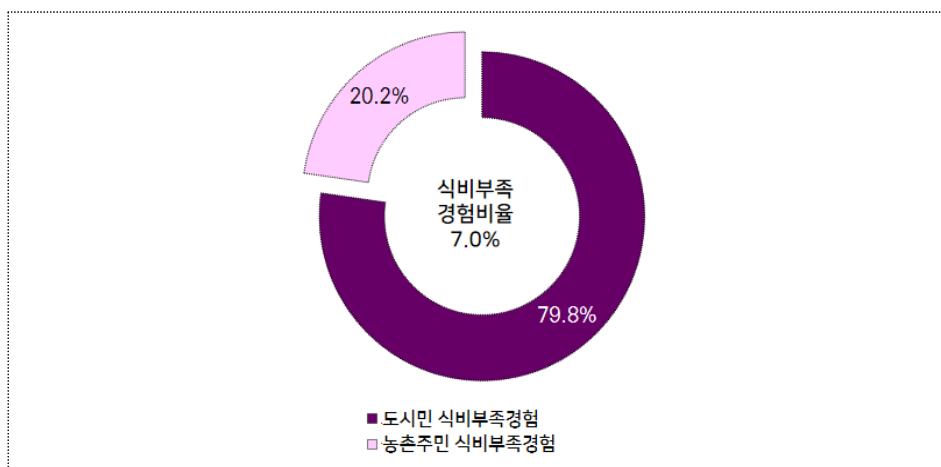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식비부족 경험’의 지역별 비교

- ‘식비부족 경험비율’을 도시 지역(동)과 농촌 지역(읍/면)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도시민의 79.8%, 농촌주민의 20.2%가 식비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음

그림 2-5 도시-농촌 지역의 ‘식비부족 경험 비율’ 비교 (2019년)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표 2-4 광역시도별 식비부족 경험 비중 (2019년)

(단위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비중(%)	14.6	9.4	8.6	3.2	1.5	0.4	7.2	0.3	23.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비중(%)	3.2	2.5	2.6	1.5	4.8	6.5	10.1	0.5	7.0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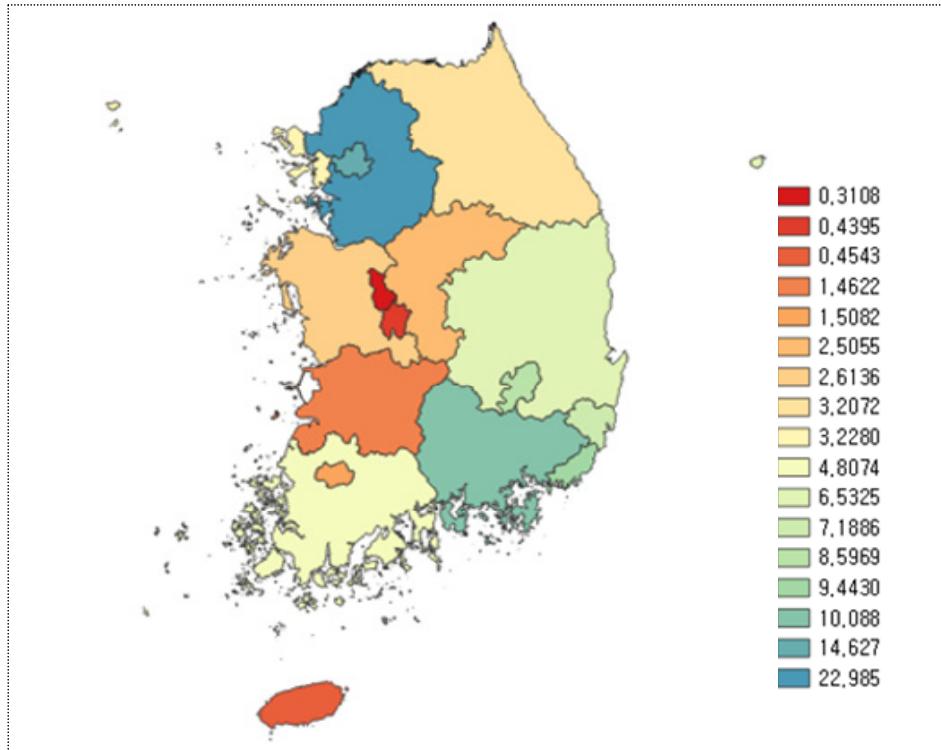
-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식비부족 경험 비율이 23.0%로 가장 높으며, 서울시(14.6%), 경남도(10.1%), 부산시(9.4%), 대구시(8.6%), 울산시

(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식비 부족을 경험한 비율은 결식률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대도시 권역에 집중되고 있음

그림 2-6 광역 시·도별 '식비부족 경험 비율' 비교 (2019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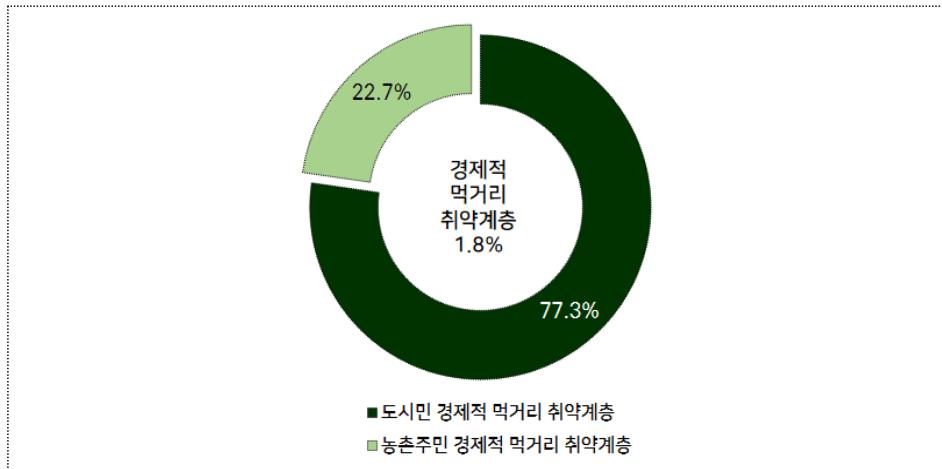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의 지역별 비교

-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을 도시 지역(동)과 농촌 지역(읍/면)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도시민의 77.3%, 농촌주민의 22.7%가 경제적 이유로 식생활 형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

보다 3배 이상 높음

그림 2-7 도시-농촌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비교 (2019년)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광역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2.8%로 가장 비중이 높고, 서울시·부산시(14.5%), 전남도(9.9%), 대구시(6.2%), 강원도(5.3%) 등의 순임
- 경제적인 이유로 식생활 형편수준이 낮은 계층 비율의 분포는 비교적 수도권 지역과 부산 등에 집중되어 있음

표 2-5 광역 시·도별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비중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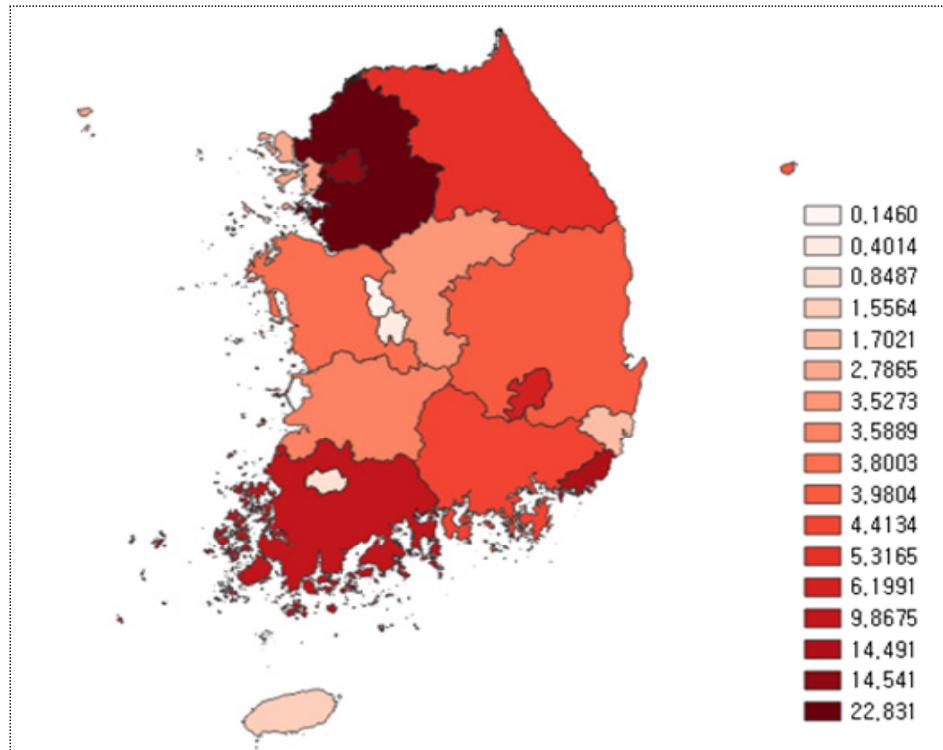
(단위 :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비중(%)	14.5	14.5	6.2	2.8	0.8	0.4	1.7	0.1	22.8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비중(%)	5.3	3.5	3.8	3.6	9.9	4.0	4.4	1.6	1.8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분석에 있어 질병관리청의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그림 2-8 광역 시·도별 '먹거리 취약계층' 비교 (2019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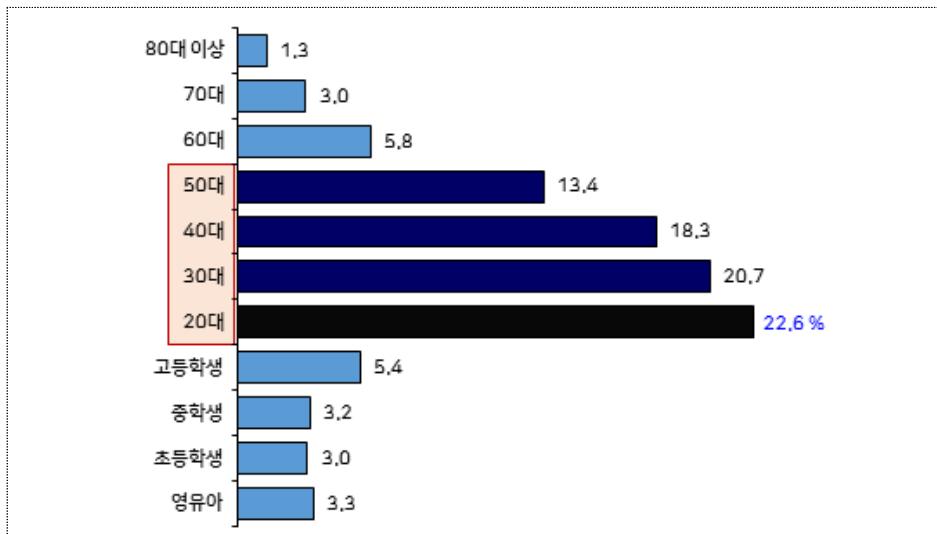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함(분석에 있어 질병관리청의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1.3. 연령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 '결식률'의 연령별 비교

- 결식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22.6%로 가장 높고, 30대(20.7%), 40대(18.3%), 50대(1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결식률이 생산가능 인구(15~64세)에서 비교적 높다는 점이 특징임

그림 2-9 연령별 결식률 분포 (2019년, %)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기준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영양교육 미경험자’의 연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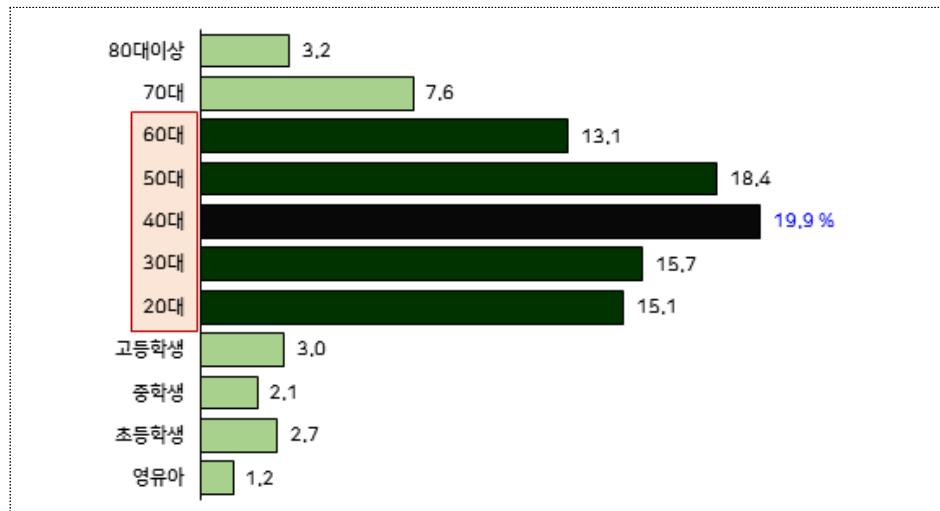
-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19.9%로 가장 높고, 50대(18.4%), 30대(15.7%), 20대(15.1%), 60대(13.1%) 등의 순임
- 초중고 등 학교 교육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20대 이상부터 60대까지는 영양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의 연령별 비교

- 식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은 먹거리 부족자 연령별 비중은 70대가 28.06%로 가장 높았고, 60대(18.28%), 50대(16.84%), 80대 이상(13.99%) 등의 순임
- 대부분 고령층에서 식생활 형편이 부족하여 먹거리 부족을 느끼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비 부족을 경험한 비율은 70대가 15.9%로 가장 높고, 60대(15.5%),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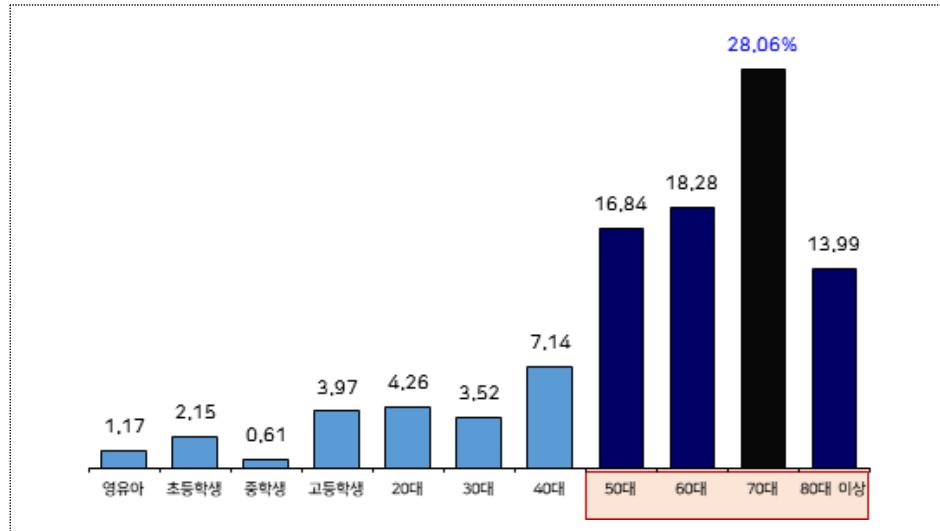
(14.5%), 20대(11.7%)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0 연령별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율 (2019년, %)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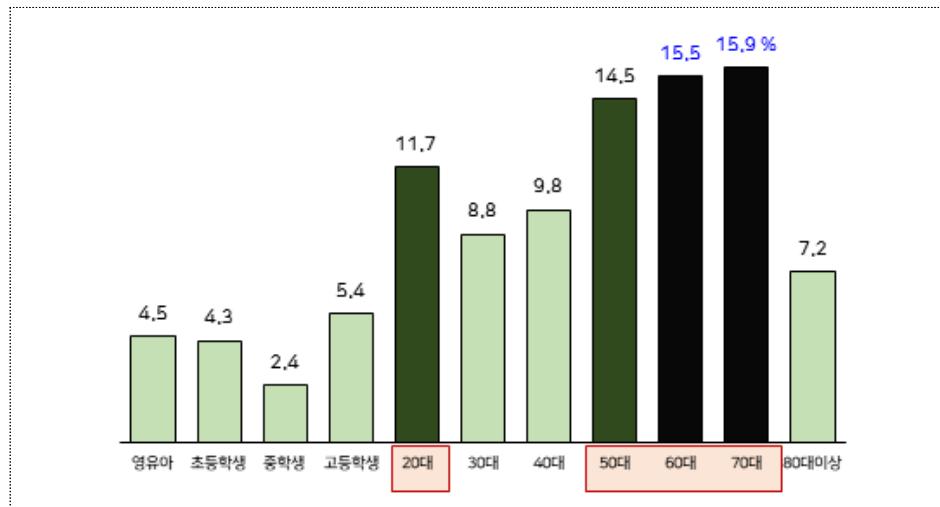
그림 2-11 연령별 식생활 형편에 따른 먹거리 부족자 (2019년, %)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 고령층에서 식비 부족 경험 비중이 높아 고령층에 대한 먹거리돌봄 지원의 필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대 또한 1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 중심의 먹거리돌봄 지원과 함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그림 2-12 연령별 식비 부족 경험자 (2019년, %)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가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1.4. 소득수준별 먹거리 취약계층 현황

- 소득수준에 따른 ‘결식률’을 살펴보면, 소득분위에 따라 먹거리 취약계층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
- 1분위 계층에서 경제적으로 가끔 먹거리가 부족하다(60.0%)와 자주 부족하다(68.0%)는 비중이 높고, 이들은 전체 먹거리 부족자의 61.6%에 달함
- 식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떨어진다는 비율 또한 소득 1분위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자주 떨어진다(52.9%)와 가끔 떨어진다(56.4%) 등 식비 부족자

는 전체 먹거리 부족 계층의 55.7%로 나타남

- 이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먹거리 취약성의 양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2-6 소득분위별 결식률 (2019년)

(단위 : %, 명)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합계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 섭취가 가능함	18.3% (5,471,144)	23.7% (7,081,449)	28.0% (8,364,699)	29.9% (8,930,538)	100% (29,847,830)
충분한 양은 가능, 음식의 다양성은 낮음	31.5% (6,412,565)	26.5% (5,386,435)	23.2% (4,717,099)	18.8% (3,814,095)	100% (20,330,195)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이 부족	60.0% (442,334)	26.3% (194,064)	13.3% (97,998)	0.3% (2,452)	100% (736,847)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	68.0% (122,408)	27.0% (48,663)	4.9% (8,862)	0.0% (0)	100% (179,933)
소득분위 내 먹거리 부족 계층 비율(%)	4.54%	1.91%	0.81%	0.02%	1.79%
전체 먹거리 부족 계층 대비 비율(%)	61.6%	26.48%	11.66%	0.27%	100%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기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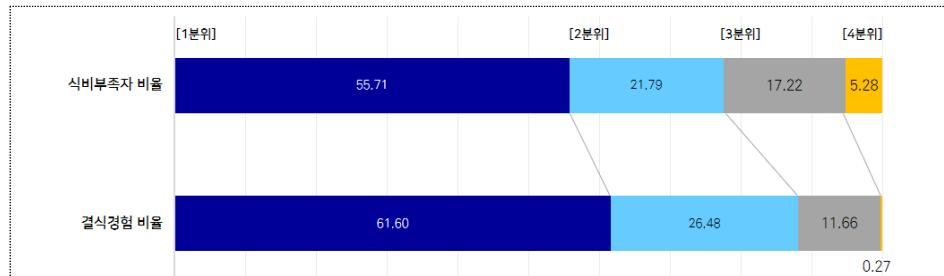
표 2-7 소득분위별 식비부족자 비율 (2019년)

(단위 : %, 명)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합계
식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자주 떨어짐	52.9% (376,477)	22.8% (161,764)	24.1% (171,116)	0.2% (1,693)	100% (711,050)
식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가끔 떨어짐	56.4% (1,600,768)	21.6% (611,683)	15.5% (439,934)	6.5% (185,785)	100% (2,838,170)
그런 경우 없음	22.0% (10,471,206)	25.1% (11,937,164)	26.5% (12,577,608)	26.4% (12,559,607)	100% (47,545,585)
소득분위 내 먹거리 부족 계층 비율(%)	15.88	6.09	4.63	1.47	6.95
전체 먹거리 부족 계층 대비 비율(%)	55.71	21.79	17.22	5.28	100

주 :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기공하여 재분석. 원자료에 질병관리청 제공 영양조사 가중치를 적용
자료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19.

그림 2-13 소득수준별 결식자 및 식비 부족 경험자 (2019년, %)



2.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관계분석

2.1. 선행연구 검토

-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먹거리 취약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먹거리와 건강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꼽을 수 있음
- Deller et al(2017)은 공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8개의 변수를 미국 50개주 카운티(County) 단위의 건강 관련 지표와 주요 변수의 관계를 통계 분석하여 검증함
 - 모델의 구성은 아래의 식과 같음
$$PH = \alpha + \beta LF + \gamma FA + \theta HB + \delta EN + \varphi SE + \vartheta SC + \pi AF + \tau HC + \varepsilon$$
 - PH(public health, 공중건강) : 당뇨 유병률, 비만률, 조기사망률
 - LF(local foods, 로컬푸드) : 파마스마켓 비중, 직거래 비중, 인구 당 직거래 금액, 소비자 지원농업(CSA) 농장 비율, 소매업체 직거래 비율
 - FA(외부유입 먹거리), HB(건강유의 활동), EN(쾌적한 환경), SE(해당 지역 사회경제적 특징), SC(사회적 자본), AF(생활지원센터), HC(보건시설)
-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를 유지·관리 방안이 지역사회의 건강에 더 효과적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로컬푸드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만·당뇨·조기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른 변수들의 경우 관계가 복합적 이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됨
- 반면, 지역사회 건강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먹거리 접근성, 생활지원센터·보건시설 접근성’은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선행연구의 주요내용과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로컬푸드 접근성, 외부에서 유입되는 먹거리 접근성, 생활지원센터·보건시설 접근성의 변수를 고려하여 국민의 결식률이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분석·검토해보고자 함

2.2. 분석모형 설정

- 이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영양 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였음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순환표본조사의 특성을 지니며, 매 순화주기별로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적절한 통계적 신뢰도를 가진 모집단 추정에 유리함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패널조사로 기간의 개념을 포함한 모형분석을 설계하였으나, 표본의 아이디 간 불일치성으로 인해 패널모형 분석은 불가하여, 가장 최근 연도인 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획단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설정한 모형’¹¹은 인과관계에 있어 ‘결식률’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먹거리 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둠
- 이에 따라 종속변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아침, 점심, 저녁의 결식 유무’로 설정함(0: 미결식자, 1: 1일 1회 이상 결식자)
- 설명변수로는 우선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수준,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사항을 선정함
- 이와 함께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지원체계와 관련된 변수들로 ‘먹거리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항목을 설정함

11 원하는 설명변수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살피기 위한 주관적 기준에 따른 모형으로 결정계수에 집중하지 않고 통제변수나 도구변수들은 제외한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함

-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먹거리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항목은 ‘지역별 로컬 푸드 직매장 수, 푸드뱅크 기부자 수, 노인복지관 시설 수, 재가노인서비스 종사자 수, 학교급식 종사자 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 지역아동센터 수’ 등임
- 회귀모형에 대한 분석 방법론으로는 범주형(이항) 변수의 형태인 종속변수에 따라 횡단면 로지스틱 회귀분석¹²을 수행하였음
- 이는 연구자의 관점이 반영된 모델링으로 모형의 결정계수나 유의성이 낮을 수 있으나, 이 분석은 지역사회의 먹거리돌봄 자원과 결식률의 관계를 분석·파악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이상과 같이 검토·설계한 분석 모형의 틀은 아래의 식과 같음
$$SR = \alpha + \beta_1 education + \beta_2 age + \beta_3 sex + \beta_4 income + \beta_5 foodbank + \beta_6 localfood + \beta_7 social welfare facility + \beta_8 social welfare service + \varepsilon$$
 - SR(starvation rate) : 1일 1회 이상 결식률
 - education, age, sex, income : 국민건강영양조사 응답자 교육수준, 연령, 성별, 소득분위
 - 먹거리 인프라(localfood, social welfare facility) :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수, 노인복지관 시설 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 지역아동센터 수
 - 먹거리 복지 서비스(foodbank, social welfare service) : 지역별 푸드뱅크 기부자 수, 재가노인서비스 종사자 수, 학교급식 종사자 수
- 이 연구에서 수행한 횡단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종속변수가 범주형 (0, 1)인 경우 데이터를 다루는데 있어 용이한 통계적 분석 방법임
 - 1일 1회 이상 결식하는 경우 ‘1’, 결식이 없는 경우 ‘0’으로 설정하여 결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는데 있어 적용이 가능한 분석방법임
- 먼저, 분석에 사용될 회귀식을 유도하고 나타낸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기본

¹²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 및 설명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표현하여 추후 예측모델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과는 달리 종속변수가 범주형(이항) 변수를 바탕으로 결과 값이 특정한 분류로 나누어짐에 따라 분류분석(classification)으로 불림

형태는 아래의 식과 같음

$$(1) \quad Y_i^* = \beta_0 + \beta_i x_i + e_i, \quad Y_i = \begin{cases} 1, & Y_i^* > 0 \text{인 경우} \\ 0, & Y_i^* \leq 0 \text{인 경우} \end{cases}$$

- 위 식에서 오차항 e_i 는 정규분포가 아니라 로지스틱 분포(logistic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
 - 로지스틱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나며, 설명변수 x_i 가 주어지면 종속변수가 1의 범주에 해당할 확률을 의미함
- 기본형태의 식에서 Y를 확률화(P)할 경우 확률 값은 식 (2)로 표현될 수 있음

$$(2) \quad P = \frac{\exp[f(x_i, \beta_i)]}{1 + \exp[f(x_i, \beta_i)]} = \frac{\exp[\beta_0 + \sum \beta_i x_i]}{1 + \exp[\beta_0 + \sum \beta_i x_i]}$$

- 여기서 P 는 $P(Y^* = 1 | x_1, \dots, x_i)$ 로 놓어민 공익수당이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는 확률을 뜻하며, x_i 는 ‘교육수준, 연령, 성별, 소득수준’ 및 ‘먹거리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등으로 결식률(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고, β_i 는 모형에서 추정되어 나타난 계수를 뜻함
- 최소자승법으로 모형의 절편과 계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선형 회귀분석과는 달리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최대 우도 추정법(Method of Maximum Likelihood)을 통해 계수와 절편을 추정함
- 식 (2)를 살펴보면 변수들의 관계가 비선형을 나타나기 때문에 선형화를 위해 Log화를 시켜 변환하면 식 (3)과 같은 선형 회귀모형의 형태로 나타남(로지스틱 변환, logistic transformation)

$$(3) \quad \log_e P = \ln \frac{\exp[\beta_0 + \sum \beta_i x_i]}{1 + \exp[\beta_0 + \sum \beta_i x_i]} = \log_e \left[\frac{P}{1 - P} \right] = \beta_0 + \sum \beta_i x_i$$

- 여기서 $\frac{P}{1 - P}$ 는 오즈(Odds)를 뜻하며, 식(3)을 다시 Log를 푸는 형태로 e를 씌우면 식 (4)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음

$$(4) \quad e^{\log_e \left(\frac{P}{1 - P} \right)} = e^{\beta_0 + \sum \beta_i x_i} = \frac{P}{1 - P}$$

- 식 (4)를 더 간결하게 확률 P 에 대해서 나타내면 결론적으로 식 (5)와 같이 나타남

$$(5) \quad P = \frac{e^{\beta_0 + \sum \beta_i x_i}}{1 + e^{\beta_0 + \sum \beta_i x_i}} = \frac{1}{1 + e^{-(\beta_0 + \sum \beta_i x_i)}}$$

-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특성상 비선형 함수의 형태로 변수들 간의 비선형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로 회귀계수를 일반 선형회귀 계수처럼 해석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게 됨
- 따라서, 직관적으로 계수에 대해 다시 확률로 변환하여 해석하는 것이 더 명확하기에 확률에 대해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구하고자 식 (6)과 같이 미분하여 한계효과를 구함

$$(6) \quad \frac{\partial P}{\partial x_i} = \frac{\partial}{\partial x_i} \left(\frac{1}{1 + e^{-(\beta_0 + \sum \beta_i x_i)}} \right)$$

- 식 (6)을 살펴보면 1번째 설명변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구하는 경우 해당 변수를 X_i 라고 하면 식(7)의 값으로 나타남

$$(7) \quad \text{marginal effect} = - \frac{e^{-(\beta_0 + \sum \beta_i x_i)}}{(1 + e^{-(\beta_0 + \sum \beta_i x_i)})^2} (-\beta_i) = \frac{e^{\beta_0 + \sum \beta_i x_i}}{(1 + e^{\beta_0 + \sum \beta_i x_i})^2} (\beta_i)$$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설명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둠

2.3. 분석결과 논의

- 우선 로짓모형 분석을 통해 결식(1회 이상)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 부호 조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추정하고 결과 분석을 실시함
- 통계적 유의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설명변수들의 평균 한계효과를 추출하였음

- 인구 통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보다 중졸 이상자에서 결식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고졸, 대졸이상, 중졸 중에서는 중졸이 한계효과가 가장 높았으며, 초졸 이하에 비해 약 12.9%p 결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고졸은 11.4%p, 대졸 이상의 경우 6.3%p 결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 성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식률이 약 2.3%p 수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20대 미만에 비해 20대~40대의 결식률이 높고, 50대 이상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대의 결식률은 약 29.7%p 증가하며, 30대는 19.9%p, 40대는 6.9%p 높아지며, 70대 이상은 약 15.2%p, 60대는 13.6%p, 50대는 5.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 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식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임
 - 소득분위 하위수준 대비 중하수준의 경우 5.1%p, 중상 수준 5.5%p, 상위 수준 8.9%p 결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먹거리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서비스(종사자), 푸드뱅크(기부자)가 증가하면 결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부호조건으로 살펴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서비스(종사자), 푸드뱅크(기부자)가 높으면 결식률을 줄이는데 일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결과로 분석되었음

표 2-8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관계분석 결과

Variable		coef. (robust S.E.)	dY/dX (평균한계효과)	S.E.	P-Value
교육수준 (기준, 초졸 이하)	중졸	0.6621(0.1131)***	0.1294***	0.0224	0.0000
	고졸	0.5879(0.1176)***	0.1137***	0.0226	0.0000
	대졸이상	0.3372(0.1282)***	0.0627***	0.0239	0.0090
나이 (기준, 20대 미만)	20대	1.2641(0.1513)***	0.2965***	0.0344	0.0000
	30대	0.8573(0.1445)***	0.1993***	0.0333	0.0000

Variable		coeff. (robust S.E.)	dY/dX (평균한계효과)	S.E.	P-Value
	40대	0.3107(0.1388)**	0.0686**	0.0306	0.0250
	50대	-0.2516(0.1333)*	-0.0504*	0.0267	0.0590
	60대	-0.7624(0.1234)***	-0.1356***	0.0221	0.0000
	70대 이상	-0.8786(0.1189)***	-0.1517***	0.0206	0.0000
성별(기준, 남성)	여성	0.0234(0.0110)**	0.0234**	0.0110	0.0340
개인소득수준 (기준, 하위 수준)	중하 수준	-0.2554(0.0804)***	-0.0509***	0.0160	0.0010
	중상 수준	-0.2753(0.0802)***	-0.0547***	0.0160	0.0010
	상위 수준	-0.4587(0.0844)***	-0.0889***	0.0163	0.0000
log(푸드뱅크 기부자)		-0.2904(0.1670)*	-0.0559*	0.0321	0.0820
로컬푸드 직매장		-0.0117(0.0030)***	-0.0023***	0.0006	0.0000
노인복지관 시설		-0.0077(0.0044)*	-0.0015*	0.0009	0.0800
재가노인서비스 종사자		-0.0013(0.0008)*	-0.0003*	0.0002	0.0960
학교급식 종사자		0.0001(0.0000)***	0.0000***	0.0000	0.0010
log(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0.2697(0.1506)*	0.0519*	0.0290	0.0730
도시농업 밭 면적		-0.0000(0.0000)	-0.0000	0.0000	0.1690
log(지역아동센터)		0.1447(0.1200)	0.0278	0.0231	0.2280
constant(상수항)		-0.1355(0.7822)		-	
Observation			6,438		
Wald chi2			669.67		
Prob > chi2			0.0000		
Pseudo R2			0.0968		
Log pseudolikelihood			-3660.3522		

- 주 1. 분석모형에서 이분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분산성을 가정(robust)하여 분석
 2. 각 변수의 dY/dX 는 더미변수들의 기준(base level)에 따른 이산변화(discrete change)임
 3. 일부의 변수들은 설명변수들의 정규성을 높이기 위해 log를 적용함. 데이터 간 편차를 줄여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줄일 수 있어 정규성이 높아지기 때문
 4. ***는 1%,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분석모형의 로지스틱 회귀계수 추정치 검정을 위해 Wald 검정을 수행함
- Wald 검정의 경우 해당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형의 적합성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함
 - 검정 결과 Wald 통계량은 669.67로 매우 높고, p-value가 0.0000으로 1%의 유의수준 하에서 추정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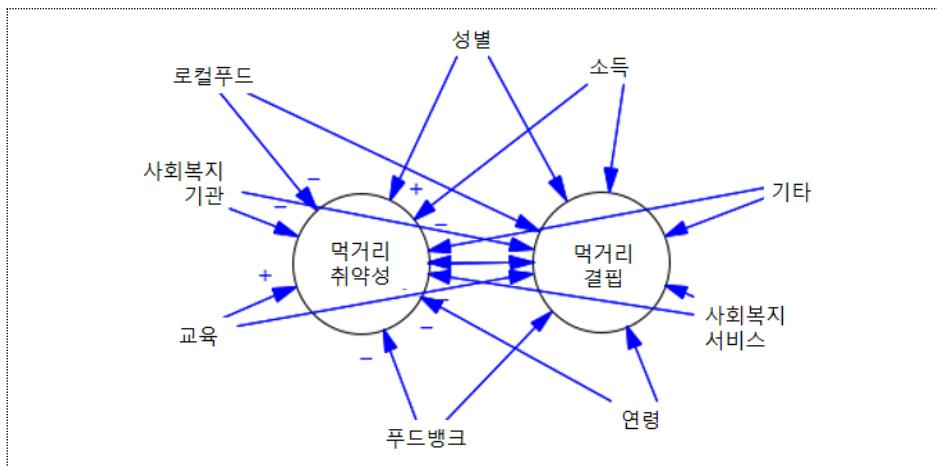
- 이는 모집단에서 회귀계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어 추정치의 유효성은 검정됨
- 모형의 적합성 측면에서 pearson의 적합도 검정을 수행하였음
 - 로짓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 결과,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로짓 모형에 대한 적합성이 검증됨

2.4. 분석의 한계점

- 이 연구의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분석은 종속변수를 결식률로 보고 분석을 수행한 측면에서 먹거리 영양부족에 대한 내용이 간과된 점이 있음
- 향후 먹거리 영양부족에 대한 지표를 탐색하여 해당 지표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 먹거리 취약성과 먹거리 결핍(영양부족)에 대한 인과관계 모형 설정을 통해 먹거리돌봄에 있어 정책의 접근을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먹거리 접근성에 대한 취약계층과 먹거리의 영양부족으로 인한 결핍자 계층을 분리하여 이러한 계층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 계층별 세분화된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과제가 필요함
- 또한, 해당 분석모형의 통계적 방법론에 대해서 획단면 데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질병관리청에서 제시하는 국민영양조사의 경우 표본수집의 특성상 패널자료를 구축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존재함
 - 시간의 경과에 따라 표본의 결식상태 및 영양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모형을 구축할 경우 더욱 높은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측면에 있어 패널모형에 대한 데이터 자료 탐색 및 마련에 대해서 제안을 함

- 먹거리 인프라 및 복지 서비스를 대표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변수들을 더 탐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 로컬푸드 직매장 수, 푸드뱅크 기부자 수, 노인복지관 시설 수, 재가노인서비스 종사자 수, 학교급식 종사자 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 지역아동센터 수’만을 분석에 활용하였음
 - 이들 변수 이외에 착한 가게, 비정형 형태의 먹거리돌봄 관련 서비스, 돌봄 관련 사업 예산 등도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림 2-14 ‘먹거리 취약성-영향요인’ 및 ‘먹거리 결핍-영향요인’ 모델링 분석틀



3. 먹거리 보장 진단, 종합논의

- 앞서 살펴본 우리 사회의 먹거리 보장 관련 현황진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이 어떠한 수준인지 포착하고, 시기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주요 특징별로 차이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음
- 이러한 먹거리 보장 수준의 진단결과의 특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분석결과를 논의하고자 함
- 첫째, 절대적으로 결식률이 높고 영양교육 경험이 낮은 상황에서 양적인 먹거리 보장과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늘려가야 함
- 둘째, 먹거리 취약계층은 소득수준·연령·지역에 따라 다른데, 고령자·저소득층은 물론 특정 연령의 취약성이 높아 계층별 대응전략이 중요함
- 셋째, 먹거리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먹거리 보장 진단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지역사회 먹거리 기반이 먹거리 취약성을 낮추는 데 기여함을 확인함

3.1. 높은 결식률과 영양교육 미경험자, 사회적 대책 중요

- 첫째, 우리 국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식인구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음
 - '19/'15 대비 결식률은 연평균 1.9% 상승하고 있으며, 현재('19) 전체 국민의 37.37%가 하루 중 한 끼니 이상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먹거리가 부족한 경험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19/'15 대비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의 비중은 연평균 22.6% 감소하고 있

는 점은 다행이지만, 현재('19년) 전체 국민의 1.8%는 돈이 없이 먹거리를 걱정하는 절대적 취약계층으로 확인됨

-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영양교육 등을 포함한 식생활 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은 여전히 23%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9/'15 대비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중은 연평균 0.4% 감소하지만, 현재('19) 국민의 86.14%는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거리 부족 경험 비중이 1.8%로 낮아진 점은 성장과 복지의 현상적 결과로 풀이할 수 있지만, 10명 중 3.7명이 결식하고 있고, 10명 중 8.6명이 영양교육 경험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먹거리 보장 현 주소임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 짚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양적으로 먹거리 보장을 늘려가는 대책과 함께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강하고 바른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육 강화가 필요함

3.2 소득수준·연령·지역에 따른 먹거리 취약성 대응 필요

- 첫째, 연령별로 결식인구의 비중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대~50대의 국민이 전체 결식자의 58.5%에 달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함
 - 20대 결식률은 22.6%로 가장 높고, 30대 20.7%, 40대 18.3%, 50대 13.4%로 이른바 생산가능 인구 계층의 결식률이 다른 연령보다 높다는 점이 확인됨
 - 반면 미성년(영유아~고등학생)의 결식률은 14.9%, 고령층(60대~80대 이상)은 10.1%로 나타나 청년·장년층의 결식률과 대조를 보임
- 둘째, 연령별로 식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아 먹거리 부족 경험을 비교한 결과, 60대~80대 이상이 60.3%로 나타나 고령자 구간에 몰려 있음이 확인됨
 - 연령별로 70대 28.1%, 60대 18.3%, 80대 이상 14.0% 순인데, 청년·장년(20대~50대) 계층은 31.7%, 미성년(영유아~고등학생)은 7.9%로 대조를 보임
 - 먹거리가 부족한 사람은 10명 중 고령층은 6명, 생산가능 연령은 3.1명, 미

- 성년은 7.9명으로 고령자의 경제여건과 먹거리 형편이 관계가 큼을 확인함
- 셋째, 소득수준별 결식률과 식비 부족자율을 비교한 결과, 결식률과 식비 부족자 비율 모두 소득 1분위 계층이 다른 소득구간보다 높다는 점을 확인함
 - 소득 1분위(61.6%)와 2분위(26.5%)까지 중위소득 이하의 결식자는 전체 결식자의 80.1%를 차지하여 소득과 결식률의 관계를 현상으로 증명함
 - 식비 부족자 비율은 소득 1분위(55.7%), 2분위(21.8%)의 식비 부족자는 전체 식비 부족자의 77.5%나 되어 소득이 먹거리 형편에 큰 영향임을 확인함
 - 넷째, 연령별로 영양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대~60대의 생산가능 연령 구간에서 82.2%가 영양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영양교육을 받지 못한 비중은 40대(19.9%), 50대(18.4%), 30대(15.7%), 20대(15.1%), 60대(13.1%) 순이며, 고령자(70대~80대 이상)는 10.8%에 그침
 - 미성년(영유아~고등학생) 중 영양교육 미경험자 비율은 9.0%에 불과하였음
 - 다섯째, 지역별로 먹거리 취약계층(결식률, 식비부족 경험자 등)을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상당하게 열악한 것으로 분석됨
 - 결식률은 도시 86.8% > 농촌 13.2%, 식비부족 경험자 비율은 도시 79.8% > 농촌 20.2%,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은 도시 77.3% > 농촌 22.7%로 나타남
 - 행정구역(읍·면·동)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였지만, 도시지역의 먹거리 취약계층이 농촌지역보다 최소 3.4배~6.58배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먹거리 취약계층은 주로 고령층이나 저소득 계층에 몰려 있었지만, 20~50대 연령층에서 결식률과 영양교육 미경험률이 높은 점은 먹거리 취약성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파악하려는 인식경로를 바꿔야 함을 시사한 것임
 - 먹거리돌봄 필요 수요자(대상자)는 우선 고령자·저소득층이 취약계층으로 보는 게 맞으나, 이들 계층 이외에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도 있는 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먹거리 접근의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3.3. 지역사회 먹거리 기반을 통한 먹거리 취약성 하향

- 먹거리 취약성과 먹거리 보장 수준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반된 해석인데, 결국 먹거리 보장 수준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가 먹거리 정책의 핵심과 제이며, 시대정신으로 꼽히고 있음
- 먹거리 보장은 결식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산업화된 먹거리 체계에서 단순한 영양공급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미국)에서는 ‘먹거리 취약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관계 분석’이라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단위의 건강 관련 지표와 공중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바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구관점과 분석방법을 토대로 지역사회 의 먹거리 보장에 어떠한 요인이 관계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증명하고자 하였음
- 국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국가 단위 공식통계(국민건강영향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보장에 영향을 주는 기반(먹거리 인프라)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음. 이를 한계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결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통계적인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성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음
 - 교육수준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결식률이 높아지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20~40대의 결식률은 높으나, 50대 이상이면 낮아지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결식률이 낮은 결과를 보였음
- 둘째, 지역사회에서 먹거리 보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프라를 변수로 결식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 먹거리 거점과 사회복지 기반이 결식

률을 낮추는 요인이 됨을 확인하였음

- 로컬푸드·푸드뱅크·노인복지기관·재가노인서비스 등 수준(자원)이 국민의 결식률을 낮추는데 일정하게 기여(도움)할 수 있음을 확인
- 이는 지역사회 먹거리 관련 자원(로컬푸드·푸드뱅크·선한 영향력 가게 등)이 먹거리 보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결합하여 먹거리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큰 시너지 효과(선한 영향력)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제3장

먹거리돌봄 사례분석

먹거리돌봄 사례분석

- 우리 사회에서는 ‘먹거리’를 매개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을 ‘먹거리돌봄 사례’로 특정할 수 있는데, 일정한 취약계층에게 음식 및 식재료를 제공하거나, 조리교육·영양관리 등의 서비스가 결합되어 지원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먹거리돌봄’의 공간은 ‘지역사회’이며, 지역사회 특성에 근거해 지역의 여러 공동체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하고 있음
- 그동안 정부의 먹거리돌봄에 관련된 지원정책¹³은 부처별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식재료 지원 및 영양관리에 그쳐왔고, 지역사회 관점의 정책 서비스는 간과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먹거리돌봄 사례는 부처의 식재료 지원정책 외에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을 구상하는데 참고할 영역을 3가지로 대별하여 살펴봄
- 첫째, 지역사회 차원의 먹거리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된 ‘정책기획·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임
 - 주로 자자체(광역+기초)가 자체 시책으로 기획하고, 특정 공간의 지역사회를 활동의 범위로 삼아 지역사회 조직자원이 실행주체를 맡고 있음
- 둘째,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조직(공동체+사회적 경

13 정부 차원의 먹거리 지원정책은 도시락 급식, 식재료·과일지원, 보충제 제공,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대별되는데, 이에 관한 주요내용은 부록 4를 참조

제)이 주도하여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갖춰가는 실천사례가 늘고 있음

- 먹거리를 둘러싼 지역의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주목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과 활동을 조직하여 먹거리돌봄의 거점을 확대해 가고 있음
- 셋째, 이 연구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정부(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 먹거리돌봄 활동·서비스를 갖춰가는 정책 사례를 꼽을 수 있음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자립적 식생활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에게 먹거리·영양관리·관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프로그램으로 선도사업 중인 사례임
- 이 장에서는 먹거리돌봄 관련 사례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사례의 기본배경, 추진내용, 주요특징 등을 개괄하여 살펴보고자 함

표 3-1 먹거리돌봄 사례분석 대상

구 분	주요사례	대상과 제공서비스	비고
1.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 먹거리돌봄 사례	①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흔디거념'	노인돌봄, 식사서비스, 커뮤니티키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② 부산시 진구, 건강한 밥상 '온마을 사랑채'	노인돌봄, 식사서비스, 커뮤니티키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③ 부산시 북구, '공유공간 먹거리돌봄'	노인돌봄, 식사서비스, 커뮤니티키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2. 지자체 지원 먹거리돌봄 사례	① 서울시, '함께 모여 만드는 마을부엌'	취약계층, 일반시민, 식사나눔, 조리교육	지자체 사업
	② 부천시, 먹거리돌봄 '마을부엌'	취약계층, 지역주민, 식사나눔, 커뮤니티키친	지자체 사업
	③ 대전 동구, 음식나눔 '나눔냉장고-채움가게'	취약계층, 나눔냉장고	지자체사업, 민간기부
	④ 전주시, 밥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결식아동, 식사배달	자체사업, 민간기부
	⑤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체 마을부엌'	농촌주민, 공동급식, 공동부엌	지자체 사업
3. 민간 주도 먹거리돌봄 사례	① 한살림제주, 먹거리돌봄 지역살림	취약계층, 공유부엌, 식교육, 공동체텃밭, 나눔냉장고	민간활동, 푸드뱅크
	② 약산시, 청소년 자립 '청년식당'	취약청소년, 식사나눔, 식사배달, 관계지원, 일자리	민간활동, 민간기부
	③ 따뜻한 마음이 만드는 '선한 영향력 가게'	결식아동, 나눔식당	민간활동, 민간기부
4. 외국의 먹거리돌봄 사례	① 뉴욕시, 'City meals on wheels'	노인돌봄, 식사배달, 식사나눔	정부지원, 민간활동
	② 뉴욕시, 'City Harvest'	취약계층, 식사배달, 식사나눔, 이동시장, 앱	민간활동, 민간기부
	③ 독일, 'Food Sharing'	음식나눔, 공유냉장고, 앱	민간활동, 민간기부

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사례

1.1.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 ‘흔디거념’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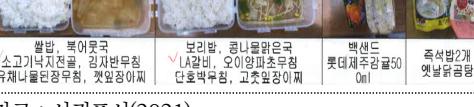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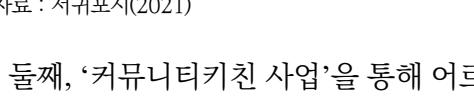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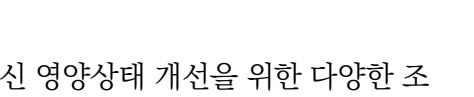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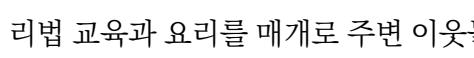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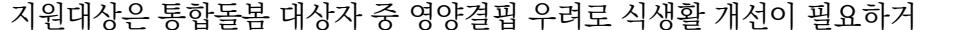
- 서귀포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수행 사례로 ‘어르신 토탈케어 내에 식사 배달 서비스’와 ‘커뮤니티키친’을 운영하고 있음
 - 부족한 돌봄 서비스 확충과 노인이 거주하는 곳에 기반을 둔 주민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노인분야’¹⁵로 선정되어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거주지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노인(‘19년 125명, ‘20년 890명, ‘21년 1,17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첫째, 지역사회통합돌봄 어르신 토탈케어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식사배달’을 통한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어르신 토탈케어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사·이동·식사·목욕)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통합돌봄 정책 대상자 중 거동불편, 질환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음
 - 월 62식 (1일 2식×6천원, 월평균 120명 지원, 1식 6천원 중 2천원은 운영비로 사용)

14 이 내용은 서귀포시(2021)와 연구진의 현장 면담조사를 통해 작성하였음. ‘흔디거념’은 제주어로 ‘함께 돌봄’이라는 뜻

15 서귀포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요사업은 ‘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동기반 구축, 보건·의료·주거·돌봄·복지분야 등 다기능 다학제 민관협력 체계 마련,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 인프라 확충, 주민욕구 맞춘 단역적 통합돌봄 프로그램 운영, 돌봄 필요도 조사와 케어, 적정 서비스 연계 제공, 노인·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등임

- ‘식사배달’의 수행기관은 지역사회 복지기관(예담재가복지센터)이며, 식사인력은 주방(조리) 3명, 배달 3명 등으로 구성됨
- 제공되는 식단은 동일 법인(예담재가복지센터)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의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활용하고 있음

그림 3-1 서귀포시 식사배달 서비스의 주요내용

월	화	수	월	화	수
					
기장밥, 데지고기찌개, 도토리묵무침, 가지아채무침, 애기배추무침, 청난젓	꽈배기, 동태탕, 닭다리살아채볶음, 단무지무침, 속주나물무침, 미역쫄기볶음	보리밥, 해산물된장찌개, 뒤지고기장조림, 풍나물무침, 어온드멸치볶음, 오징어젓	아치죽, 뉴케어	단호박죽, 배지말, 뉴케어	전복죽, 뉴케어
목	금	토	목	금	토
					
쫄밥, 볶어웃국, 소고기낙지전골, 김치반무침, 유체나물된장무침, 깃잎장아찌	보리밥, 풍나물맑은국, 나갈비, 오이양파초무침, 단호박무침, 고춧잎장아찌	백샌드, 롯데제주감귤500ml, 죽석밥2개, 옛날닭곰탕	보말(아체숙, 배지밥, 뉴케어)	야채쪽, 뉴케어	카스터리, 쥬스
					

자료 : 서귀포시(2021)

- 둘째, ‘커뮤니티키친 사업’을 통해 어르신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리법 교육과 요리를 매개로 주변 이웃들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통합돌봄 대상자 중 영양결핍 우려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임

표 3-2 서귀포시 커뮤니티키친 운영현황

구 분	1권역 (대정읍~중문동)	2권역 (대천동~효돈동)	3권역 (남원읍~성산읍)
지역특성	읍·면지역, 이동불편, 돌봄자원 부족	동지역, 교통편리, 돌봄자원 집중	읍·면지역, 이동불편, 돌봄자원 부족
운영방법	지역별 소그룹 (5인 이하) 운영	노인복지관 활용 8~10명 그룹, 전문강사	개인별+소그룹 병합운용
특이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 (강사·장소·지역연계 등)	타 권역보다 어르신 참여 적극적	새마을부녀회, 동네별 소그룹 어른신1인+부녀회원 결합

자료 : 서귀포시(2021)

- 운영내용은 제철·지역 농산물 등을 활용해 손쉽게 할 수 있는 조리법 강의와 영양교육(부녀회와 협의체 등 지역자원 활용)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대면의 제약을 영상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음
- 커뮤니티키친은 권역별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수행을 맡고 있는데, 지역 사회의 소지역 (읍면)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고 있음

그림 3-2 서귀포시 커뮤니티키친 주요 활동



자료 : 서귀포시(2021)

- 셋째, 서귀포시 사례의 특징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내의 먹거리돌봄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읍·면별 별도의 ‘지역특화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임¹⁶
- 개개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원 한계로 민관이 협력하고 주민과 후원자를 발굴하여, 그 재원으로 지역특화 먹거리돌봄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특화 먹거리돌봄의 운영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맞춤형 복지팀)가 맡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음
- 필요한 재원은 민간의 후원을 통해 사업비를 조성하였는데, 희망나눔캠페인으로 28.4억원(‘14.4~‘21.7)을 자원으로 조성하였음

16 서귀포시의 ‘읍면별 지역특화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은 남원읍(홀로 사는 노인·장애인 밀반찬 나눔), 영천동(해피 도시락 지원), 성산읍(밀반찬 지원, 희망찬 밀반찬), 안덕면(따뜻한 집밥 나눔, 딩동딩동 건강음료 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김치나눔, 해피라이프 따뜻한 음식 나눔), 표선면(영양 듬뿍 밀반찬 나눔), 동흥동(힐링 푸드케어), 송산동(희망더하기 밀반찬 지원), 서흥동(이웃 건강 살피미 도시락 배달), 정방동(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지원), 대륜동(밀반찬 지원), 중앙동(영양가득 밀반찬 지원,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 밀반찬 지원), 천지동(천지행복 나눔행복 도시락 지원), 대천동(저소득 층 김치나눔 행사), 효돈동(김장김치 두드림 지원), 중문동(국민기초가구 김치드림), 예래동(취약계층 부식 지원) 등임.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2021)을 참조

-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어르신 토탈케어 등) 종료 이후, 지역특화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연계해 추진할 계획임

1.2. 부산시 진구, 건강한 밥상 ‘온마을 사랑채’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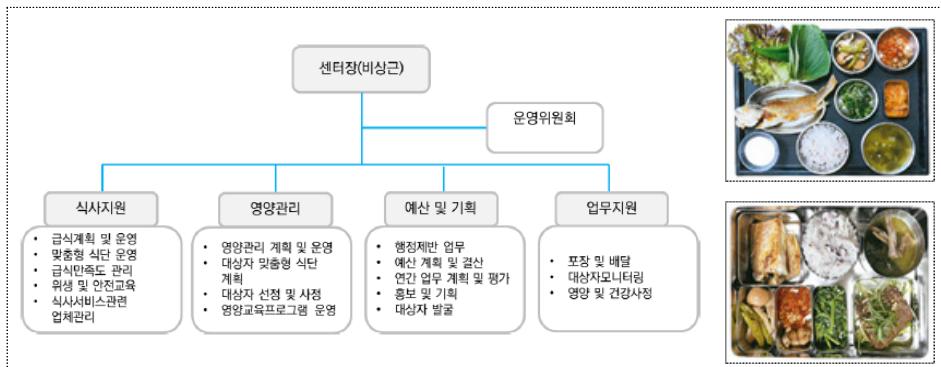
- 부산시 진구 건강한 밥상 ‘온마을 사랑채’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커뮤니티키친-온마을 사랑채’로 식사배달을 하고 있음
 -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식사제공·영양관리를 통해 협약을 지연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영양 상태개선을 목적
 - ‘온마을 사랑채’의 먹거리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대상 중 건강·영양관리가 필요한 자임(159명, ‘21.9.)
- 첫째,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커뮤니티키친’을 갖추고, 주체별 역할분담으로 먹거리돌봄을 실천하고 있음
 - 2019년 대학(동의과학대학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노인 맞춤형 식사·영양관리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음
 - 2020년 2월 주민의 식생활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키친 운영방안 연구와 5월 식사·영양관리사업의 업무협약을 민·관·학이 참여하여 체결하였음¹⁸
 - 2020년 7월 노인 식생활 통합돌봄 모델 운영을 위해 ‘온마을 사랑채-범전점’을 개소하였는데, 식사배송은 지역자활센터(부산진자활센터)가 맡고 식자재 납품은 민간기업(풀무원 푸드머스)가 담당함
- 둘째, 계획부터 운영까지 민·관·산·학·연이 참여하여 식생활 먹거리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커뮤니티키친을 구현하고 있는 사례라는 점이 특징임
 - 식사·영양관리 데이터 기반 플랫폼의 개발·안정화, 커뮤니티키친의 구축·운영,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주체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함

17 이 내용은 한진숙(2021)에서 작성하였음

18 행정(부산 진구), 대학(동의과학대학교), 기업(풀무원 푸드머스), 복지기관(진구노인복지관), 사회단체(진구자원봉사센터), 민간단체(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등이 참여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식사 서비스 지원센터’(운영주체)는 동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학교기업이 맡고 있음¹⁹

그림 3-3 부산 진구 식사 서비스 지원센터 체계



자료 : 한진숙(2021)

- 셋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급식영양사를 배치, 개인별 식습관, 신체·질병상태, 구강 건강 등에 따른 맞춤형 식단제공과 영양관리를 실행하고 있음
 - 서비스는 ‘영양 스크리닝 → 영양 진단 → 영양 중재(식사제공 및 모니터링, 영양관리) →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의 추진절차를 따름
 - 특히 노인의 식사 특성을 고려해 메뉴를 분류하고, 조정이 필요한 메뉴, 사용 금지 메뉴,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6주 사이클 식단을 적용해 식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식단을 구성한 점이 특징임²⁰
 - 식사 서비스 이용금액은 월 20만원(1식 8,000원)으로 점심식사·오전·오후

표 3-3 부산 진구 식사·영양관리사업 업무협약의 기관별 역할분담

구분	부산 진구	동의과학대학교	(주)푸드마스	부산 진구 자원봉사센터	부산 진구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담당 역할	사업총괄 예산지원	키친모델 개발·운영	고령친화 식재료 제공	배달지원		이용자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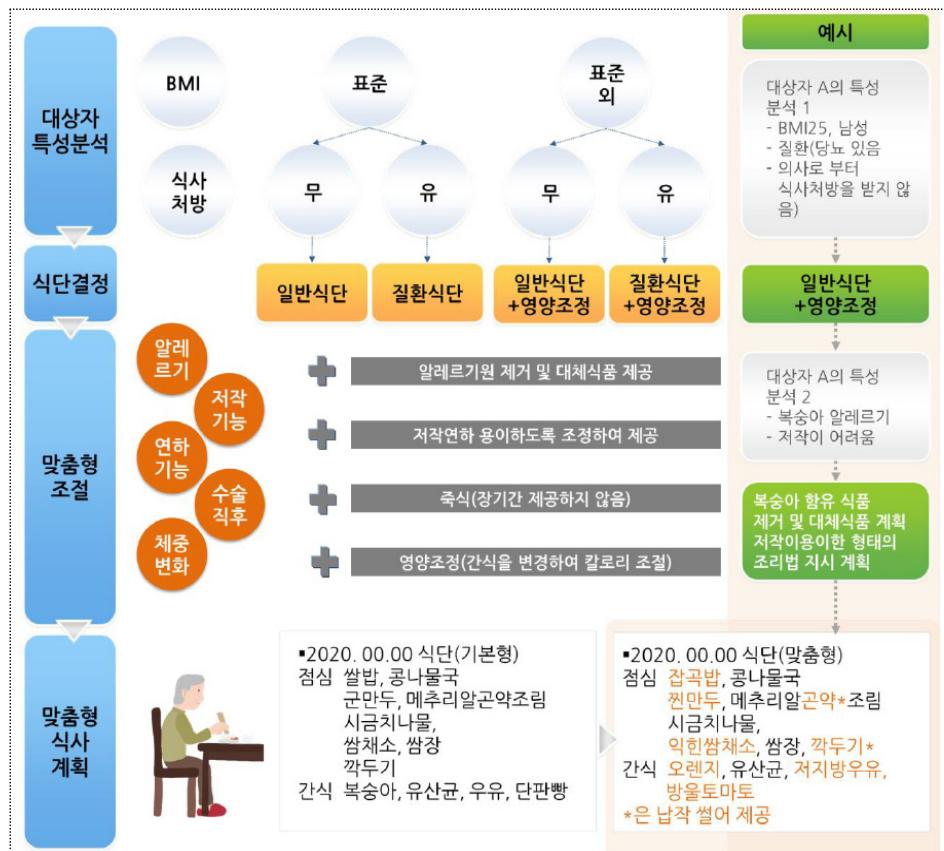
자료 : 한진숙(2021)

- 19 필수인력(센터장·영양관리영양사·급식영양사·사무장·조리사·조리원, 6명), 포장·배달 인력 20명
20 대부분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반식 제공기준은 혈압·당뇨·고지혈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사제공 기준을 마련하였음

간식을 제공하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²¹과 연계함

- 먹거리돌봄의 제공 서비스는 월 1회의 영양관리와 월 24회의 식사지원(주 6회 월~토요일)으로 구성됨
- 제공방법은 회합이 가능한 식당배식과 거점·개별 배송으로 이뤄지는데, 코로나19로 전면 도시락 배달로 전환하였음(방문포장, 거점배달, 가정배달)²²

그림 3-4 부산 진구 맞춤형 식사 계획



자료 : 한진숙(2021)

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요는 4장 3절을 참조

22 거점배달을 확대해 회합식사를 하며 모니터링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검토하고 있음

1.3. 부산시 북구, ‘공유공간 먹거리돌봄’²³

- 부산시 북구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유공간 먹거리돌봄사업’을 실행하고 있음
 - 통합돌봄 대상자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어르신 영양 보드미 서비스’와 가사 지원활동 일환으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식사를 직접 만들거나 준비해드리는 ‘돌봄 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먹거리 공유공간으로 ‘새프락 커뮤니티센터’와 ‘만덕 어울락 커뮤니티센터’는 공유공간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돌봄 활동 가가 공동으로 ‘함께하는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임
 - 부산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이뤄지는 지역사회 공유공간으로 ‘통합돌봄 어울림센터’²⁴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 공간이 먹거리돌봄의 거점이 되고 있음
- 첫째,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권역을 나누어 먹거리돌봄 서비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어르신 영양 보드미’ 서비스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미더덕협동조합,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음
 - ‘돌봄 채움’ 서비스는 지역 자활센터(북구지역자활센터, 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담당하고 있음
 - 단순한 식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행인력이 건강상태 및 정기적 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조정해 만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됨
 - 특히 부산형 OK 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먹거리돌

23 이 내용은 정신모(2021)에서 작성하였음

24 ‘통합돌봄 어울림센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과 새뜰사업과 연계하여 결로당 현대화 사업 등과 같은 방식으로 공유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거점임. 돌봄 활동가 양성, 운동·치매예방, 보건소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사업(노인일자리 프로그램, 신중년 여성지원, 노인교실 등)이 이뤄짐

봄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개발과 같은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3-5 부산 북구 식사 서비스 주요 활동



자료 : 정신모(2021)

- 둘째, 공유공간 먹거리돌봄의 거점으로 ‘새뜨락 커뮤니티센터’는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밥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대표 모델로 꼽을 수 있음
 - 상대적 취약지역인 새뜰마을(북구 구포2동) 내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유공간 ‘새뜨락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하였음
 - 주민 중심의 새뜰마을 공동체가 주민교육 및 회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 운영을 시작하였고, 혼자 식사해결이 어려운 취약자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밥상 공동체를 만들게 됨
 - 주 1회 30여명 어르신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식자재를 준비하고, 음식을 조리하며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도시락을 만들어 가정으로 전달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림 3-6 부산 북구 ‘새뜨락 커뮤니티센터’ 먹거리돌봄 주요 활동-1



자료 : 정신모(2021)

- 셋째, 공유공간 먹거리돌봄의 거점으로 ‘만덕어울락樂’은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돌봄 활동가가 결합한 공유공간임
 - 2020년 11월 어르신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만덕어울락’ 공간을 조성하였음 (북구 만덕2동)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돌봄 활동가 상주하여 공유카페를 운영하고, 건강·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식사해결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돌봄 활동가와 어르신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는 밥상 공

그림 3-7 부산 북구 ‘새뜨락 커뮤니티센터’ 먹거리돌봄 주요 활동-2



자료 : 정신모(2021)

동체인 ‘어울리는 한 끼’를 구성하였음

- 남성 어르신이 많아 밀키트나 간단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 음식을 나누는 등 먹거리돌봄과 이웃 돌봄을 실천하고 있음

[참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내 ‘식사영양관리 사업’ 주요내용

○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본인부담 2~6만원/월) – 서비스 기간 : 12개월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이외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60% 이하
정부지원금	160,000원	140,000원	100,000원
본인부담금	40,000원	60,000원	100,000원

○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정기적인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구분	주요내용		주기								
사전검사	간이 영양검사 등 식습관, 건강상태를 파악		초기 1회								
식사지원	마을 공동식사, 반찬·도시락 배달, 완전조리식품 배달 등 다양한 유형의 식사지원 서비스 제공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파악하여 식단 작성 필수)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마을 공동식사</td><td>정기적으로 공동식사 제공</td></tr><tr><td>반찬·도시락 배달</td><td>주 3회~5회 주기 중 선택하여 제공</td></tr><tr><td>완전조리식품 배달</td><td>저작 어려운 노인 위한 유동식 포함, 선택 제공</td></tr></tbody></table>	구분	내용	마을 공동식사	정기적으로 공동식사 제공	반찬·도시락 배달	주 3회~5회 주기 중 선택하여 제공	완전조리식품 배달	저작 어려운 노인 위한 유동식 포함, 선택 제공	주 3~5회 서비스별 상이	
구분	내용										
마을 공동식사	정기적으로 공동식사 제공										
반찬·도시락 배달	주 3회~5회 주기 중 선택하여 제공										
완전조리식품 배달	저작 어려운 노인 위한 유동식 포함, 선택 제공										
영양관리	사전영양검사에 기반한 정기 영양관리 지도상담, 교육(영양상태, 영양소 섭취 균형상태 등 변화척도 분석)		월 1회								

- 서비스 제공절차

-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환경과 이용욕구 파악, 계약내용 전반에 대한 구두합의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조사항 안내
- ② 2단계 : 제공인력 매칭 및 계약서 작성
- ③ 3단계 :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필요시 제공기관 간 협의하여 수시 욕구 파악·연계)
- ④ 4단계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서비스 제공 계획 조정
- ⑤ 5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자료 : 부산시(2021)

2. ‘지자체 지원’의 먹거리돌봄 사례

2.1. 서울시, ‘함께 모여 만드는 마을부엌’²⁵

- 서울시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조리·식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가는 ‘관계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으로 ‘마을부엌’을 운영하였음
 - 서울시가 밝힌 ‘마을부엌’은 먹거리 기본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며, 도시가 안고 있는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먹거리를 통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를 위한 시도였음
-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정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리공간을 마련하고, ‘마을밥상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시작하였음
 - 이는 국가 주도의 전통적 먹거리 제공 정책수단(푸드뱅크, 무료급식소 등)과 달리 지역공동체의 자생적 조직지원을 근거로 정책을 발전시켜온 것임
 - 2018년 ‘마을부엌 시범사업’으로 다양한 형태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는데,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를 사회단체(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시정협 치 담당)가 맡아서 운영하였음
- 첫째, 서울시는 마을부엌이 ‘식생활 개선, 공동체성 증진, 먹거리 시민성 고양, 사회적 소외계층 먹거리 보장’ 등에 관한 의미있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공동부엌 시설을 운영하여 함께 만들어 먹고 나누며(공동부엌), 식사 준비

25 이 내용은 소혜순(2021)에서 작성하였음

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식사 준비 역량을 늘려줌(조리교육)

- 공동부엌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 함께 돌보고(먹거리돌봄), 소셜다이닝과 같이 함께 준비하고 식사를 하면서 교류함(공동식사)
- 마을부엌의 부가적 활동으로 반찬나눔·무료급식을 하며(먹거리 나눔), 친환경텃밭·대안시장(직거래) 등의 활동을 하는(대안 먹거리 활동) 공간임

표 3-4 서울시의 마을부엌 기능

범주	주제	주요활동
식생활 개선	조리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지식을 습득, 레시피 공유, 조리의 자신감 · 아이들이 조리방법 습득, 외식이 줄고 집밥 횟수 증가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조리와 나누기, 신선하고 좋은 재료의 공동 구입
	식습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밥이 줄어들고 함께 먹는 기쁨 · 텃밭, 실습, 함께 식사 등 통해 아이들의 채소 거부감 감소
공동체성 증진	아동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뛰노는 사랑방, 방과 후 공간, 동네 아이들 함께 키움 · 밥상머리 교육 식사예절, 설거지, 뒷정리 습관 · 아이와 어른의 스스럼없는 관계, 맞벌이 부모에게 고마운 곳
	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솥밥 먹으며 친밀감 향상,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 · 식사 중 담소가 관계의 출발, 텃밭이 주민들과 만나는 매개 · 1인 가구의 일상을 나누는 동네 친구
	소외이웃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찬 나눔 활동, 이웃나눔 밥상
먹거리 시민성 고양	먹거리 시민의식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초등학교와 연계한 마을부엌 먹거리 교육 진행 ·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늘땅 살이
	나눔과 공유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남는 식재료 함께 나눔 · 가정에 김치냉장고, 대형냉장고, 정수기 필요가 없어짐
사회적 소외계층 먹거리 보장	부엌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원 증은 공간 문제로 공유부엌 같은 시범사업 필요 · 1~2평 남짓한 쪽방, 주방시설 없고 화재 위험에 대응
	결식, 혼밥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찬밥 물 막아 먹는 것 개선, 노인 직접 조리가 힘듦 · 집밖에 나와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음
	자존감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짜에 길들여지지 않음 · 반찬나눔·배식봉사에 당사자들 참여
	돌봄, 자원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교류로 고립감 해소, 고독사 방지 · 이웃과 나눔밥상 할 때 자연스럽게 자문 연결

자료 : 소혜순(2021)

- 둘째, 서울시의 마을부엌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과 형태로 참여자의 필요와 요구를 일정하게 해결하면서,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돌봄의 거점

으로 기능하고 있음

- ‘보장형 마을부엌’은 결식해결과 자활을 목적으로 쪽방 등의 밀집 지역에서 결식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의 지원을 통해 공간과 식재료 등을 지원받아 시민사회단체·복지재단·종교기관 등이 운영주체를 맡고 있음
- ‘1인 가구형 마을부엌’은 관계를 맺으며 조리기술을 배우는 등의 목적으로 청년·노인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행정의 보조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운영하는 형태로 시민사회단체·지역복지관 등이 운영하는 유형임
- ‘지역공동체형 마을부엌’은 돌봄과 공동체성을 위해 아동·청소년·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행정과民間의 협력 방식으로 콘텐츠와 교육 등을 진행하는데 지역사회 조직이 운영주체가 되고 있음
- ‘자율형 마을부엌’은 구성원의 문제해결과 요구를 목적으로 공동체 주택·마을 등과 같은 특정 공간 주민이 내부모임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형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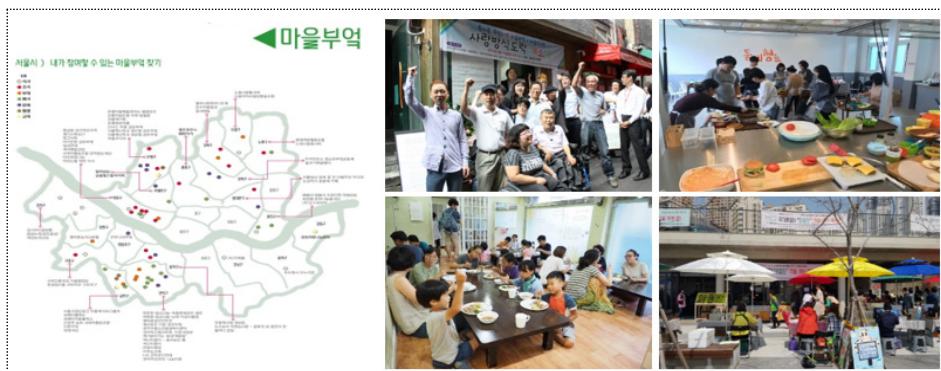
표 3-5 서울시의 마을부엌 유형

구 분	보장형	1인 가구형	지역공동체형	자율형	사회적기업형
목 적	결식해결, 자활 등	관계형성, 조리기술 배우기 등	돌봄, 공동체형성, 조리기술증진 등	구성원 문제해결, 요구맞춤 등	사회문제해결, 사회적가치 등
대 상 (참여자)	빈곤 결식계층	1인 가구 (노인, 청년)	아동, 청소년, 여성, 중장년 등 지역주민	내부 구성원	시민 다수
지역특성	쪽방, 노숙인, 밀집지역 등	대학가, 고시촌, 임대아파트 단지	일반	공동체주택, 공동체마을	일반
운영주체	시민사회단체, 복지재단(위탁),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 지역복지관	지역커뮤니티	내부모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공지원	지원형	보조형	협치형	자율형	초기 지원형
지원내용	재정, 공간, 식재료 등	재정 일부, 공간, 운영	컨텐츠, 공간, 교육 등	없음	공간, 자금, 컨설팅
주 안 점	기초권리 보장, 무상지원, 관리감독	설비 이용, 부분 관리감독	재정 외 지원	자율운영	초기 정착 지원
대표사례	동자동 식도락, 망월2동 경로당, 난곡 이웃사랑방	청년공유부엌 이음, 대대식당, 친구네 식탁	관악주민연대, 신나는 마을, 아지트틴스 등	저해모, 인수마을밥상	건강한 농부, 전환마을, 마을무지개

자료 : 소혜순(2021)

- ‘사회적기업형 마을부엌’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시민 다수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임
- 셋째, 서울시의 마을부엌은 먹거리돌봄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는 역할에 주목하여 ‘충분히,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잘 먹지 못하는’ 여러 원인들에 대한 일정한 실천적 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 거주가 불안정하고, 시간·조리기술이 부족하며, 문화적 차이가 있고, 젊은 부부, 1인 가구, 주거 불안자 등에게 먹거리 제공의 거점이 되고 있음
 - 반찬·도시락 배달, 무료급식, 푸드뱅크, 어린이식사지원(꿈나무카드 등)의 한계를 일정하게 보완하면서 교육·공동체성·시민성 등에 기여하고 있음
- 넷째, 마을부엌에 대한 행정의 지원은 ‘지역성·자치성’을 보장하는 원칙·방향에 따라 민관이 협력하여,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정책지원 종료 후 운영에 필요한 재정 어려움으로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다수 있어 지역사회의 (조직)자원이 결합한 지속 운영 방안이 요청되고 있음
 - 마을부엌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기반하므로 단일한 형태로 모델링·일반화하기 보다 지역사회의 필요(참여주체, 목적 등)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임

그림 3-8 서울시 ‘마을부엌’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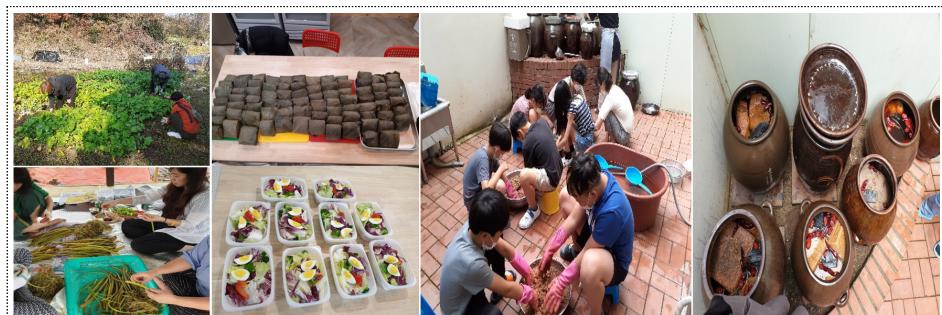


자료 : 소혜순(2021)

2.2. 부천시, 마을공동체 ‘공유부엌’²⁶

- 부천시의 마을공동체 ‘공유부엌’은 노인·장애인, 학교 밖 청소년의 먹거리 보장, 혼밥족 대상의 먹거리 제공, 임산부 식생활 교육, 지역주민들을 향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등 지역과 대상에 맞는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8~2020년까지, 마을 협동조합 ‘소란’이 주체가 되어, 부천시의 마을공동체 사업(공모)의 지원²⁷을 받아 식생활 교육과 먹거리 나눔 등 마을부엌²⁸을 운영하고 있음²⁹
- ‘마을부엌’ 공간은 ‘부천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마을협동조합 소란’이 공동으로 준비하여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조성하였음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을 통한 공동체 돌봄, 공유부엌을 통한 마을 안 사회적 관계 형성, 먹거리를 통한 사회참여를 역할로 정하고 있음
- 첫째, 커뮤니티키친(마을부엌)의 공간을 조성하여 먹거리돌봄 활동 프로그램의 거점을 갖춰 나가고 있음

그림 3-9 부천시 ‘마을부엌’의 마을공동체 먹거리 활동



자료 : 마을협동조합 소란(2021)

26 이 내용은 마을협동조합 소란(2021)에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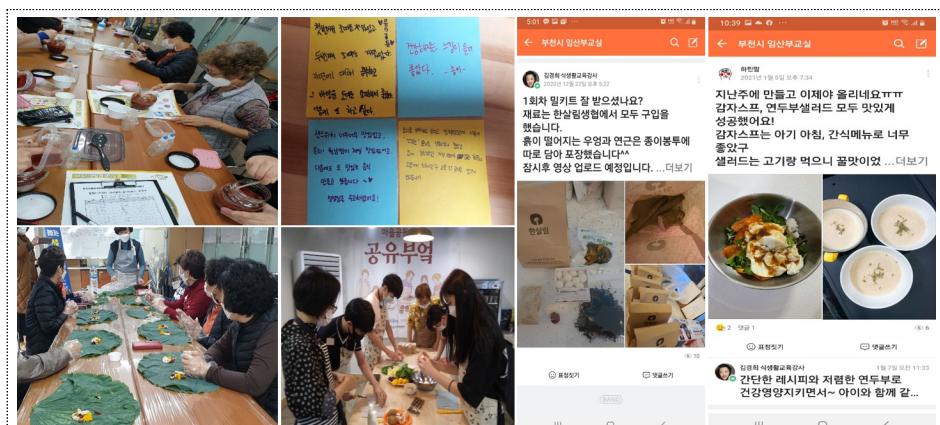
27 2018년 부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식생활 강좌·실습(10회) 진행

28 2019년 협동조합 소란이 주체가 되어 먹거리 실습·나눔(10회), 지역 기관·단체와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15회)을 진행

29 2020년 덧밭·복지관·청년주택·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강좌·나눔(45회) 진행

- 공동체 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관·청년주택·노인복지관 등 의 지역사회 조직과 함께 식생활 강좌와 실습을 통한 먹거리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
- 둘째, 마을부엌을 거점으로 ‘식생활 교육,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마을공동체 먹거리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식생활 교육은 지역 어르신, 지역아동센터, 가정이탈 청소년, 임산부, 독거 청년, 장애인 그룹홈 등이 대상임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은 독거 어르신(행정복지센터 연계), 장애인 가정, 독거 가정, 가정이탈 청소년 등이 대상임
 - ‘마을공동체 먹거리 나눔’은 마을 장독대(대안학교), 공동체 텃밭, 이웃들과 끼니 나눔, 친환경 반찬 나눔 등이 주요한 프로그램임
- 셋째, 부천시의 ‘공유부엌’은 먹거리를 매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화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이웃 끼니 걱정’에 대응하여 독거 어르신 한끼를 마을부엌에서 나눔을 담당
 -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건강 먹거리’를 위해 아이들과 건강한 먹거리를 탐구
 - ‘청년 먹거리 걱정’에 대응하여 청년주거협동조합·이웃청년 밀키트를 배송
 - ‘장애 청년의 먹거리’를 위해 스스로 먹거리를 자립할 수 있는 식생활 교육

그림 3-10 부천시 ‘마을부엌’의 식생활 교육 주요 활동



자료 : 마을협동조합 소란(2021)

- ‘가정 밖 아이들’ 쉼터 청년을 보듬어 마을부엌에서 생일잔치 관계망을 만듦

그림 3-11 부천시 ‘마을부엌’의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자료 : 마을협동조합 소란(2021)

2.3. 대전 동구, 음식나눔 ‘나눔냉장고-채움가게’³⁰

- 대전 동구의 ‘나눔냉장고’는 주민들이 음식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유로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먹거리를 나누고 돌봄을 하는 사례임
 - 2017년 대전시 동구(용운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13개 주민단체가 모여 비영리민간단체인 (용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출발점을 ‘음식나눔 사업’으로 설정함
 - 2017년 7월 1개동에서 시작하여 총 10개 동에서 나눔냉장고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첫째, 주민센터에 마련된 냉장고에 자율적으로 식재료를 기부하고 어려운 이웃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먹거리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임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웃)에게 먹거리 나눔의

30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2018), 행정안전부(2019a; 2019b; 2019c)에서 작성하였음

공간을 만들고 지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임

- 식당·제과점·정육점 등 자영업이 많고 농사를 짓는 주민과 재래시장³¹도 있어 남는 식재료를 후원할 환경이 좋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진하였음
- 둘째, 주민센터에 나눔냉장고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먹거리를 채우고, 관리와 운영은 지역주민 조직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나눔냉장고를 채우는 나눔 먹거리는 쌀·고기·채소·과일·음식 등 다양한데, 후원은 지역식당·마트·제과점·가게 등에서 현물+현금 등으로 후원함
 - 나눔냉장고의 관리(소분, 청소 등)는 지역 주민조직이 순번제로 담당하는데, 요일별로 식재료를 안내하여 나눔냉장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줌
- 셋째, 먹거리 나눔과 돌봄의 소규모 거점인 나눔냉장고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채움가게’를 통해 나눔 먹거리를 채워가고 있음
 - 단순 식재료 이외에 지역의 식당·가게 14개 사업체가 나눔냉장고 식재료와 음식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음
 - 정육점은 매주 일정량의 고기를, 국밥집은 매일 20~30인분의 음식을 기부하여 나눔냉장고를 풍성하게 하고 있음

그림 3-12 대전 동구 ‘나눔냉장고’의 주요활동



자료 : 마을협동조합 소란(2021)

31 신도 꼼지락 시장 상인들은 정기적으로 식재료와 음식을 모아 나눔 냉장고에 기부

-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그들의 일상을 돌보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나눔냉장고의 본래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채워가기 위한 여러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음
 - 나눔냉장고에서 시작한 활동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조직은 ‘아동 간식 나눔, 중년 한 끼 나눔, 어르신 한 끼 나눔’ 등으로 확대하고 있음
 - 종잣돈 만들기(후원처 발굴), 위기가정 긴급구호-의식주 지원사업 등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확대 시켜가고 있음 (행정안전부 지역혁신 우수사례 선정)

2.4. 전주시, 밥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³²

- 전주시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이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갈수 있도록 새벽에 배달되는 지자체가 민간과 협력으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 프로그램임
 - 저소득 계층 등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에게 균형있고 영양가 높은 아침밥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학교급식마저 중단된 상황이어서 ‘엄마의 밥상’ 도시락은 결식 아이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임
 - 2014년부터 시작된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연간 300여명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음
- 첫째, ‘엄마의 밥상’ 프로젝트는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돌봄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 시책으로 ‘전주푸드플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주푸드플랜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시행한 전국 최초의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먹거리돌봄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실행해 왔음
 - 대표적 먹거리 고장으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에서 가정 형편으로 밥을 굶는 아이가 없는 ‘사람의 도시’를 만들자는 자체 정책 프로그램

32 이 내용은 전주시(2020)에서 작성하였음

- 둘째, ‘엄마의 밥상’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희망을 가져가도록 매일 새벽 배달되는 도시락 형태의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임
 - 18세 이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193세대, 306명, ’21년)이 대상³³
 - 주민자치센터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 생활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결정함
 - 지원대상은 지역사회 구성원(우체부, 요구르트 배달원 등)이 마당발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까지 찾고 있음
- 셋째, 엄마의 밥상 도시락은 전주시의 재정지원과 지역사회 지정기탁금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지역 먹거리 업체가 조리·배달 등을 담당하고 있음
 - 전주시는 1식당 단가를 5천원(365일)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주체(전북외식산업)에게 위탁함
 - 도시락(밥, 국, 3찬)과 밑반찬(3찬)이 주 5회 집집마다 새벽 배달되고 있음
 - 지정기탁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 수행하고 있는데, 모금액은 도시락 배달 이외의 프로그램에 지원되고 있음³⁴
- 넷째, 엄마의 밥상 아침 도시락 배달 지원 이외에 먹거리 지원 프로그램을

그림 3-13 전주시 밥 짖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의 주요활동



자료 : 전주시(2021)

33 ‘엄마의 밥상’ 전주시의 재정지원 대상은 ’14년(183명), ’15년(277명), ’16년(280명), ’17년(280명), ’18년(280명), ’19년(280명), ’21년(310명) 등으로 늘고 있음

34 ‘엄마의 밥상’으로 지정기탁된 모금액은 ’14년~’21년 누적 1,915건(696명) 총 9억원

- 추가하여 먹거리 취약 아이들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나누고 있음
- 간식(주1회, 과일, 유제품, 빵), 생일케이크(1인 3만원), 명절맞이 선물(연 2회), 부식지원(1식 500원, 급식 지원단가 보전) 등임
- 매년 50여통의 감사편지가 도시락통에 넣어져 회수되고 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정책('15년), 라이온스봉사대상('21년)으로 선정되었음³⁵

2.5.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체 마을부엌’³⁶

- 남해군의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촌지역 주민이 마을단위 ‘공동체 마을부엌’을 통해 농촌사회에 특화된 먹거리 제공과 돌봄을 실행하고 있는 자체 자체 시책 프로그램임
 - 농촌마을은 농번기 시기에는 집안일과 농작업을 병행해야 해서 주로 식사를 준비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큰 부담이 되었음
 - 여성 농업인의 영농 중단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남해군은 2009년부터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을 위해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2015년 10월부터 제정·시행하고 있음
- 첫째, 농촌지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식사마련의 부담이 큰 시기에 농촌마을단위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동체 먹거리돌봄 지원정책임
 - 농작업 수요가 많은 농촌마을 중에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하루 10명 이상, 연간 60일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마을공동체)을 지원
 - 지원조건을 충족한 농촌마을에 행정(남해군)은 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원의 인건비와 식재료비(부식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둘째,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촌마을 별로 재배하는 주요 작물 등이 다

35 2019년부터는 동네서점을 통해 상·하반기로 나눠 연간 4권의 도서도 지원하고 있음

36 이 내용은 연합뉴스(2020.9.13.) 기사에서 작성하였음

른 점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영농일정에 따라 공동급식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마을주민의 먹거리 수요에 대응함
 - 지원기준인 공동급식 일수(25일)와 급식 인원수(20명 이상)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1일 식비 8,000원으로 정하고 간식 구매는 불가함³⁷
- 셋째, 코로나19로 농촌 마을회관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도시락 배달 이용 계획을 마련함
- 기존 농촌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공동급식 지원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함
 - 공동급식의 지원방식 확대는 지역식당(도시락 등)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음

그림 3-14 남해군 ‘농촌마을 공동급식’의 주요활동



자료 : 연합뉴스(2020)

37 마을별 지원금은 30명 미만은 250만원을, 30명 이상 마을은 6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3. 민간 차원의 먹거리돌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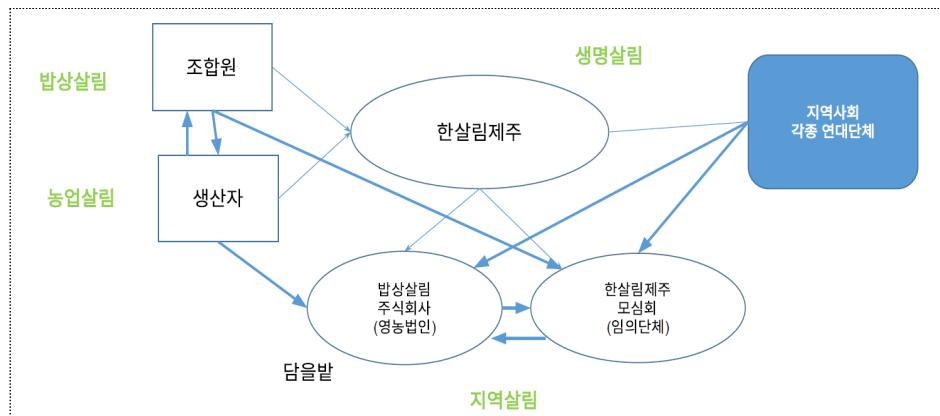
3.1. 한살림제주, ‘먹거리돌봄 지역살림’³⁸

- 한살림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돌봄 지역살림’은 지역 먹거리 체계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조직자원과 연계하여 먹거리돌봄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임
- 첫째, 한살림제주의 먹거리돌봄 지역살림은 ‘돌봄’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정의하고, ‘돌봄 공동체’의 역할을 찾아,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로 나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한살림제주는 ‘돌봄’에 대한 적극적 정의를 통해 돌봄을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돌보는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호지원, 공공공간, 공유자원, 지역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하였음(더케어 셀렉티브 ‘돌봄선언’)
 - 이러한 관점에서 한살림제주는 ‘사업을 통한 가치실현, 활동을 통한 가치실현, 가치실현을 위한 투입’으로 구분하여 지역살림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둘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성격을 반영하여 한살림제주 방식의 지역 먹거리 체계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음
 - 푸드플랜은 산업적·이윤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공공성·사회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명살림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살림, 지역살림을 강조하는 한살림 정신의 핵심으로 정하였음

³⁸ 이 내용은 김자경(2021)과 한살림제주 면접조사를 통해 작성하였음

- 특히 지역 먹거리 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생산~가공~유통~소비’를 넘어 폐기와 ‘돌봄’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셋째, 먹거리돌봄 지역살림의 사업방식은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조직으로 분화하여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은 ‘수놀음 자활센터와 한살림 담을센터’를 통해 하고 있음
 - 가까운 먹거리 체계의 구축을 위한 생산~공급 등의 사업은 영농회사법인 ‘밥상살림’이 맡고 있음
 - 서로 협동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업과 활동은 ‘한살림제주 모심회’가 담당함

그림 3-15 한살림제주의 ‘먹거리돌봄 지역살림’의 실행구조



자료 : 김자경(2021)

- 넷째, 먹거리돌봄 지역살림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동)에서 직접 주민자치센터 등과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제주소통협력센터의 지원협력으로 2020년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먹거리돌봄’ 리빙랩을 실행하였음
 - 노형동주민센터에 ‘솜邈살례³⁹ 공유냉장고’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와 협력기관을 확대할 예정임

그림 3-16 한살림제주의 '공동체 먹거리돌봄'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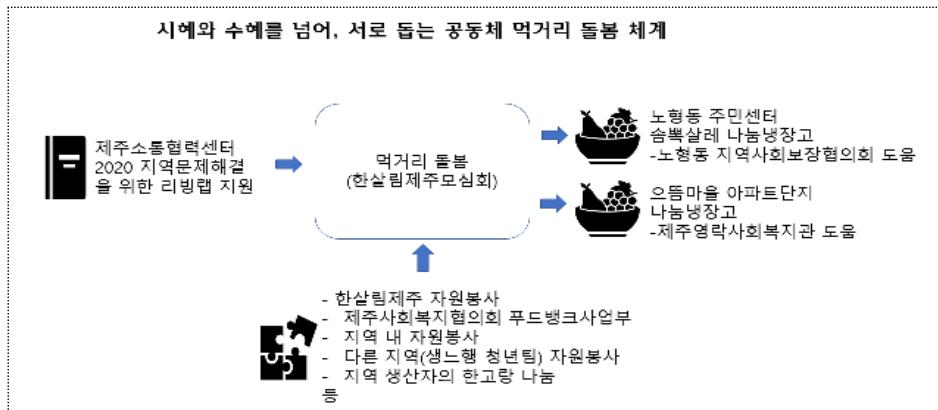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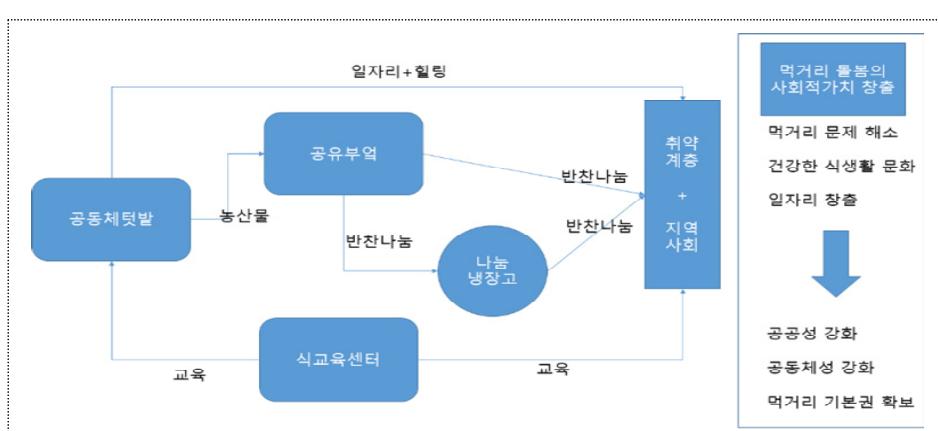


그림 3-17 한살림제주의 '먹거리돌봄 지역살림'의 확대전략



- '솜별살례 공유냉장고'는 자발적 나눔을 실천하고 행복한 마을을 위해 건강한 먹거리와 물품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월 이용 150명 이상)⁴⁰

39 제주어로 '솜별'은 가득, '살례'는 부엌의 수납공간이라는 뜻

40 나눔냉장고는 농산물 등 큰 단위로 기부가 들어오면 골고루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소포장 작업 후 진열작업을 할 자원봉사 활동 필요

- 초기에는 공유냉장고의 이용 먹거리 유효기간을 우려했으나, 이용 활성화로 먹거리가 부족해서 물품 보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3.2. 익산시, 청소년 자립 '청년식당'⁴¹

- 익산시 청소년 자립 '청년식당'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중 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하여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돌봄 활동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실행하고 있는 사례임
 -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나눔을 위한 사업모델(플랫폼, 사회적 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이 '청년식당'의 조직적 배경임
- 첫째, '청년식당'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단계별 추진과정(연구기반-현장실험-수익모델개발-자립플랫폼 구축)의 결과물로 먹거리돌봄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음
 - 2017~2018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보호치료시설 입소 청

그림 3-18 익산시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의 추진과정



자료 : 안윤숙(2021)

41 이 내용은 안윤숙(2021)에서 작성하였음

소년의 자립 연구를 지역대학(원광대학교)이 수행함

- 2019년 7월,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를 설립(인가)⁴²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됨
- 2020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수익모델로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가 운영하는 ‘청년식당’ 1호점을 개소(모현동)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 지원과 먹거리돌봄을 본격화함
- 둘째, ‘청년식당’을 통해 취약계층인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가 등으로 육성하는 거점이 되고 있음
- 시설 퇴소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의지를 일깨워줄 시설이 부족한 문제에 대응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경제교육과 직업훈련도 진행하고 있음
- 취약계층 청소년(19~24세)을 대상으로 전국 6호 처분 위탁시설, 청소년 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청년식당 모델에 적합한 아이들을 연결하여 자립활동의 기회(일자리, 교육 등)를 제공함⁴³
- 셋째,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지역대학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센터’, 지자체 ‘익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함께 청소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임
- 학교 밖 청소년이 밥 굶지 않게 하기 위한 무료급식을 시민단체가 주도한 ‘0819 청년도시락’ 캠페인으로 무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음
- 매주 월~금 신청을 받고, 선착순 10명에게 다음날 점심시간 집으로 배달을 하고 있음(주말 제외)
-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 등 농산물과 지역주민이 담근 장류 등을 청년식당 식재료로 쓰고 있음
- 넷째, 먹거리돌봄 ‘청년식당’의 지원활동이 지역사회 단체, 민간기업의 협력과 지원 등을 통해 폭을 넓혀가고 있음

42 청소년자립학교,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협력

43 심리재활치료, 사회적가치 교육, 직업훈련, 인턴십을 거쳐 취업으로 있게 지원

- 민간기업(SK E&S)과 상생협력 사업으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먹거리 지원사업을 위해 세대공감 및 교류 사업을 하고 있음
- 민간기업(푸르덴셜생명)의 지정기탁으로 청년식당 2호점, 3호점을 개소하였는데, 지역대학 상생모델로 원광대학교 내 청년식당 지점도 운영함
- 사회적기업인 ‘청년식당’은 무료 도시락 제공을, 스타트업 기업인 ‘배달아울렛’은 무료배달을, 지역사회단체인 ‘Like익산포럼’은 홍보 등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모델로 진화하고 있음

그림 3-19 익산시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의 활동



자료 : 안윤숙(2021)

3.4. 따뜻한 마음이 만든 ‘선한 영향력 가게’⁴⁴

- 따뜻한 마음이 만든 ‘선한 영향력 가게’는 배고픔으로 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없도록 먹거리돌봄 활동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가게들이 모인 ‘착한 식당’의 연대조직임
- 2019년 서울시 마포구 ‘진짜파스타’ 매장에서 시작한 민간 캠페인이 결식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모여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체로 만들어짐

44 이 내용은 월간식당(2021)에서 작성하였음

- 아동급식카드의 한계(1식 3천원 단가와 구매금액 제한, 가맹식당 제약 등)를 보고 식당업주가 자발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착한 식당 네트워크 조직임
- 첫째, 정부의 먹거리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먹거리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
-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으로 시작, 2019년 출범
- 이 모임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무료급식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아이들 입장에서 서류 증빙 등 절차가 복잡한 현실에 주목함
- 지자체별로 사용기준도 상이하며, 급식카드에서 비용 차감방식인데 충전된 돈은 이월되지 않고, 식당에서 식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었음

그림 3-20 ‘선한 영향력 가게’ 주요활동



자료 : 월간식당(2021)

- 둘째, 아이들이 급식카드만 보여주면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자는 생각으로 마음에 맞는 가게들끼리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무료나눔을 하고 있음
- 2020년 비영리단체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 중으로 전국 64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음⁴⁵
-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등의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을 돋겠다고 나서는 이들은 점점 늘고 있음

45 지역별로 서울(137), 인천(39), 경기(191), 울산(15), 부산(23), 경남(29), 충북(18), 경북(37), 대구(28), 충남(14), 대전(23), 세종(3), 전북(17), 전남(15), 광주(17), 강원(18), 제주(14) 등임 (2021년말 기준)

4. 외국의 먹거리돌봄 사례

4.1. 뉴욕시, 'City meals on wheels'⁴⁶

- 뉴욕시 'City meals on wheels'은 뉴욕시 빈곤 노인을 대상으로 먹거리 지원을 위한 조직임
 - 크리스마스 음식 대접을 위한 민간기금으로 한시적 조성('81년)되어, 뉴욕시 노인식사 배달서비스 조직 자원화로 미국의 첫 번째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82년)을 통한 독립 비영리단체로 설립됨
 - 뉴욕시는 급속히 증가한 노령인구의 먹거리와 서비스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2020년부터 뉴욕시(노인국)-Citymeals on wheels와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첫째, 'City meals on wheels'의 주요사업은 '식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돌봄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식사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연방정부의 조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고, 영양사가 식단을 개발하며, 모든 식사는 단백질·채소·과일·곡물·

그림 3-21 'City meals on wheels' 주요활동-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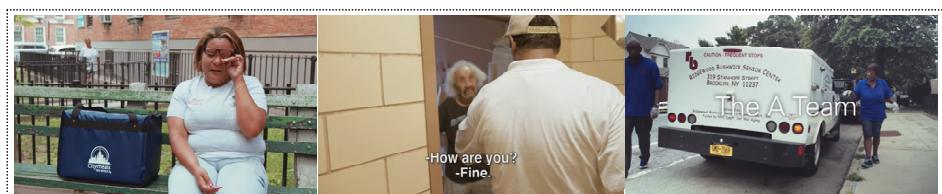
자료 : 'City meals on wheels' 홈페이지(<https://www.citymeals.org>)

46 이 내용은 'City meals on wheels' 홈페이지(<https://www.citymeals.org>)에서 작성함

다른 영양 첨가 빵·비타민C 주스를 포함함

- 식사 프로그램은 직접 배달을 하고 있는데, 식사 받는 노인이 사람과 연결될 기회를 만들고, 신뢰 있는 배달방문으로 가족·친구가 없어 고립되기 쉬운 노인에게 안정감 제공 등 다양한 노인돌봄 사업과 병행하고 있음
- 둘째, 식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고령자 중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과 시민권자 등의 제약이 없는 것이 특징임
 - 60세 이상일 것,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직접 차리거나 대신 차릴 수 없을 것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무력하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
 - 소득기준이나 시민권자 등 수령자 기준은 없고, 60세 이상 노인은 불법체류자·난민 등 상관없이 모두 먹거리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 식사 수령자의 57%가 독거 노인으로 이중 40%는 단 한 번도 집 떠난 적 없으며, 8%는 주변과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취약계층으로 확인됨
- 셋째, 식사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먹거리는 ‘주말식사, 공휴일 식사, 휴일 꾸러미, 비상식사, 비상식품 꾸러미’ 등임
 - 주말 식사는 매주 토요일·일요일 직접 배달하는데, 노인 대상의 정부 지원 식사가 주중에 제공되므로 상호 보완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공휴일은 혼자 살거나 고립된 노인에게 어려운 날로 공휴일에 특별식사를 직접 배달하고 있음 (코로나19 이전은 센터로 불러 특별행사로 진행)
 - 휴일 꾸러미는 연휴 동안 식사 챙기지 못할 노인을 위한 것으로 오랜 기간 보관 가능한 식품으로 구성되며, 보통 3끼 식사를 기본으로 함

그림 3-22 ‘City meals on wheels’ 주요활동-2



자료 : ‘City meals on wheels’ 홈페이지(<https://www.citymeals.org>)

- 비상 식사는 정전·자연재해 등 정기배달이 지연되는 경우, 상온 보관이 가능한 2끼 식사를 가방에 넣어 배달하는 형태임
- 비상 식품 꾸러미는 혹독한 겨울 날씨에 대비하여 오랜 기관 보관이 가능한 음식(통조림, 가공식품 등)이 포함된 꾸러미를 배달함
- 넷째, 이동 푸드 팬트리로 직접 찾아가고 있으며, 식사배달, 대화, 도우미 등 의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걷기 힘든 노인을 위해 이동 푸드 팬트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먹거리 불안이 높은 지역(부룩클린 등)에서 자원봉사 조직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식사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거리 이내에는 직접 걸어서 배달하고 있음
 - 신원이 확인된 신뢰가 가능한 자원봉사자 중 교육을 통해 정서적인 친교를 맺도록 연결에 힘쓰고 있음
 - 지역사회의 학생·단체 등도 참여하고 있는데, 손수 쓴 카드(편지)를 생일·휴일 발송하고 있음 (유치원~대학교 수 백명 참여)
 - 매주 노인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대화를 하고 있으며,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포장하거나 서빙하는 업무 등도 지원하고 있음

그림 3-23 ‘City meals on wheels’ 주요활동-3



자료 : ‘City meals on wheels’ 홈페이지(<https://www.citymeals.org>)

4.2. 뉴욕시, 'City Harvest'⁴⁷

- 뉴욕시 'City Harvest'는 먹거리 불안에 노출된 시민을 돋고, 폐기 처분되는 과잉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먹거리 구조·나눔·돌봄의 민간조직임
 - '82년 먹거리 구조(Food Rescue) 운동을 통해 시작한 뉴욕시에서 가장 큰 먹거리 구조단체임
 - '21년 1억1,100만 파운드의 사업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뉴욕시 5개 자치구에 푸드 팬트리를 운영하며, 급식소 등에 무료 전달을 담당하고 있음
 - 시 5개 자치구 2,500개 단체(슈퍼마켓 등 도소매 시장, 식당)와 먹거리의 기부협약을 맺고, 수거와 전달을 담당함. 개인 기부는 안전문제로 받지 않음
 - 기부받은 먹거리(77%)와 정부 보조금(1% 미만)으로 먹거리돌봄을 담당함
- 첫째, 'City Harvest'는 폐기 처분되는 먹거리의 '구조와 배달(food rescue & delivery)'을 주요하게 맡고 있음
 - 2천여 곳 먹거리 기증업체로부터 매일 먹거리를 수거하는데 1일 약 30만 파운드 규모임
 - 수거된 먹거리는 뉴욕시 무료급식소, 푸드팬트리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공공 먹거리 지원 서비스인 푸드뱅크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4백여 곳에 무료로 배달함

그림 3-24 'City Harvest'의 먹거리 구조활동 트럭



자료 : 'City Harvest' 홈페이지(<https://www.cityharvest.org/>)

47 이 내용은 'City Harvest' 홈페이지(<https://www.cityharvest.org/>)에서 작성함

- 둘째, 무료 제공되는 먹거리에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시장 (mobile markets™)’을 운영하고 있음
 - 푸드뱅크 서비스 이외의 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공급하는 파마스마켓 형태인 ‘이동시장’을 운영하고 있음
 - 이동시장 이용자는 온라인 상에서 가구를 미리 등록하고, 현장에서 먹거리 를 수령하는 방식임
 - 이동장터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요리수업·헬압검진 등 무료 건강 서비스를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자원 활동가 중심으로 격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음
- 셋째, 시민이 건강한 식재료를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점 등과 협력하여 ‘건강소매점(healthy retail)’을 지정 운영하고 있음
 - 뉴욕시의 상점·슈퍼마켓 등 소매점과 협약 등을 통해 소매점 냉장고에 부패 하기 쉬운 농산물을 진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있음
 - 해당 소매점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식을 위한 쇼핑·요리법 등을 가르치는 요리시연·쇼핑투어를 하고 있고, 소매업주를 위한 자료도 제작함
- 넷째,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는 ‘영양교육(nutrition education)’을 실 행하고 있음
 - 자치구 5곳 지역조직과 협력해 영양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부모·노인을 대상으로 쉽고 건강하고 예산에 맞는 요리법을 교육함
 - 식재료 구매법, 영양성분 표시 읽는 법, 장기 보관방법 등을 슈퍼마켓과 함

그림 3-25 ‘City Harvest’의 이동장터



자료 : ‘City Harvest’ 홈페이지(<https://www.cityharvest.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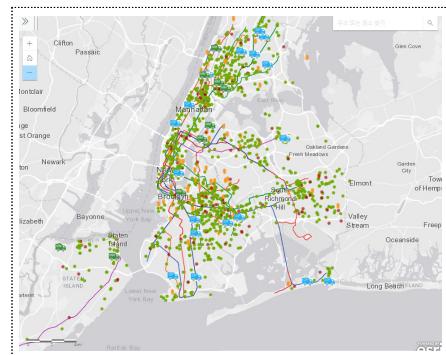
께 정보를 알려주는 슈퍼마켓 투어도 진행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지역사회 푸드뱅크 서비스가 폐쇄되는 상황에서도 ‘비상 식량배급소’를 운영하였음

- 다섯째, 먹거리 취약계층의 무료 먹거리 나눔·돌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plentiful app)’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17년 모바일 앱 ‘플랜티풀 앱’을 만들어 근접한 푸드 팬트리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시간 줄여 먹거리 받을 수 있는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모바일 앱의 서비스는 9개 언어로 제공되는데, 56.1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상담도 가능하며, 푸드 팬트리 위치 확인 및 예약 상담에 사용됨

그림 3-26 먹거리 제공처 위치



자료 : <https://www.cityharvest.org/>

그림 3-27 ‘City Harvest’의 주요활동



자료 : ‘City Harvest’ 홈페이지(<https://www.cityharvest.org/>)

4.3. 독일, 'Food Sharing'⁴⁸

- 독일의 'Food Sharing'은 '남는 음식 나누기'의 국제 환경 운동의 성격으로 먹거리 나눔으로 취약계층 먹거리돌봄을 제공하는 공유 플랫폼 조직임
 - 음식물 쓰레기 문제 심화에 따라 자원낭비를 줄이고 취약계층 먹거리돌봄을 목적으로 캠페인 및 플랫폼 사업을 통해 확산되고 있음
 - 3천개 이상의 회사와 협력하여 780만kg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고 있고, 취약계층 좋은 호응을 받음
 - '18년 환경원조 단체(Deutscher Umwelthilfe)와 UN-SDGs 달성 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참여에 적극적임
- 첫째, 'Food Sharing'은 유럽을 중심으로 다수의 사용자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결합하여 운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등 20만명 이상 사용자와 2.5만명 이상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고, 음식나눔 이벤트, 음식공유 국제화 촉진 활동을 진행함
 - 'Food Sharing'의 참여는 개인과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며, 식품을 취급하는 특성 상 엄격한 행동과 위생 규칙 등을 준수·통제하여 수행하고 있음
 - 냉장고와 가게 진열대를 활용해 공유된 음식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

그림 3-28 'Food Sharing'의 주요활동-1



자료 : 'Food Sharing' 홈페이지(<https://foodsharing.de/>)

48 이 내용은 'Food Sharing' 홈페이지(<https://foodsharing.de/>)에서 작성

어지고 있는데, 식당·슈퍼마켓 등 상점에서 주로 동참하고 있음

- 둘째, 먹거리 나눔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공유 플랫폼(Foodsharing.de)을 운영하여 실시간의 이용자-봉사자 간의 소통이 원활함
 - 먹거리 공유 플랫폼(Foodsharing.de)을 통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의 음식 기부 및 공유,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모든 사람들이 음식 공유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계정 생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됨
 - 스마트폰으로 음식 상태와 재고량 등을 보여주며, 실시간 수요자와 소통이 가능하여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은 음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 공급함
 - 자원봉사 활동 기반으로 먹거리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 저장 및 공유는 무료, 플랫폼 운영도 광고 없이 순수 비영리로 유지 관리함⁴⁹

그림 3-29 'Food Sharing'의 주요활동-2



자료 : 'Food Sharing' 홈페이지(<https://foodsharing.de/>)

- 셋째, 기부되는 먹거리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이 이뤄지도록 공공 장소에 나눔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 기부된 음식이 제공되는 곳의 하나로 '공공 저장장소(fairteiler)'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유냉장고와 유사한 형태임
 - 음식 나눔과 달리 유통기한이 만료된 음식이라도 건강에 위협이 없는 한 공유하고 있음⁵⁰

49 foodsharing e.V.(협회)가 소수 파트타임으로 지원함

50 음식이 처음부터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별성 있음

그림 3-30 ‘Food Sharing’의 주요활동-3



자료 : ‘Food Sharing’ 홈페이지(<https://foodsharing.de/>)

5. 먹거리돌봄 사례 종합논의

- 지금까지 살펴본 먹거리돌봄 관련 사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먹거리를 매개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이른바 ‘먹거리돌봄’ 사례로 특징을 지을 수 있음
- 사례는 ‘①지역사회통합돌봄과 연계한 먹거리돌봄 확대 방안, ②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실천활동의 정책화 방안’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하였음
- 지역사회 조직자원이 결합해 사업·활동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며, 방식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지자체 자체시책, 민간 실천활동’ 등으로 대별함
- 여기에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제와 부합하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정책화를 위해 고려할 실천수단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 먹거리돌봄 관련 사례분석 결과의 특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함
- 첫째,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이뤄지는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는 다른 돌봄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데,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여러 시사점을 보여줌
- 둘째, 지역사회에서 먹거리돌봄 서비스(프로그램)를 기획·실행하는 주체(행정+민간), 돌봄방식(H/W+S/W), 돌봄대상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 셋째, 먹거리돌봄이 절대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영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사회 추진체계가 강조됨

5.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효과와 수준 확인

- 첫째, 지역사회로 돌봄 공간을 옮겨 돌봄 필요자에게 건강의료·요양돌봄 등 을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가 결합되어 시행됨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중에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을 위한 먹거리돌봄을 서비스로 전달하고 있음

- 취약계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사 서비스 성과분석 연구에서는 식사 서비스가 건강 영양상태와 정서적 건강상태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에 근거함⁵¹
-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 내에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 서비스가 결합되면, 다른 돌봄 서비스의 효과 및 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음
 - 질병 등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는 취약계층인데, 일상 생활과 건강한 신체 유지의 기본조건이 ‘먹거리’임에 주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식사배달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다른 통합돌봄 서비스와 달리 매일 대상자를 방문하여 돌봄 대상자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회가 됨
- 셋째, 식사배달 등의 먹거리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자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고 있음
 - 사회복지기관이 주된 사업주체이지만, 먹거리돌봄 관련 사업·활동을 해온 공동체·사회적경제 조직이 결합하는 종합적인 실행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자활조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공동체조직 등이 조리·배달·영양관리·식생활 교육 등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넷째, 돌봄 대상자 집으로 찾아가는 식사배달 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먹거리 공유공간에서 영양중재·식생활교육 등 먹거리돌봄 서비스가 실천됨
 - 식사 해결 서비스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사회적 돌봄에 필요한 조리 교육, 영양중재, 식생활교육 등으로 구체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⁵²
 - 이를 위해 ‘공유부엌(커뮤니티키친)’이라는 공유공간을 별도로 구축하고, 여기를 거점으로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을 대상자 맞춤으로 진행하고 있음

51 이러한 식사 서비스 성과분석 선행연구의 결과는 박유경 외(2021)을 참조

52 한편,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선도사업으로 실행되고 있어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식사배달 서비스 등의 기준이 상이하여 실행에 어려움이 발견됨. 먹거리돌봄과 관련한 서비스는 선도사업 지역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식사조리 및 배달 등에 소요되는 단가 등이 지역별로 상이함.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가 일정한 질적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식자재 단가, 배달인력 비용, 맞춤형 식사조리 역량 등이 과제로 지적됨. 이에 대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름

5.2.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주체, 방식, 대상 확대

-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여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효과성이 높은 먹거리돌봄 자체 시책을 프로그램(서비스)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음
 -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먹거리돌봄 시책 추진의 근거임
 - 평균적·보편적 정부 정책과 달리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⁵³으로 먹거리돌봄으로 확장·확대될 수 있는 파급력이 높은 정책 프로그램⁵⁴을 기획하고 있음
- 둘째,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혁신방식을 고려할 때 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선적인 방식을 넘어 거점 공간(커뮤니티키친) 조성·운영을 해나가고 있음
 - 식사배달 등과 같은 전달 체계를 넘어, 먹거리를 매개로 식생활 교육, 영양증재, 사회적 관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거점공간을 필수 시설로 갖추고 있음
 - 서울시(마을부엌), 부산시(커뮤니티키친), 남해군(마을급식) 등 공유부엌(커뮤니티키친) 다양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이 이뤄지는 혁신활동 공간임
- 셋째,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기반하여 지역사회가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취약계층을 주체적으로 발굴하여 먹거리돌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기존 고령자·저소득층 등 집단을 넘어 현재 사회복지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 청년식당(익산), 엄마의 밥상(전주) 등은 먹거리돌봄 대상을 고령자를 중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등 일시적 취약계층으로 돌봄 대상을 확장할 필요를 시사⁵⁵
- 넷째, 식품지원 등의 사회복지 영역에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를 결합시켜, 시혜적인 수준을 넘어 통합적인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으로 진화를 하고 있음

53 전주시 엄마의 밥상이 대표사례임

54 서울시의 마을부엌이 대표사례임

55 남해군의 농촌마을 공동급식에서 여성농업인 등도 꼽을 수 있고, 서울시 마을부엌은 다양한 먹거리돌봄 필요 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임

- 식사가 필요한 돌봄 대상자에게 끼니 공급하는 방식을 넘어 건강·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하여 지역 먹거리 체계로 나아가야 함이 강조됨
- 공급중심의 ‘먹인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일까’하는 혁신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먹거리돌봄이 지역 먹거리 체계의 중요 영역임을 보여주는 것임⁵⁶

5.3. 사회적 영향 확대와 지역사회 추진체계 강조

- 첫째, 먹거리 나눔·돌봄이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가 견지할 사회적 규범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영역에서의 적극적 실천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민간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는 먹거리 나눔을 통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먹거리 제공 거점 확산 필요를 보여줌⁵⁷
 - 민간의 먹거리 나눔 실천은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 대상을 정하고 수급권을 심사·평가하는 식품·식사지원 같은 정책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음
- 둘째, 먹거리 나눔과 돌봄을 확산하기 위해 먹거리 취약계층이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성과 온라인에서의 정보성을 고려해 나가는 혁신이 필요함
 - 대전 동구(나눔냉장고, 채움가게), 외국(푸드쉐어링, 뉴욕시) 등의 사례는 먹거리 나눔 거점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확산을 위한 지역 사회 조직이 역량을 갖추고, 정보제공을 위한 기술 마련 등이 필요함을 시사
 - 나눌 수 있는 먹거리의 ‘기부·수거’에 대한 정보·체계, 나눔이 이뤄지는 먹거리의 내용·위치에 대한 정보·체계 등 민간 혁신활동의 지원이 필요함
- 셋째, 지역사회의 먹거리돌봄은 복지 또는 농정 등과 같은 정책영역에 갇히지 않고 다양한 지역사회 조직자원이 결합하여 협업을 해 나가고 있음
 -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먹거리돌봄은 사회복지+사회적경제+주민공동체+농정영역 등 조직자원이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한 추진체계를 갖춰가고 있음

56 한살림제주의 밤상살림, 농업살림, 지역살림 실천사례가 지역 먹거리 체계와 결합한 먹거리돌봄의 대표사례임

57 선한 영향력 가게, 대전 동구의 나눔냉장고 등이 대표사례임

- 먹거리돌봄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부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 지역사회 자원(조직+사람+재료 등)의 결합이 관건임
- 넷째, 먹거리 나눔과 배달 등의 서비스를 시작점으로 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검토하며 진화하고 있음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은 사회혁신(한살림제주)과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보장협의체)와 결합된 통합적인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개별 활성화 사례의 미담 수준을 넘어 정부 정책의 빈 공간을 메워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현장의 수준이 반영된 통합 추진체계를 갖춰나가야 함

제4장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정책과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정책과제

- 먹거리돌봄의 ‘수준진단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푸드플랜’의 관점에서의 정책과제의 대응방향을 먼저 검토하고자 함
- 첫째,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함 (‘법률’의 ‘제정’)
 - ‘먹거리돌봄’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중요한 영역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과 관련 법률의 활용이 필요함
-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먹거리돌봄을 융합해야 함 (‘융합’을 ‘실현’)
 - 지역주도형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프로그램의 기반은 식사·영양 등 ‘먹거리돌봄’에 있음
 - 안정적·내실있는 ‘먹거리돌봄’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독립된 서비스로 강화해야 하며,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야 함
- 셋째, 마을단위의 공동밥상 먹거리돌봄이 확대되어야 함 (‘고립’을 ‘연결’)
 - 먹거리 취약계층 대부분이 독거 또는 신체활동 제약이 큰 상황에서 공동체 단위 먹거리돌봄 위한 ‘공동밥상’ 전략을 마련해야 함
 - 공동밥상 방식의 먹거리돌봄 실행하기 위해 공유공간 마련과 활동 프로그램 확장으로 마을단위 먹거리 서로 돌봄 실현해야 함
- 넷째, 먹거리돌봄 식재료에 지역 먹거리가 공급되어야 함 (‘식재료’ ‘보완’)
 - 먹거리 취약계층의 식품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영양·보충재 공급에 중점을 두어 지역 먹거리 체계와 연계 미흡함
 - 지역 먹거리 체계 실행체계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개별 식품 지원 사업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보완해야 함

- 다섯째,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실행체계를 구축해야 함 ('체계'를 '구축')
 - 먹거리돌봄은 지역사회의 실행역량에 달려 있으며,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먹거리돌봄 체계를 촘촘히 갖추어야 함
 - 최소 식사 서비스 제공하는 '단선적 방식'을 넘어, 지역사회의 주체(행정+민간 등)가 공동의 사업·활동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여섯째,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선한 영향력 확대가 필요함 ('영향'을 '확대')
 - 취약계층 먹거리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현장 사례는 사회의 성숙·발전을 선순환시키는 '선한 영향력'임에 주목해 확산해 나가야 함
 - 지역사회에의 다양한 형태로 '먹거리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선한 영향력 사회기부' 확산·촉진의 정책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일곱째, 일시적인 취약계층의 먹거리돌봄 방안이 필요함 ('불안'을 '축소')
 - 외부충격(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불안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일시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 공적 사회보장 정책지원의 시기적 제약과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거리 긴급지원 대책 도입 여건을 마련해야 함

그림 4-1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대응방향



- 이러한 7가지의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대응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는 부처의 정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해당 법률 제정과 개정 : ①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 지역사회 돌봄에 먹거리를 융합 : ②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돌봄 강화, ③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용 추진
 - 마을 공동밥상 먹거리돌봄 확대 : ④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
 - 돌봄 식재료에 지역 먹거리 공급 : ⑤먹거리돌봄 식재료 조달 방식 개선
 - 지역먹거리돌봄 실행체계 구축 : ⑥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 구축, ⑦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 도입
 -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확대 : ⑧먹거리 기부 촉진과 착한 가게 확대
 - 일시적 취약계층 먹거리돌봄 : ⑨취약계층 먹거리 긴급돌봄 정책 검토

표 4-1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활성화 정책과제

진단과 방향	대응과제	제안 프로그램(안)	추진근거	관련부처
‘근거’의 마련	해당 법률의 제정과 개정	①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법률제정	복지부
‘융합’을 실현	지역사회 돌봄에 먹거리를 융합	②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돌봄 강화	법률제정 조례제정 표준모델	복지부 농식품부 행안부
		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용 먹거리돌봄 확대	정책활용 활동종진 지원활동	복지부 지자체
‘고립’을 연결	마을 공동밥상 먹거리돌봄 확대	④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	정책활용 지침개선	국토부 농식품부
‘식재료’ 보완	돌봄 식재료에 지역 먹거리 공급	⑤ 먹거리돌봄 식재료 조달 방식 개선	법률개정 정책개선	농식품부
‘체계’를 구축	지역먹거리돌봄 실행체계 구축	⑥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 구축	법률근거 조례제정	복지부 지자체
		⑦ 먹거리돌봄형 예비사회적기업 정책도입	정책활용 지침마련	농식품부 고용부
‘영향’을 확대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확대	⑧ 먹거리 기부 촉진과 선한영향력 거점 확대	정책개선 민간협력	협력재단 농식품부
‘불안’을 감소	일시적 취약계층 먹거리돌봄	⑨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돌봄 정책 추진검토	중기정책 검토	농식품부 지자체

1. ‘먹거리돌봄 지원 법률’의 근거 마련

- ‘먹거리돌봄’을 파악하는 입장은 ①지역사회통합돌봄의 관점과 ②지역 먹거리 체계 관점’으로 대별⁵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먹거리돌봄을 지원할 법률 근거 마련을 검토함
- 첫째, 먹거리돌봄은 경제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이유로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돌봄’의 기초가 되는 영역으로 ‘지역 사회통합돌봄’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둘째, 관행적 먹거리 체계가 야기하는 먹거리 불안을 ‘지역 먹거리 체계’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하므로 사회복지 영역의 제도가 규정하지 못하는 먹거리 지원 등의 근거를 ‘농정 영역’에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1.1.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먹거리돌봄 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 추진배경

- 그동안의 돌봄은 시설 중심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돌봄을 분절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정책으로 돌봄은 개인의 영역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큼
- 이에 정부는 ‘시설과 개인’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를 ‘지역과 사회’의 관점에서 개편해 나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은 여러 사유로 자립적인 생활의 영위가 어려움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음

58 먹거리돌봄에 관한 입장은 이 연구 제1장을 참고. ‘먹거리돌봄’에 관한 정책을 어느 계층, 어떤 조건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인가는 시기적 필요와 사회적 요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선도사업에서 돌봄 서비스는 ‘건강·의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먹거리돌봄은 식사배달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돌봄 서비스’의 구조에 먹거리돌봄의 비중을 높이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규정할 법률을 아직 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돌봄 서비스’에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독립 영역으로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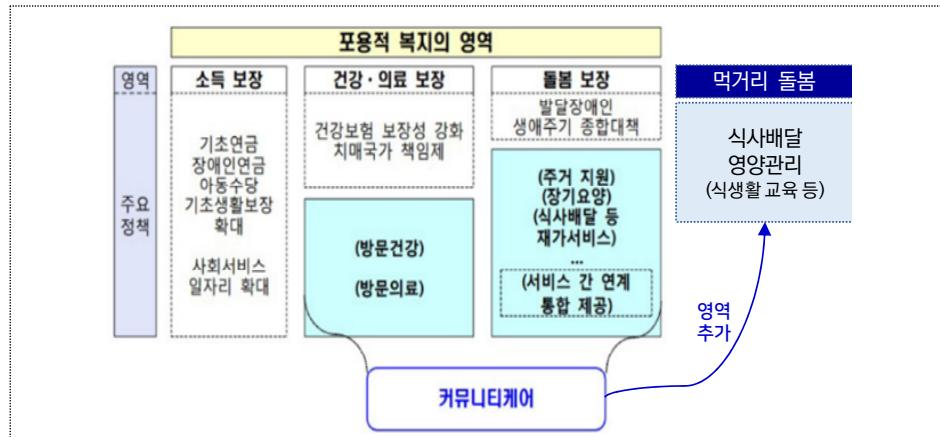
□ 추진방안

- 선도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에 먹거리돌봄을 독립 서비스로 규정하는 수정 법률(안)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함⁵⁹
-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안)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의 주요사업으로 먹거리돌봄 관련 사업추진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돌봄 서비스의 구조에서 ‘먹거리돌봄’을 독립 영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임
- 현재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는 크게 ‘①소득보장, ②건강/의료보장, ③돌봄보장’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됨
- ‘먹거리돌봄’에 해당하는 서비스와 사업은 ‘식사배달’로 제시되어 있고, 이는 ‘돌봄보장’을 위한 ‘재가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음
- 이에 통합돌봄의 핵심으로 강조되는 ‘식사배달,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 의 사업과 서비스를 ‘먹거리돌봄’으로 상향 조정하여 4개 영역으로 재편함
- 둘째, 이상과 같이 4개의 통합돌봄 영역으로 재편한 내용을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안함
- 현재 입법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에서

5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 ‘정춘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의 안으로 나뉘는데, 여기서는 ‘정춘숙 의원(안)’을 중심으로 추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통합돌봄 서비스를 규정하는 조항은 ‘제7조(지역사회 보건의료 등 지원)’임
- 제7조 ①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1. 이동지원 서비스⁶⁰
 2. 재활치료 서비스⁶¹
 3. 장기요양 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⁶²
 4. 주거지원 서비스⁶³
 5. 그 밖의 관련 서비스
 - 발의된 법안 제7조 ①항의 5호에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규정하여 통합돌봄 서비스 구조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반영함
 - 법률(안) 수정(안) : 제7조 ①항 5호
 5. 먹거리돌봄 서비스: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그림 4-2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정책의 서비스 영역 구조 변경



자료 : 연구진 작성

- 60 통합돌봄 대상자가 주거지 등에서 보건·의료인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통합 돌봄 대상자가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 61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및 통합돌봄 대상자 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유지·회복을 위한 서비스
- 62 통합돌봄 대상자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나 그와 인접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63 통합돌봄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량 등 지원 서비스

- 한 식사배달,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 먹거리돌봄 서비스
 - (기존) 4개 서비스 → (추가) 5개 서비스

표 4-2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규정 구조의 개선 내용

기존 법률(안)	개선 법률(안)
① 보건의료 이동지원 서비스	
② 재활치료 서비스	
③ 장기요양·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추가)
④ 주거지원 서비스	①~④의 서비스는 동일
	⑤ 먹거리돌봄 서비스

자료 : 연구진 작성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취약계층 식품지원 근거 활용

□ 추진배경

-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농정 영역에서는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 관점에서 먹거리돌봄을 강조해 왔음
- 이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2021년 2월, ‘국가식량계획’을 의결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2021년 9월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하였음
- 국가식량계획에는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목적으로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생애 전주기, 차별없는 먹거리 제공’을 명시하고 있음
- 특히 지역사회(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확대를 밝히면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음
- 지금까지 생애주기별 먹거리돌봄 사업의 주된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등인데, 이들 법률에는 지역 먹거리를 먹거리돌봄 지원정책으로 사용하거나 지원하는 별도의 규정이 부재하였음
- 이러한 배경과 필요에 근거하여 국회⁶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농촌

64 국회는 2021년 12월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을 의결하였고, 2021년 12월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취약계층의 식품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활용하여 먹거리돌봄 지원의 근거로 활용해 나가야 하겠음

□ 추진방안

- 첫째,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취약계층 식품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관련 부처가 시행하는 식품 및 먹거리 지원 정책 협업과 별도의 먹거리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음
-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23조의2에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 등의 정책은 정부의 복지관련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가 담당하고 있어, 먹거리 종합전략의 관점에서 농정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먹거리돌봄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복지관련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식품지원 정책의 협업과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음
- 특히, 부처 간 정책협업의 제약이 있음을 고려할 때, 농정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등)가 주도하는 별도의 취약계층 식품지원 등의 먹거리돌봄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겠음
- 둘째,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지역 농산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시도+시군구) 먹거리 계획에 먹거리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먹거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함
-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23조의3에는 '지역 먹거리 계획'의 주요 사항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2022년 7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제23조의3(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⁶⁵
- 먹거리돌봄과 지역 먹거리 지원 조항은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이 해당함
-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국가의 의견제시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먹거리돌봄 정책 기획·추진에 정부 역할 근거를 마련하였음
- 제23조의3(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⑤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 먹거리 계획 실행 조직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두어, 먹거리돌봄 정책 실행에 지역 먹거리 제공·공급 담당 조직의 근거가 됨
- 제23조의3(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시행)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 먹거리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⁶⁶

65 지역 먹거리 계획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②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③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④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⑤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⑥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⑦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⑧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⑨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6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는 ‘①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②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③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④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⑤그 밖에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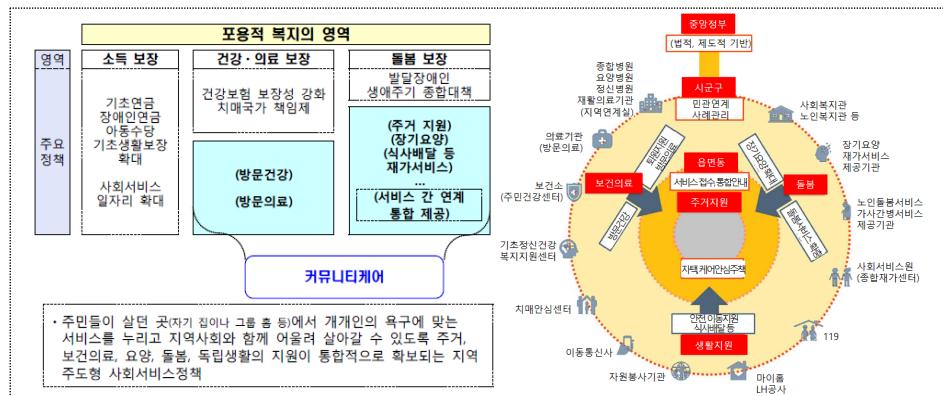
2.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통한 먹거리돌봄 강화

2.1.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강화

□ 정책개요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통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임
-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18.11)하고, 2019년부터 선도 사업(보건복지부-16개 지자체), 시범사업(행정안전부-2개 지자체)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본인 집·그룹홈 등)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그림 4-3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구조와 지원내용



자료 : 보건복지부(2019)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사업대상은 전체 노인의 약 15~20% 추정되며, 주거지원, 방문형 보건의료·건강·방문요양,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등 재가자립 생활 기반 마련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내에서 ‘먹거리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는 돌봄 대상자의 건강 관리 및 삶의 질과 직결된 서비스, 통합돌봄 비전에서 ‘요양 돌봄’ 내에 ‘식사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 서비스’로 제시되어 있음
-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부산 진구(온마을사랑채, 돌봄채움, 어르신 영양 보드미), 부산 북구(만덕어울락, 새뜨락커뮤니티센터), 서귀포(흔디거념), 춘천시(노인돌봄 식생활 서비스)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들 선도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제공 서비스는 도시락과 반찬 배달이 다수로, 방문배달 등을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 관리하고, 커뮤니티 키친(부산 진구, 서귀포시)을 통한 먹거리 나눔과 돌봄 등의 형태가 있으나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로 전환됨
- 제공기관으로는 정책 지침으로 제시하는 필요기준 충족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 자활센터 등)과 사회적경제 조직(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지역의 실정에 맞춰 협약 등을 맺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먹거리돌봄 서비스 진단(모니터링)⁶⁷

- 첫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 서비스 사업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 채소의 섭취는 사전(2.64)→사후(3.55)로, 과일의 섭취는 사전(2.52)→사후(3.00)로, 식생활 형편은 사전(2.44)→사후(2.66)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둘째,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는 통합돌봄 현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로,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이 확인됨
 - 주관적인 건강상태 개선 정도를 평가한 결과 ‘매우 및 약간 나쁘다’는 응답

67 이 내용은 박유경 외(2021)에서 작성하였음

은 (사전)84%→(사후)45%로 크게 감소하였고, 3식의 섭취 빈도가 증가하며, 식품의 다양성도 확보된 것으로 진단됨(부산 진구 사례)

- 셋째,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공기관, 제공 서비스 수준 등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제공기관은 사회복지기관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리실·필수인력 등을 갖춘 담당조직이 제한적임
 - 제공 서비스는 평면적인 식사 배달에 그치고 있어, 통합돌봄 대상자의 영양 관리와 관계맺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넷째, 통합돌봄 대상자는 만족도가 높지만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됨
 - 대상자 맞춤형 일반식·치료식 등 식단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였으나, 영양 진단에 따른 영양증재·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
- 다섯째, 식사배달 등 서비스 제공비용이 선도사업 지역별로 편차가 있고, 지역 농산물 등 구매기준이 없어 식자재 조달에 있어 지역 농산물 구매가 낮음
 - 지역별 식단가(1식)가 차이가 있고, 운영비(인건비, 배달비 등)를 제외하면, 양질 식재료 구매에 제약이 큼
 - 지역별 식단가(1식) : 부천시 8,300원(식재료 55%), 부산 진구 8,000원(식재료 60%), 서귀포시 6,000원(식재료 67%) 등
 - 배달 배송비 등 예산 제약으로 안정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배송 주기(1일 1회, 주말 불가 등)도 불안정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 여섯째,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링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에 따라 제공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
 - 지역별 식단가 차이, 배달 형태의 차이, 영양관리(영양증재+모니터링+식생활교육 등)의 차이, 식사 메뉴 및 형태의 차이, 식자재 조달 기준의 차이 등
- 일곱째, 선도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중앙 부처(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간 업무협조와 지자체 내 부서협업이 부족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음

- 통합돌봄의 서비스 내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적인 생활돌봄의 협업 활동이 서비스 간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적 지적이 큼
- 국가의 정책(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는 지역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선도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지역 농산물 제공과 대상별 맞춤형 식사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함

2.2. 법적 근거와 서비스 표준화 기준 마련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선도)사업은 시설중심·개인의존 기준 돌봄을 지역 중심·통합실행으로 바꿔가는 선도적인 정책실험으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선도사업 지역의 통합돌봄 서비스 내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 서비스는 대상자에게 건강개선·영양관리·식생활관리 등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
- 통합돌봄 대상자의 긍정적인 정책효과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돌봄이 활성화 되기 위해 서비스 체계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 여기에서 살펴보고 제안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먹거리돌봄 강화 방안’은 선도사업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향에서 ①법적 근거 마련, ②지역사회 실행 근거 마련, ③서비스의 기준과 표준화’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1) 법률 :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 ‘먹거리돌봄 사업’ 근거 마련

-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통합돌봄의 주요사업으로 ‘먹거리돌봄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토대로 이 법률(안)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규정하는 조항에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독립영역화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수정이 필요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 ‘먹거리돌봄 사업’ 근거 마련 방안

- 제7조 ‘지역사회 보건의료 등의 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4개)에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여 5개의 통합돌봄 서비스로 확대 개선
 - 추가할 사항 :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식사배달,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 먹거리돌봄 서비스
- 서비스 구조의 수정
- (기존) ①보건의료 이동지원 서비스, ②재활치료서비스, ③장기요양·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④주거지원서비스, ⑤기타
 - (추가) ⑤ 먹거리돌봄 서비스

(2) 조례 :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안)에 ‘먹거리돌봄 사업’ 구체화 반영

-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이 제정되면 통합돌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지자체(시도+시군구) 단위에서 별도의 자치입법 근거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경우, 일부 지자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 따른 지자체(시도+시군구)가 이에 관한 자치입법(조례)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먹거리돌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안)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지자체의 자치입법(조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내의 ‘먹거리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원대상 : 먹거리돌봄 등 식생활 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도사업 과정에서 확인되는 서비스의 이중지원 등의 혼선이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높음
 - 제공 서비스 : 식사배달, 영양관리, 식생활·조리교육, 먹거리 연계 사회활동 등에 관한 내용임. 평면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합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인 식사제공·영양관리·식생활교육·사회적 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해야 함
 - 제공기관 : 식사제공 및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주체는 통합돌봄의 성격 상 복

- 지·의료 관련 기관과 연계하되, 안정적인 조리시설을 갖춘 지역복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먹거리지원센터, 식생활교육 기관 등으로 정할 필요가 큼
- 식재료·영양관리 : 먹거리돌봄 서비스의 대부분은 식사배달과 식사나눔 등 인데, 식재료의 조달체계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을 지역 먹거리와 연계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질환별 표준식단 제공 및 영양관리 기준 등의 마련도 요구됨
 - 재원마련 : 정부 정책이 전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 이외에 대상자 자부담 등 상황을 고려하여 먹거리돌봄의 보편적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수준별 차등 부담의 틀 내에 지자체의 별도의 재정투여가 필요함

(3) 서비스 표준 : 먹거리돌봄 서비스에 대한 '기준 표준화'로 차이 해소

- 선도사업 지역의 모니터링을 반영하여 식사배달 및 영양관리 등의 먹거리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표준모델(안)' 마련해야 함
- 첫째,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의 '표준식단과 맞춤형 치료식단', '영양관리·영양증재 등 서비스 표준'을 마련하여 식생활 관리로 확대·강화해야 함
 - 공통적인 '표준식단'을 기준으로 돌봄 대상자의 건강과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특화된 '맞춤형 치료식단'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
 -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삼킴 도움식' 등으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식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치료식의 경우 비용은 추가됨(자부담 등)
 - 서비스 대상자별 맞춤 '영양관리 서비스 표준안' 적용을 강화하여 식생활 개선과 식생활 관리를 유도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 관련 정책으로 육성된 활동가(식생활 교육 활동가·푸드코디네이터 등) 대상으로 식사구성, 섭취방법, 식사조절 등의 교육을 강화함
 - 사전검사(영양판정, 초기 1회) → 영양관리 1단계(영양진단, 월 2회) → 영양 관리 2단계(영양증재, 월 1회·상시) → 영양관리 3단계(모니터링)
-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책임 있고 안정적인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기관(주체)의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함

- 식사·영양관리의 주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평가·선정하기 위해서는 조리장의 환경정비 상태, 참여인력의 자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이 경우 식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사업과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 식사배달, 영양관리, 식생활 지원, 식자재 조달 등은 지역사회 관련 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전달체계 참여해야 함
 - 조리장과 연계한 커뮤니티키친을 갖춰 통합돌봄 대상자의 공동조리, 방문식사, 거점배달, 식생활 프로그램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함
- 셋째, 식단가의 최소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며, 지

표 4-3 지역사회통합돌봄 내의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검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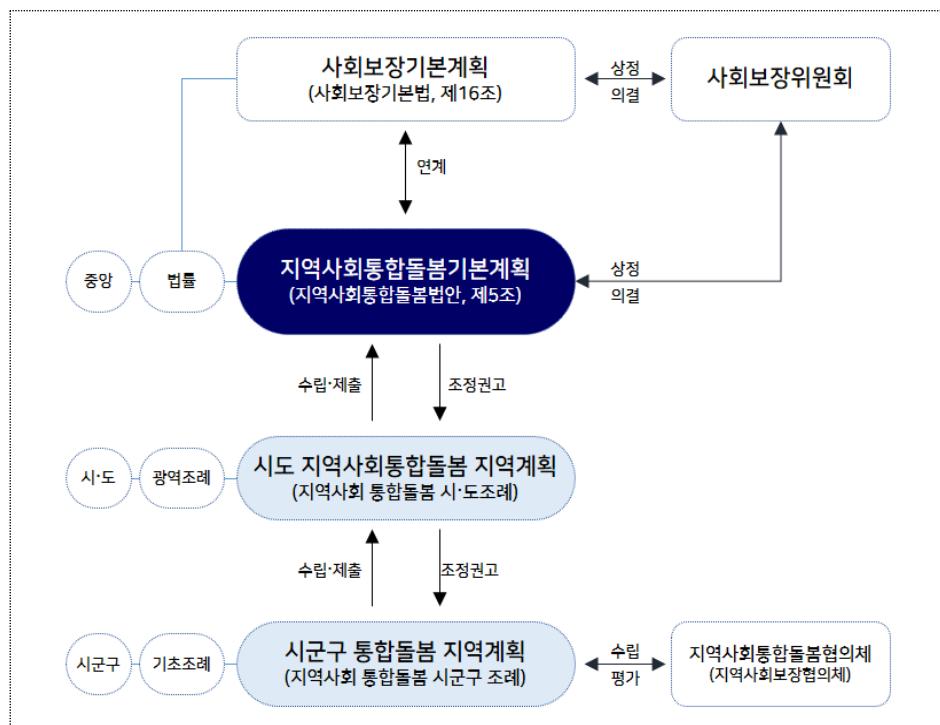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이 용 자	·시군별 월평균 일정 대상 필수	
대 상 자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복귀자 ·75세 노래자 및 고위험군(선제개입) ·통합돌봄 대상자 중 건강유지 필요 또는 만성질환군 ·거동불편, 만성질환 등 식사준비가 어려운 돌봄필요 노인	·단기입원 후 지역복귀자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서비스가격	·월 일정액 이상 / 소득수준별 자부담	
지원방식	·바우처	
서비스내용	·사전검사	·식사지원(주6회)
제공기관	·영양관리(월1회)	·공동식사
식사제공	·지역사회복지기관/사회적경제조직 (조리시설 갖춘 조직) ·배달 등은 지역사회조직(봉사, 배달 등) 연계	·주 6회 도시락 배달(개인/거점) ·커뮤니티키친 방문 식사
식사종류	·일반식(저당, 저염, 잡곡 제공) ·치료식(당뇨식, 고혈압식, 당뇨+고혈압식)	·1일 *식, 간식 ·토요일(반조리·조리식품 제공)
식사포장	·개별포장(재활용 친환경 포장용기)	·가방 보온보냉백에 담아 배달
식 단 가	·1끼당 **천원(재료비 60%, 인건비 35%, 경비 5%)	
지원인력	·(필수)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식단구성	·조리사 2명	·배송기사 2명
재료조달	·표준 식단을 준용한 영양사 변용	
정보제공	·지역 식재료 조달(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양관리	·혈당/혈압 등 만성질환 식사조절 교육자료 ·먹거리 제작 레시피	·식사구성 및 섭취방법 안내서
	·영양 스크리닝	·식사 모니터링
		·영양교육
		·영양상담 (월 1회)

자료 : 연구진 작성

역산 식재료의 공급체계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함

- 식단가는 지역상황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되, 식재료비, 인건비·경비 등의 세부항목별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함
- 배달, 방문(직접 식사, 포장) 등은 대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다양화 방식(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함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가치를 잘 상징하는 방안으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의 식재료(로컬푸드 농산물+가공품 등) 활용방안을 마련함

그림 4-4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 따른 추진체계



자료 : 신권철(2020)에서 수정하여 작성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먹거리돌봄 확대

3.1.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돌봄 확대

-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필요한 만큼 공급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항상 정책에서 늘 최대의 주제가 되어 왔음
- ‘사회적 돌봄’이 강조되고 정책의 확대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지만, 실제 돌봄 등의 서비스는 지역별 관련 자원(조직+사람 등)의 차이로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이에 기존 사회적 돌봄의 영역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사업을 활용해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과 정책연계가 필요함
-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는데, 먹거리돌봄은 지역사회 서비스의 대표 방식이지만, 이 정책사업을 통한 활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교육·문화 등 기존 조직자원의 활용에 집중되어 있어, 식사조리와 배달, 식생활 관리 등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원인임
-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먹거리돌봄으로 발굴하여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지역수요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발굴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가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한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함

3.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먹거리돌봄 결합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특징의 적극 활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정부가 전국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별·구별로 다양한 특성·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하는 정책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주로 아동(심리·놀이·정서 지원 등), 장애인(토탈케어·보조기기 지원 등), 노인(정서·운동·식사·영양관리 등), 성인(심리·재활·언어 지원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고, 식사배달 등은 극히 제한적임⁶⁸
- 서비스의 개발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하는데, 시도·시군구가 지역개발 사회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 발굴, 집행, 평가하는 방식임
- 이용자는 지역의 예산과 수요를 고려하여 적합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데, 중앙 정부 이용 대상자 소득기준 상한만을 결정함
- 서비스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역개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기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시설 위주 공급자 지원방식 아니라 수요자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사회 서비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공자는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시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임

6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부산 진구의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와 전라북도의 ‘식생활 교육(영양관리·조리·나눔) 프로그램’ 등임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먹거리돌봄 확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먹거리돌봄 확대 방안

- 첫째,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와 지역주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의 발굴과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준비가 관건임
 - 각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 서비스가 대상별 맞춤이라고는 하지만, 심리와 놀이, 문화와 활동 등 제공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여 식사지원과 영양관리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되고 있음
- 둘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 추진과정을 고려할 때, 시도별 먹거리돌봄 제공기관·프로그램을 기획·발굴·신청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프로그램은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제공 프로그램을 발굴·공모하면, 광역(시도) 심의위원회가 심의·선정하는 단계를 거침
- 셋째, 시도별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관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기획·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담당하는 시도별 지원기관(각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함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기획·발굴하도록 정책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함
- 넷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준비·역할이므로 지자체가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서비스 담당조직 발굴을 우선해야 함
 - 먹거리돌봄 서비스 제공조직을 교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실제 식사배달, 영양관리, 식생활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능력을 사전적으로 갖춰나가야 함
- 다섯째,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 역량과 지역주민의 필요 서비스 등을 종합하여 현실적 먹거리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춰갈 필요가 있음
 - 현실적인 먹거리돌봄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대상 식사배달 서비스, 지역주민 전체 대상 바른 식생활 교육(임산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 미래세대에

특화된 어린이 농부 텃밭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꼽을 수 있음

- 여섯째, 먹거리돌봄의 제공 서비스는 기존의 유사 사업(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별도의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인프라 마련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대상 기준, 제공기관 자격, 서비스 기준 등을 정할 수 있고, 서비스 개발·심사·관리·점검기능은 지자체에게 있음
 - 수행방식은 서비스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지원하고,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안내함

□ 지역사례 : 부산 진구의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부산 진구는 지역사회투자사업을 통해 고령·만성질환 등 식사 준비가 어려운 통합돌봄 대상자(노인)가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서비스의 대상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등급별 소득기준 상이), 만 65세 이상, 돌봐줄 가족이 부재하여 식사준비 어려운 노인 등임
- 서비스는 재가방문 서비스(재가방문형)를 원칙으로,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집단급식소, 사회서비스 이용권리 법률 등록기관)을 적용하고 있음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인력으로 영양사, 임상영양사, 식품·영양학 전공자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서비스 내용은 식사지원(주 6회-월 24회, 1식+간식 2회), 영양관리 서비스 (월 1회-상시) 등임

그림 4-5 부산 진구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주요내용

[식사지원] (사전검사 결과 기반 맞춤형 제공)				[영양관리 서비스]		[서비스 가격]
종류	구성	형태 및 주의사항	제공유형	영양 판정	* 1등급 : 본인부담 월 2만원, 정부지원 월 1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일반식	저염, 저당, 소화용이, 다양한 식품군 구성	밥의 형태 반찬의 크기, 익힘 정도	식당 배식 도시락 배달	영양 진단	* 2등급 : 본인부담 월 4만원, 정부지원 월 1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당뇨식, 만성신부전식, 연화장매식 등 질환이 확인되고 식사요법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경우	알레르기원 식품 약물로 인한 금지 식품		영양 증재	* 3등급 : 본인부담 월 6만원, 정부지원 월 1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160%)	
				모니터링 평가		

[참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 기본개요

- 사업목적 : 중앙 정부의 전국 대상 일괄 실시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 지자체가 지역별·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주도적으로 발굴· 집행, 체감·만족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 수행방식 : 서비스 수요자에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 서비스 시장 창출. 서비스 개발·심사·관리·점검기능 지자체 부여
-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보조율 : 서울 50%, 서울 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사업구조

- 제공방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 현금·현물보조 아닌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불
- 서비스 개발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 시도·시군구가 지역개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기획, 발굴, 집행, 평가
- 이용자 선정 : 지역 예산과 수요 적합 우선 순위 선정. 중앙정부 이용 대상자 소득기준 상한만 결정, 서비스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역개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등록제. 시설 위주 공급자 지원방식 아님, 수요자 지원 방식, 사회서비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공자는 제공기관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 다수의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구조
- 가격체계 : 이용자 본인부담금. 이용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 사회서비스 시장화 유도
- 지원조직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선정,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제공기관 현장 점검 등 지원



4. 커뮤니티키친^(공유부엌) 구축 확대로 먹거리돌봄 강화

4.1. 지역 먹거리돌봄 실천공간 확대 추진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은 식사배달·식사나눔·영양관리 등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그 형태와 돌봄 서비스의 효과에 일정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먹거리 매개의 사회적 돌봄 실천 공간’으로 이른바 ‘커뮤니티키친’의 기능·역할에 주목해 지역에서 먹거리돌봄 필수시설로 구축해 옴
 - 커뮤니티키친(community kitchens)은 ‘집단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한 끼 또는 그 이상의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데 필요한 공동체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Tarasuk & Reynolds, 1999)’임
- 특히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커뮤니티키친’을 갖추고, 이를 중심으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식생활 관리, 먹거리 나눔 등 실천하고 있음
 - 서귀포 ‘커뮤니티키친’, 부산진구 ‘온마을사랑채’, 부산 북구 ‘새뜨락커뮤니티센터·만덕어울樂’ 등이 대표적임
- 커뮤니티키친을 구축해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온 지역에서는 ‘하드웨어 구축’에 소요되는 재정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정 등을 선행할 과제로 꼽고 있음
- 이에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거점(허브)로 기능하는 ‘커뮤니티키친’을 정부 부처가 기 시행하고 있는 연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사업 지침’ 등을 개선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함

4.2. 부처 사업 활용 커뮤니티키친 조성 확대

(1) ‘생활SOC 복합화’ 정책개선으로 구축 확대

□ 정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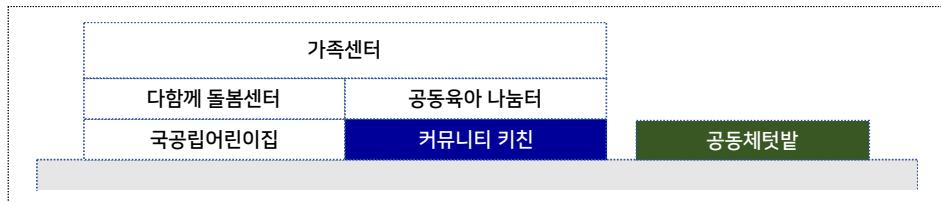
-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생활SOC 구축을 지원함
-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정책개념으로 함
- 정부는 3대 분야(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3년간(‘20~‘22) 30조원(지방비 포함 48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이 부처별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데, 생활SOC 복합화 대상 사업의 메뉴를 제시함
- 지자체가 주도하여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고 범 부처 차원 공동으로 지원함

□ 추진방안

- ‘생활 SOC복합화 사업’의 지침을 개선하여 ‘먹거리돌봄 커뮤니티키친’ 조성을 추진해 나감. 국토교통부 협업사업으로 추진함
- 첫째, ‘생활SOC 복합화사업’ 지침에는 ‘일상생활에서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어(국무총리 훈령, 제2조), 커뮤니티키친 등과 같은 먹거리 지원시설의 설치는 가능함
- 둘째, 커뮤니티키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SOC 복합화 5대 사업(예시) 중 ‘복지시설 특화형’에 ‘커뮤니티키친, 식생활 체험공간’ 등을 시설로 예시함
 - ‘생활SOC 복합화’ 5대 사업 : ①문화체육시설 특화형(국민체육센터, 공동

- 도서관 등), ②복지시설 특화형(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③학교시설 복합화, ④공공임대주택 복합화, ⑤국유지 활용
- 셋째, ‘커뮤니티 키친’을 포함한 복합화 예시(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주요시설로는 조리·취사 공간, 식사 나눔공간, 교육실, 다목적실, 도시텃밭 등을 들 수 있음
 - 넷째, 커뮤니티 키친이 먹거리돌봄의 사회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등을 해당 사업 내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함
 - 운영주체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조직(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조직,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함
 -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먹거리돌봄 관련 활동·사업, 공동체 프로그램(돌봄밥상, 공동체밥상, 소셜다이닝 등)을 들 수 있음

그림 4-6 생활SOC 복합화사업 + 커뮤니티 키친 결합 모형 사례



자료 : 연구진 작성

(2)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개선으로 구축 확대

□ 정책개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 도시의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H/W)을 개선하고, 주민들

의 역량(S/W)을 강화하여 ‘종합 재생’을 목표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활력의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등과 같은 도시공간 혁신 전략으로 구체화됨
- ‘노후 저층 거주지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의 혁신거점 조성,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선제 대응’을 추진함

□ 추진방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의 지침을 개선하여 ‘먹거리돌봄 커뮤니티키친’ 조성을 국토교통부 협업사업으로 추진함
 - 첫째,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침 중 ‘지역특화 재생사업’(도시재생 뉴딜사업 5대 유형 중 경제기반형 제외)으로 먹거리 관련 시설의 구축 추진이 가능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 5대 유형 : ①우리 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 ②주거지 지원형(주거), ③일반 균형형(준주거), ④중심 시가지형(상업), ⑤경제 기반형(산업)
- 둘째, ‘지역특화 재생사업’은 다시 12개 모델로 나뉘는데, 그 중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모델’에 ‘커뮤니티키친, 식생활 체험공간’ 등을 명시하여 시설을 구축함
 - 지역특화 재생사업 12개 모델 : ①대학타운 특화모델, ②건축·경관 특화모델, ③건축자산 연계 특화모델, ④역사·문화 특화모델, ⑤지역상권 특화모델, ⑥여성친화 특화모델, ⑦농촌지역 특화모델, ⑧공공생활서비스 특화모델, ⑨지역사회통합돌봄 특화모델, ⑩빈집밀집지역 특화모델, ⑪목재도시 특화모델, ⑫동행사업 특화모델
- 셋째, ‘커뮤니티 키친’을 포함한 ‘지역사회통합돌봄 특화모델’의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주요시설은 조리·취사 공간, 식사 나눔공간, 교육실, 다목적실, 도시텃밭 등으로, 사업(비) 이해를 돋기 위해 예시도와 사업내용 등에 관련 시설을 포함함
- 넷째, 커뮤니티키친이 먹거리돌봄의 사회적 기능에 충실히 수 있도록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등을 해당 사업 내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함

- 운영주체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조직(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조직,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함
-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먹거리돌봄 관련 활동·사업, 공동체 프로그램(돌봄밥상, 공동체밥상, 소셜다이닝 등)을 들 수 있음

(3)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활용한 구축 확대

□ 정책개요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 사업과 연계된 주요 사업을 정책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정책임
-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등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임⁶⁹
- 지원대상은 지역 먹거리 계획을 수립하는 시군구로 공공급식 지원조례, 종 소농 조직화, 로컬푸드 관리로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지역임
- 지역 푸드플랜 수립 이후 필요 사업을 통합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면 지자체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한 이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임

□ 추진방안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하여 ‘먹거리돌봄 커뮤니티키친’ 조성을 추진해 나감.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추진을 유도함
- 첫째,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지자체 지원 세부 정책사업에 커뮤니티키친 시설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사업의 지침으로 제시함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으로 커뮤니티키친을 조성·운영 중인 지자체 사례(전 주시 등)를 고려하여 커뮤니티키친의 시설 구축과 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함
- 둘째, 커뮤니티키친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주민의 먹거리돌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예시함

69 농림축산식품부 12개 사업, 농촌진흥청 2개 사업, 시·도 2개 사업 등 총 16개 사업임

- 어린이,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먹거리돌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등을 제시함
 - 커뮤니티 기반의 조리·식사 관련 활동, 먹거리 문제에 대응하는 공동체(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프로그램으로 제안함
- 셋째, 커뮤니티키친 운영조직은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해당사업 추진단 등 지역 공동체 조직으로 제시함
- 지역 먹거리 계획에 따라 조성하는 커뮤니티키친을 고려할 때, 운영주체는 해당 푸드플랜의 핵심 실행주체로 설정함
- 넷째, 지역 푸드플랜을 고려하여 커뮤니티키친의 주요기능은 먹거리를 매개로 하는 취약계층의 지원과 관계망 복원 등으로 명시함
- 먹거리를 통한 공동체 문화 만들기,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공동체 밥상, 취약계층의 결식 등 먹거리 지원, 식생활 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 등임

표 4-4 커뮤니티키친 구축 시 고려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시설 : 조리·취사 공간, 식사공간, 교육실, 다목적실, 도시텃밭 등 · 운영주체 : 지역주민 주도 공동체 방식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비영리법인 등) · 프로그램 : 로컬푸드를 매개로 하는 먹거리돌봄 관련 활동·사업, 공동체 먹거리 지원 활동 프로그램 (돌봄밥상, 공동체밥상, 소셜다이닝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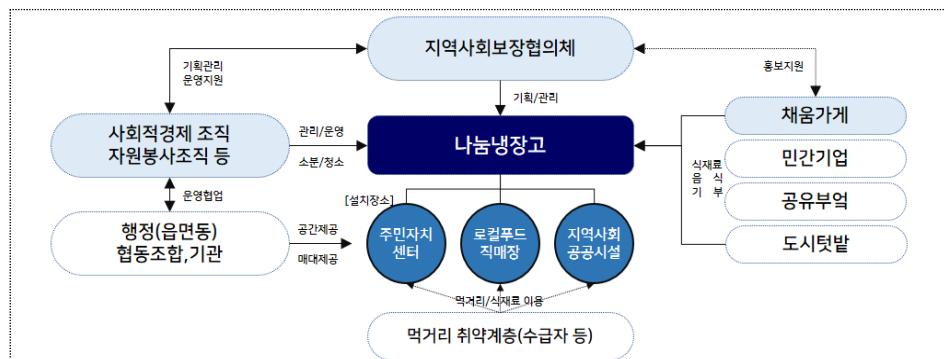
자료 : 연구진 작성

(4) 먹거리 나눔 ‘나눔냉장고’ 확산 지원

- 나눔냉장고는 지역사회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기부 등을 통해 조성한 식재료를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나누는 대표 먹거리돌봄 거점으로 평가되고 있음
- 나눔냉장고의 대표사례로는 대전 동구 ‘나눔냉장고-채움가게’, 제주한살림의 ‘솜뽁살례 공유냉장고’, 독일의 ‘푸드쉐어링’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의 대다수 나눔냉장고는 지역사회(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가 주도하여 지역상인(가게, 음식점, 기업 등)이 결합한 자발적 활동모델임

- 첫째, 나눔냉장고는 무료급식과 복지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먹거리 취약 계층이 이용할 먹거리 나눔 거점으로 주목하여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나눔냉장고의 설치와 운영에 정책적으로 시설 구축과 운영 프로그램 등이 전혀 없으나, 커뮤니티키친 등의 거점을 연결하는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 둘째, 나눔냉장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서비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추진을 강화해 나감
 - 다른 먹거리돌봄 시설과 달리 나눔냉장고는 ‘냉장고’의 서비스와 운영 등에 필요한 비품 등에 국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함
- 셋째, 무료 식재료 나눔의 특성을 갖는 나눔냉장고는 지역사회 먹거리 취약 계층이 눈치 보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함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협동조합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
- 넷째, 나눔냉장고를 먹거리돌봄 체계의 핵심거점으로 활용하는 추진체계, 운영조직, 기부조직 등을 고려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함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원의 먹거리 나눔 활동 기획을 유도해 나감
 - 운영조직은 지역사회조직(봉사조직), 먹거리돌봄형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 등)이 담당 관리하여 운영 인건비 지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함
 - 나눔 먹거리는 나눔냉장고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사회 소상공인을 ‘채움가게’로 지정하여 기부를 유도해 나감(요일별, 식재별, 음식별 역할분담 유도)

그림 4-7 먹거리 ‘나눔냉장고’ 운영체계 제안



자료 : 연구진 작성

5. ‘먹거리돌봄 프로그램 식재료 조달’ 방식의 개선

5.1. 식재료 지원사업의 조달체계 개선

- 지역사회에서 시행되는 먹거리돌봄과 관련 정책사업은 복지·건강 분류, 생애주기별, 지원방법(급식, 식재료, 보충재, 교육)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음
- 도시락과 급식의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식재료’를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들 정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식재료가 지역 먹거리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식재료 조달 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현장의 요청이 높았음
- 취약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지원을 위해서는 칼로리와 영양관리 중심의 식재료 조달 방식을 지역 먹거리 계획과 연계한 지역 농산물 공급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함
- 이에 기존 식품지원 프로그램 내에서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식재료 조달 방식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높음

표 4-5 먹거리돌봄 관련 주요 정책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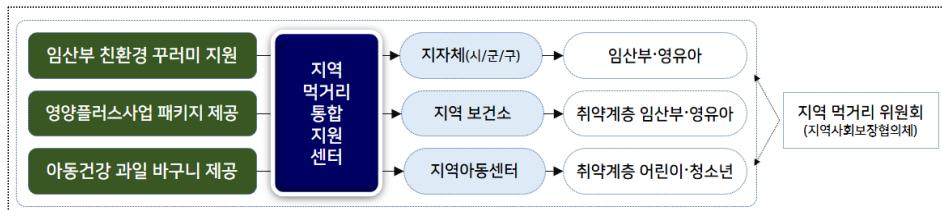
구분	임산부	영아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노년
식재료 과일 등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	실버건강식생활사업 과일·우유간식도시락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사업

자료 : 전희진 외(2020)에서 수정

5.2. 지역 먹거리 공급 선순환체계 구축

- 생애주기별 먹거리돌봄(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식재료를 지역 농산물(먹거리)로 대체·전환하는 개선을 통해 지역 먹거리 계획과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을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나감
- 첫째, 먹거리돌봄 식재료 조달 방식의 개선은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근거를 통해 추진해 나감
 - 취약계층 식품지원, 지역 먹거리 계획,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먹거리 체계 내의 다양한 정책개선의 근거가 됨
- 둘째, 여러 부처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정책)의 식재료’ 조달·공급을 ‘지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담당하는 방안을 마련함
 -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계획으로 마련한 푸드플랜의 여러 정책사업의 실행주체이면서, 식재료 공급주체로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셋째, 개별 식품지원 사업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 먹거리 전략과 연계한 공급 방안을 마련함
 - 해당하는 개별 식품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 등을 꼽을 수 있음
 - 해당 식품지원 정책사업 추진지침에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식재료 조달 방안을 담도록 사업추진 안내를 반영함

그림 4-8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식재료 조달방식 개선 제안



자료 : 연구진 작성

[참고] 먹거리돌봄 관련 주요 식품지원 프로그램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임신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연 48만원 수준)간 공급
-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유기식품등 관리지원 법률(제3조, 제7조, 제 55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0조)
-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 (자부담 9.6만원)
- 지원품목 : 임산부 필요/기호 반영해 품목을 직접 선택/주문,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이용 가능
- 공급체계 : 시 도는 광역 내에서 생산공급 가능품목을 우선 공급, 부족 물량은 인근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영양플러스 사업

- 사업목적 :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 대상으로 영양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문제 해소
- 지원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사업참여 6개월 이후 재평가)
- 제공품목 : 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실시,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보충식품공급 : 맞춤형 식품 패키지 6종 제공 (월 2회, 가정배달 원칙)

○ 아동 건강과일바구니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 청소년 및 교내 초등 돌봄교실 이용 어린이
-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어린이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아동센터
-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영양교육 및 건강간식 제공
- 건강간식 종류 : 제공간식 종류는 단가 범위 내에서 제철식품으로 자유롭게 선택, 어린이/청소년 기호를 고려
- 기대효과 : 과일/채소 접근성 낮은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에게 신선한 과일/채소 간식 제공, 섭취를 통한 건강 식습관

6.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 구축

6.1. 지역사회 내 먹거리돌봄 전달체계 구성

-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지역 내 먹거리돌봄 자원의 결합과 역할분담을 시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추진체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은 일정한 (공간적+사회적) 지역에서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와 서비스 전달구조 등을 다루는 추진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분절적 정책으로 시행되거나 지역사회와 무관한 지원에 그칠 우려가 큼
- 앞서 검토한 먹거리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지역사회에서 내실있고 안정적이며 종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제를 규정하는 정책의 추진체계를 잘 갖춰 나가야 함
- 첫째, 지역사회 내 식사·영양관리 서비스와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관련 자원을 결합한 추진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진단이 있음
- 둘째, 지역 푸드플랜이 확산되고 있지만, 식재료의 생산-공급-소비 체계에 집중하고 있어 먹거리돌봄의 정책추진 체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
- 이 연구의 주제인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은 사회복지 영역의 ‘지역사회통합 돌봄’과 농정 영역이 강조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로 대별할 수 있겠음
- 정책 시행의 공간이 지역사회이며, 먹거리돌봄과 관련한 정책·조직자원 등을 융복합하여 추진한다면 정책 시너지와 효과가 높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면서, 실행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을 고려할 때(정책추진의 경로), 각각의 정책 전달체계에 따른 추진체계 마련이 현실적일 수 있음

6.2. 법률·조례를 통한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실행할 추진체계를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지역 먹거리 체계’를 통해 구축하는 방안을 나누어 검토함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는 ‘①지역사회통합돌봄(사회복지 영역)’과 ‘②지역 먹거리 체계(농어업·농어촌 영역)’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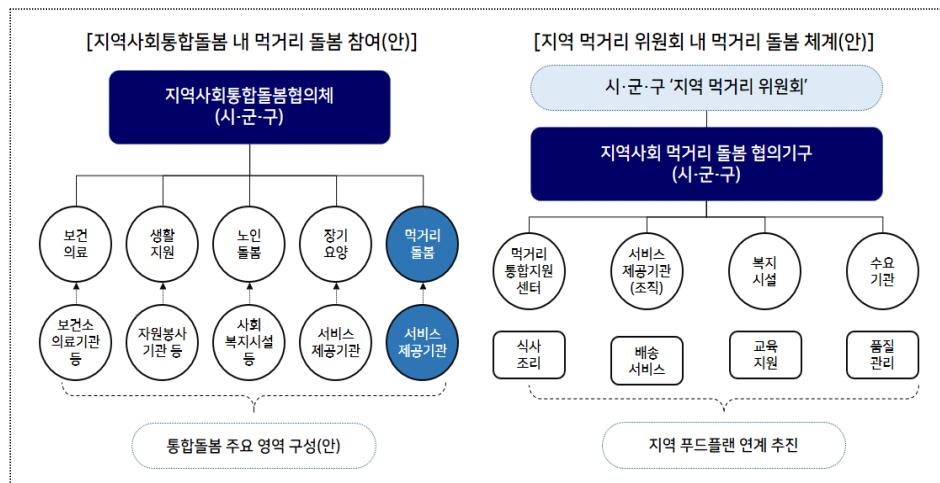
(1) 법률·조례로 먹거리돌봄 주체 참여 마련

-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따른 먹거리돌봄 추진체계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체’에 먹거리돌봄 서비스의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체’에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조직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먹거리돌봄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하위 영역이 되지 않도록 추진체계의 틀을 갖춰야 함
- 입법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 법률(안)’의 통합돌봄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제18조(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시군구에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둔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협의체’ 역할과 기능 : 심의·자문(지역계획 수립·시행·평가, 통합돌봄 추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 등), 조직·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함
- 따라서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의 먹거리돌봄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가 제정하는 시군구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함

(2) 먹거리위원회 내 먹거리돌봄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 먹거리 계획(지역 푸드플랜)’으로 실행되는 ‘지역 먹거리 체계’에 먹거리돌봄 주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개정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먹거리 계획의 추진체계 전반에 관한 규정은 지자체별 조례에 의거하는 구조임
- 이미 전국의 많은 지자체(시도+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먹거리 계획의 수립·실행 등의 근거로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푸드플랜을 실행하고 있음
- 먹거리 기본조례에 따른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체계는 ‘지역 먹거리 위원회’ 등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 먹거리돌봄 추진체계를 여기에 반영해야 함
-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담당 주체로 구성된 ‘(가칭)먹거리돌봄 협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하고, 지역먹거리위원회의 체계 내에 포함시킴
- 참여조직으로는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등), 먹거리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복지시설, 수요기관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 협의기구를 통해 ‘식사조리, 배송 서비스, 교육, 품질관리’ 등 먹거리돌봄

그림 4-9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추진체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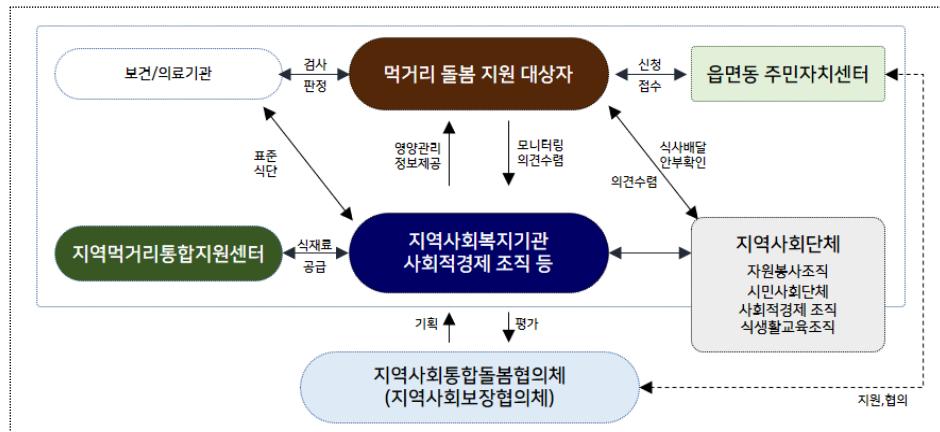
자료 : 연구진 작성

영역에서 필요하고 요구되는 기능·역할에 대한 운영방안을 논의해 나감

(3) 지역 먹거리 계획 내 먹거리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 지역사회 내 식재료 조달·공급 등을 포함한 먹거리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식사·영양관리 등 먹거리돌봄 서비스에 지역 먹거리 공급 등을 포함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 먹거리돌봄 정책을 ‘지역 먹거리 계획’에 반영함
 - 기수립·시행 중인 지역 푸드플랜에 근거하여 지역산 식재료를 식품지원 정책 사업에 우선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개선함⁷⁰

그림 4-10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상



자료 : 연구진 작성

70 지역사회 멀거리 지원조직 자원은 '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집·유치원)-식단, ②공공급식지원센터 (공공기관)-식재료 수급 및 공급, ③학교급식지원센터 (교육기관)-식재료 수급 및 공급, ④무드통합지원센터 (관계기관)-식재료 수급 및 공급, ⑤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급식 및 영양관리' 등으로 나눠볼 수 있음

7.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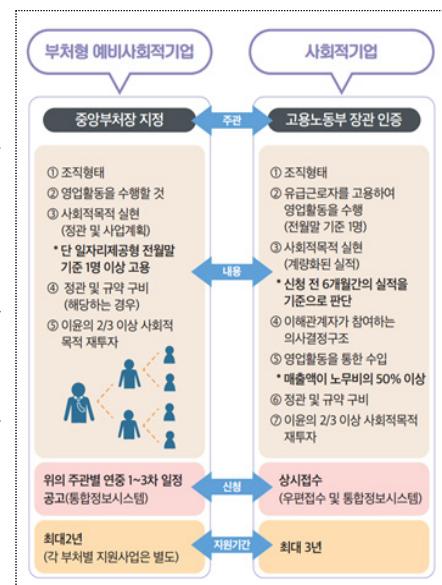
7.1.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이 필요한 주요 배경은 먹거리에 관한 지역주민의 생활 상의 수요에 지역사회가 책임 있게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먹거리돌봄의 실천사례를 보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약화된 시장기능과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 그에 따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예방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 우리 사회는 ‘돌봄, 교육, 먹거리’ 등의 영역에서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필요·수요를 해결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 실천하는 양상을 보여 왔음
-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담당 제공기관인 지역사회복지관·자활센터·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은 대표 사회적경제 조직이며, 영리기업에 견줘 지역성·당사자성을 가지므로 지역사회 돌봄에 적합한 주체로 평가되고 있음
- 이렇게 본다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무료급식, 식생활 교육, 영양관리 등 먹거리돌봄 서비스의 수행 기관·단체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임
- 앞서 살펴본 먹거리돌봄 관련 사례에서 먹거리돌봄 서비스 담당 핵심 주체는 대부분 사회적경제 조직이므로, 먹거리돌봄 영역에 특화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정책’을 통해 먹거리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를 늘려나가야 함
- 이에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사업·활동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책의 일환으로 육성해가기 위한 방안으로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함

7.2. 먹거리돌봄형 예비사회적기업 도입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정책사업임
-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심사·평가를 통해 지정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별로도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첫째, 먹거리돌봄에 특화된 예비 사회적기업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형 정책으로 도입하여 지역사회의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감
 - 예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업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정·육성하는 제도임
-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형 먹거리돌봄 예비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 중에 있어 먹거리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기관을 육성해 나가기 위해 적합한 정책임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먹거리돌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 운영지침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로 마련해야 함
 - 유사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기업(도시재생분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관계]



을 꼽을 수 있음(‘18년~‘20년 158개 지정, 이중 25개 사회적기업)

- 셋째,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역 먹거리, 먹거리돌봄,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조직 중 정책의 취지에 맞는 조직을 지정하는 것임
 - 지정요건으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이 대상임(법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협, 영농조합 등)
- 넷째, 먹거리돌봄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목적과 대상사업 분야, 지원사항 등을 마련함
 - 대상 사업분야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무료급식, 식생활 교육, 영양관리’ 등의 사회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로 예시함
 -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등 재정사업 신청자격을 주고, 인건비·사업 개발비를 지원하며, 지역 먹거리 계획의 사업추진 시 가점을 검토할 수 있음

[참고]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정책 개요

- | 부처 | 주요분야 |
|---------|--|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임대·관리업, 주거취약계층 |
| 산림청 | 임산물, 목공, 산림복지서비스 등 사람과 숲의 상생공존 |
| 통일부 | 의류 제조, 예술 공연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
| 문화재청 | 문화유산 체험 등 문화재 활용,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체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등 농가소득과 농촌 복지증진 |
| 보건복지부 |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업, 노인·장애인 지원사업 및 보건사업 관련 기업 등 |
|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 다문화 가족 직업교육 등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사업 |
| 환경부 | 재활용, 기후서비스, 환경교육, 생태복원 등 지속가능한환경 복지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스포츠·관광 활성화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창업팀 |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 소관부처 사업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
- 부처별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 수립,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지정절차 : 공고(부처)→신청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서류검토·현장실사(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지정심사(심사위원회)→지정공고(부처)

8. ‘먹거리 기부 촉진과 선한 영향력 거점 확대’ 지원

8.1. 먹거리 기부와 나눔 활성화 확산

- 코로나19로 공공영역에서의 먹거리 무료급식 등이 중단되자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푸드뱅크 등에 대한 먹거리 기부 등이 줄어들고 정체되고 있음
-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먹거리 양극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식료품·식재료 등의 정책지원 이외에民間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기부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 앞서 검토한 외국의 먹거리돌봄 사례에서는 민간이 먹거리 나눔과 돌봄의 사업주체가 되고, 기업과 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먹거리를 기부하고 나누는 활동이 체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식사 나눔을 하는 이른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함
- ‘먹거리 기부’는 개인 차원보다 민간기업·공공기관 등 규모와 지속성을 갖춘 조직 참여가 있어야 일정한 규모의 먹거리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데, 기업·기관·단체는 조직 특성 상 ‘먹거리 기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함
- ‘먹거리 나눔’은 민간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체계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를 사회적 캠페인으로 확산하고 사회적 자본으로 내재화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먹거리돌봄의 주체로 위치지어 나가야 함
- 이에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기업·단체의 먹거리 기부를 촉진하고, 민간의 선한 영향력 가게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제안함

8.2. 먹거리 기부촉진 및 선한 영향력 거점 확산

- 먹거리돌봄 활성화는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자발적인 취약계층 먹거리돌봄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함
- 여기서는 ‘①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민간기업·공공기관의 먹거리 기부 활동 촉진’과 ‘②선한 영향력 가게의 확산 지원’으로 검토하여 제안함

(1)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먹거리 기부 촉진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조직 경영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 경영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이를 먹거리 기부와 연계하는 전략임
- 첫째, ESG 경영전략 실적을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기관의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상생기금’을 활용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의 먹거리 기부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함
- 둘째, 이를 위한 실무방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본부) 차원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의 ‘비지정기금’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감
 - ‘농어촌상생기금’은 기업 간 공동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임
 - 농어촌상생기금의 ‘지정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목적에 따라 농어촌 지역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비지정기금’의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셋째, 농어촌상생기금의 비지정기금을 활용한 민간기업·공공기관의 먹거리 기부 촉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의 먹거리돌봄 기부 참여 홍보를 안내 (현물출연+현금출연이 모두 가능)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먹거리 기부에 출연하거나 기부내역(금)은 영수처리하고 기부실적은 기부한 기관·조직의 ESG 경영에 반영함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부된 기금은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기관단체’ 등에 제공함
- 기업·기관 등이 식재료(농산물, 가공품 등)을 기부할 경우 도시지역 지원 가능 여부는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함
- 유사사례로는 ‘농촌마을자치연금(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수익시설(태양광)에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이 현금·현물출자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그림 4-11 농어촌상생기금을 통한 기부의 추진절차



자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참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 개요

○ 사업개요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과 기업간 상생 협력 촉진 지원하는 기금
- 상생기금 설치, 관리·운용주체, 용도·기부금 세제 혜택 부여 등 주요 내용으로 3개 법률 개정

○ 기금용도

-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의료 서비스의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사업
- 정주 여건과 경관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등의 민간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 협력사업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2) 먹거리 나눔 ‘선한 영향력 거점’ 확대

□ 추진배경

-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고 있고 먹거리 불안의 위기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먹거리 나눔 등의 기부와 봉사활동이 확대되고 있음
- ‘선한 영향력’은 ‘한 사람의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이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여 선순환하는 것’으로 먹거리 나눔을 실천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의 먹거리돌봄을 확산해 나가는 ‘선한 영향력’임에 주목하여 실천 지원이 필요함
 - 선한 영향력에서는 ‘공감력’을 바탕으로 타인의 자존감 인정이 중요하며, 사회와 개인에게 영향력 행사 방법은 매우 다양함
- 선한 영향력의 대표사례
 - (사례 1) ‘선한 영향력 가게’ : 결식아동 무료급식 카드 제약으로 겪는 아이들의 아픔을 극복하고 차별없는 자존감을 주기 위해 식당업주가 무료급식을 시작한 비영리단체 ‘착한 식당 네트워크’ (전국 640여개 식당·카페 등)
 - (사례 2) ‘나눔냉장고+채움가게’ : 취약계층 음식 나눔을 위해 주민센터·직매장 등에 무료이용 냉장고 설치·운영, 지역사회 기부로 식재료 충당, 관리 (소분 등)는 사회단체 담당, 정기적 음식·식재료 기부 가게 확산(채움가게)
 - (사례 3) ‘청년자립식당’ : 학교 밖 아이(청소년)에게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무료급식, 식사배달, 사회적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방식의 거점식당 (1호~3호로 확대, 익산시)

□ 추진방안

- 결식아동 등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 민간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는 ‘민간활동 지원, 정책연계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민간활동 지원은 ‘착한 식당’ 취지에 공감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비영리단체 ‘선한 영향력 가게’에 참여하도록 홍보와 사회적 캠페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가입은 ‘선한 영향력 가게’ 홈페이지(<https://선한영향력가게.com/>)의 ‘동행 신청’을 통해 가입이 가능함
 - 언론사·방송사 등과 공동으로 개별 사례를 기획취재하여 참여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사회적 캠페인·홍보도 확대함
 - 정책지원은 모바일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 가게 찾기’ 정보제공 시스템(앱)의 개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음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연계한 사업지원)
 - ‘소상공인 선한 가게 생활안전자금’의 지원방안도 있는데, 이미 소상공인연합회·우리금융·사랑의 열매가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둘째, 정책연계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정책과 연계하여 ‘선한 영향력 가게-착한 식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수립 정책에 ‘착한 식당’을 연계한 먹거리돌봄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함 (정책연계)
 - ‘착한 식당’의 사회 기여 특성을 고려하여 ‘외식산업 진흥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착한 식당’을 ‘우수 외식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함(지정관리)
 - 착한 식당 지정관리에 관련한 법률은 ‘외식산업진흥법’으로 제17조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해당 내용 반영을 검토함
 - 개선방안 (제17조 조항 개정 검토)
 -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식사업자의 시설·서비스 및 품질개선과 ‘사회적 기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가게 인증표시는 기존 표시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지정기준 : 먹거리 (무료)나눔 활동 참여(사회복지 지원조직 연계), 지역 농산물 활용(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정기준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음

9.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정책’ 추진 검토

9.1. 비상 상황시 긴급 먹거리 지원 추진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실직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가족의 간병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굶주림에 직면한 안타까운 상황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회보장 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은 일상 생활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이슈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음
 - 최근이슈 : ‘쌀 사먹게 2만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21.11.3, 프레시안 기사), ‘코로나 장발장을 보듬자’(‘21.1.4, 한국농어민신문 칼럼’)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고 등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이 직면하여 겪고 있는 최악의 배고픔에 긴급 대응하는 체계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유사사례 : 미국의 비상식품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사태 대응프로그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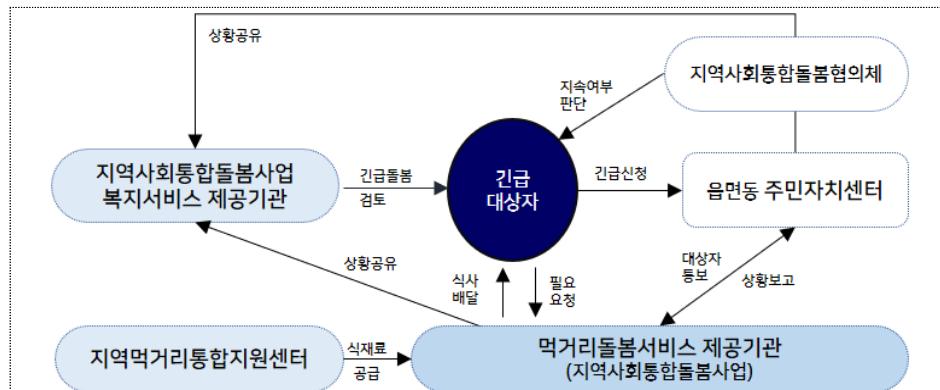
9.2. 지역자원 활용 신속한 긴급 먹거리 제공

- 첫째,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 돌봄 정책이 필요한 대상은 ‘소득수준과 사회수준’을 동시에 검토하여 최악의 배고픔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긴급 지원대상의 조건은 긴급 상황(실직, 사고, (가족)간병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식사 해결이 절박한 굶주린 취약계층

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대상기준을 마련할 때 일정기준 등을 검토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 50% 미만자를 포괄적으로 하되, 제외 기준을 검토하여 대상을 좁혀갈 수 있음
- 둘째, 긴급 먹거리돌봄의 서비스는 최소한의 기간을 지원하되, 지속 지원 여부 등은 기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제도(기구) 등이 맡아서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지원내용은 긴급 식사배달 서비스이며, 긴급 지원 요청 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식사배달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함
 - 지원기간은 최소 2주간으로 하되, 1일 2식(식단가는 검토 필요)을 지원하며, 긴급 지원 이후는 푸드뱅크와 먹거리 지원기관 등 먹거리 나눔·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나감
- 셋째, 먹거리 긴급 돌봄 서비스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진체계임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예정)에 긴급 구조요청(전화 등)에 즉각 응답함
 - 긴급 먹거리돌봄 서비스(음식조리·식사배달 등)의 제공기관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내 먹거리돌봄 서비스 기관이 맡음
- 넷째, 사회적 필요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규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설계를

그림 4-12 취약계층 먹거리 긴급돌봄 추진구조 구상



자료 : 연구진 작성

보완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방식으로 모델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함

- 기존 식품지원 정책과의 중복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여 정책 모델링과 고도화를 추진해 나감
- 이를 위해 먹거리돌봄에 특화한 ‘취약계층 긴급 먹거리 수요응답형 서비스’를 지자체와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함 (정책도입 시 지자체 매칭)

참고자료

- 강순원(2021), ‘코로나19와 먹거리돌봄’. 한살림제주모심회 토론회 발표자료.
- 김상효·이계임 외(2019), ‘농식품바우처 추진체계 구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김소연(2020), ‘먹거리 정의에 관한 탐색적 고찰: 이론적 쟁점과 실천적 합의’, 농촌 사회 30(2), 한국농촌사회학회.
- 김자경(2021), ‘지역사회와 먹거리돌봄 방안’, 먹거리돌봄 전문가 세미나 발표자료, 전북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2020),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 마을협동조합 소란(2021), ‘마을공동체 공유부엌 설치·운영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부천시.
- 문은숙 외(2017), ‘밀라노 먹거리 협약과 서울시 먹거리 정책’, 서울연구원.
- 박유경 외(2021),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성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 배균기 외(2020), ‘전라북도 공공급식 현황분석과 광역지원조직 기본구상 연구’, 전북 연구원.
- 보건복지부(2019),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
-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II’
- 보건복지부(2021d), ‘2021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1),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 서귀포시(2021), ‘서귀포시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
- 소혜순(2021), ‘공동체 입장에서 보는 먹거리 지원정책의 과제-서울시 마을부엌 연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농식품바우처와 돌봄형 주민공동체 연계 방안 토론회 발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신권철(2020),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의의와 주요 쟁점’,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발표자료.
- 안윤숙(2021), ‘청소년 자립학교는 별들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 심사자료.
- 연합뉴스(2020.9.13.), ‘도시락 시키신 분~코로나19가 바꾼 농촌마을 공동급식’ 기사
- 오민수·조해진(2019),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월간식당(2021), ‘들어보셨나요? 선한 영향력 가게’(<https://선한영향력가게.com/store>)
- 이계임 외(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계임·김상효 외(2019),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 농림축산식품부.
- 이석환·권진(2020), ‘푸드뱅크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영향요인 (경기지역 이용자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 이수행·박정지(2019), ‘경기도 먹거리전략 추진방향과 과제’, 경기연구원.
- 이현진(2021), ‘사회적 돌봄 실천을 위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과 과제’, 한국농촌사회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

전주시(2020), '전주 엄마의 밥상 추진현황', 업무보고자료.

전희진(2021), '지역사회 먹거리돌봄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전북연구원.

정신모(2021), '공유공간 '만덕어울락'과 북구 먹거리돌봄사업 사례', 부산시 통합돌봄 종합계획 활성화 토론회 발표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질병관리청(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각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실행계획분석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농업전망 2021: 코로나19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

한진숙(2021), '부산진구 커뮤니티키친 운영사례', 부산시 통합돌봄 종합계획 활성화 토론회 발표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행정안전부(2018), '지역행복 지역혁신', 지역혁신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2019a),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행정안전부(2019b), '나눔냉장고'가 되살린 마을 공동체(대전 동구)', 지역문제해결 플랫폼(<https://happychange.kr/>)

행정안전부(2019c), '대전 동구 나눔냉장고', 블로그(<https://m.blog.naver.com/mopaspr>)

허라금(2009), '보살핌 위기 사회의 철학적 담론', 철학과 현실 83.

황영모(202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방향과 실행과제 제안', 농촌사회 31(2) 이슈와 비판, 한국농촌사회학회.

황영모 외(202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Aussenberg, Randy Alison., Billings, Kara Clifford.(2019), 'USDA Domestic Food Assistance Programs'.

Aussenberg, Randy Alison., Colello, Kirsten J.(2019), 'Domestic Food Assistance: Summary of Programs'.

Booth Sue, John Coveney(2015), 'Food Democracy: From consumer to food citizen'.

City Harvest 홈페이지(<https://www.cityharvest.org/>)

City meals on wheels 홈페이지(<https://www.citymeals.org/>)

Daly, Mary and Jane Lewis(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Holt-Gimenez E, Shattuck A.(2011). 'Food crises, food regimes and food movements: rumblings of reform or tides of transformation'. Journal of Peasant Studies 38(1)

Oliveira, Victor.(2019), 'The Food Assistance Landscape FY 2018 Annual Report',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Renting H, Schermer M, Rossi A.(2012), 'Building food democracy: exploring civic food networks and newly emerging forms of food citizenship'.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Agriculture and Food 19(3)

Steven Deller, Amber Canto & Laura Brown(2017), 'Food access, local foods, and community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Volume 48.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2020), 'Summary of Annual Data, ANNUAL SUMMARY OF FOOD AND NUTRITION SERVICE PROGRAMS', Data as of January 03.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2020), 'Fiscal Year 2020 Justification of Estimates for Appropriations Committees'.

USDA-FNS(<https://www.fns.usda.gov/>)

Vivero-Pol(2017)

Wittman H, Desmarais AA, Wiebe N (eds).(2010), 'Food sovereignty: reconnecting food, nature and community'.

부록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46
----------	------

- 발의연월일 : 2020. 11. 4.
- 발의자 : 정춘숙 · 흥기원 · 고영인 · 강훈식
남인순 · 최종윤 · 김상희 · 서영석
김성주 · 전재수 · 이병훈 의원(11인)

○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나라는 노화, 장애, 사고, 신체적 · 정신적 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돌봄 수요를 시설과 병원에서의 입소나 입원을 통하여 대처하여 왔으나, 이제는 돌봄이 필요한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이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가적 ·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57.6%가, 201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약 57%가 평소 살던 곳이나 지역사회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되고 각각의 제도 내에서 대상별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의 종류별로 다수의 법률과 제도로 한 개인의 돌봄을 분절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그러한 법률에서도 재가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제공이 아닌 시설과 병원 중심의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더구나 2019년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

하게 되면 노인을 중심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급하게 국가적·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하여 시설과 병원에서 입소·입원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 연대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와 지원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통합 돌봄 대상자가 입원이나 입소 생활을 최소화하고, 누구든지 본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며,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 또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관리 및 재활치료서비스, 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입원·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및 부양가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퇴원희망자 등에 대하여 다른 관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특히 자립적인 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통합 돌

- 봄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4조부터 제16조).
- 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 돌봄 제공자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및 읍·면·동 등에 통합 돌봄의 추진 및 연계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관 및 통합 돌봄 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및 제22조).
-

법률 제 1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합 돌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돌봄”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 나.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 다. 그 밖의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지원
2. “통합 돌봄 대상자”란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 영위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 돌봄 제공자”란 보건의료등의 분야에서 통합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제1호 각 목의 사항(이하 “사회보장급여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통합 돌봄에 관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 돌봄 대상자는 의료기관 입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 생활은 최소화하면서 누구든지 본인의 주거지에서 최대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
2. 통합 돌봄 대상자는 누구든지 본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급여등을 지역 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3. 통합 돌봄 대상자는 사회보장급여등의 내용, 이용 방법, 통합 돌봄 제공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제공 여부나 내용, 이용 방법 등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것
4. 통합 돌봄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의 유지와 삶의 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등이 제공되도록 할 것
5.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통합 돌봄이 제공되도록 할 것
6.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기반 시설 및 자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권 단위로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2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통합 돌봄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 돌봄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 돌봄을 위한 보건의료등의 정책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3. 통합 돌봄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4. 통합 돌봄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5. 통합 돌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
 6. 통합 돌봄 대상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의 구축
 7.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8. 통합 돌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통합 돌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 돌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등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통합 돌봄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5년마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매년 통합 돌봄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통합 돌봄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지역사회 보건의료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 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 돌봄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서 보건의료인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통합 돌봄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서비스
 2.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통합 돌봄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3. 통합 돌봄 대상자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나 그와 인접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4. 통합 돌봄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량 등 주거지원서비스
 5. 그 밖에 통합 돌봄 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교육·문화 등 관련 서비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 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가 필요한 통합 돌봄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단기 거주 주택의 제공,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 등 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기기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회복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의 편의 증진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임대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또는 보조기기의 연구개발,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부양가족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를 부양하거나 필요한 서비스 및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 보호자, 주민 또는 자원봉사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통합 돌봄 제공 절차 및 기반 조성

제11조(통합 돌봄 신청 및 조사) ① 통합 돌봄 대상자와 그 친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 돌봄의 신청을 받으면 사회보장급여등의 연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본인부담금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조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신청인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이력, 수급 현황 및 가족 등이 제공하는 돌봄의 정도
3. 신청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수행능력
4.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5. 사회보장급여 등에 대한 신청인의 욕구

6. 신청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퇴원희망자등에 대하여 통합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관련기관등과 통합돌봄 제공을 위한 조사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유 중인 행정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기관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그 보호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발굴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장애인연금, 건강검진·의료기관 입·퇴원,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공공주택의 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에 75세가 되는 노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일상생활 영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75세 미만 노인으로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여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통합돌봄을 조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예상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발굴할 수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료기관 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사람이 퇴원 또는 퇴소(이하 이 조에서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원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퇴원희망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퇴원등의 여부 등을 통보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퇴원희망자등의 동의를 받아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퇴원희망자등의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통합돌봄 제공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통합 돌봄 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등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통합돌봄 제공자
2. 통합돌봄 제공자가 둘 이상인 경우 상호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문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별지원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평가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통합 돌봄 제공 의뢰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개인별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공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사회보장급여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관련기관등에 사회보장급여등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련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등의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 제공 의뢰 및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통합돌봄 사례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4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제17조에 따른 상담과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등을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사정 및 공공과 민간의 사회보장급여등을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2.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통합돌봄 관련기관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 단위에 통합돌봄 사례조정 회의체(이하 이 조에서 “사례조정회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례조정회의체를 그 소속의 전문분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전문분과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1. 통합 돌봄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심층적인 사정 및 개인별지원 계획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이하 이 항에서 “특례급여”라 한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통합 돌봄 대상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영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급여 제공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특례급여의 수량, 제공기간 등이 통합 돌봄 대상자의 자립생활 영위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량 및 제공기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 돌봄 대상자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실행 및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합 돌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기관등과 공유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3.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통합 돌봄 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등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 통합 돌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공동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례조정회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17조(상담·정보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와 그 가족, 보호자 등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회보장급여등의 내용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대상자의 발굴 및 통합 돌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통합 돌봄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 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 돌봄 제공자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1. 시·군·구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통합 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통합 돌봄 제공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 돌봄 제공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합 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통합 돌봄 대상자 및 그 보호자
6. 지역 주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부문 간 연계 조직의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에 제7조에 따른 통합 돌봄의 추진 및 다른 기관·시설 간의 연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시·군·구 및 읍·면·동
2.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소
3. 「주거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4. 그 밖에 통합 돌봄과 관련되는 기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

제5장 보적

제20조(지역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사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인력양성 기관의 지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실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통합 돌봄 평가 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 돌봄 대상자의 충분하고 효율적인 발굴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통합 돌봄 대상자 특성·유형 분석 및 욕구 평가 기준 개발
2. 지역별, 연령별 통합 돌봄 대상자의 분포 분석 및 추계
3. 지역 주민의 통합 돌봄 필요도 및 지역자원 등 통합 돌봄 추진 환경 진단 및 파악
4. 그 밖에 통합 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이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신청 및 조사, 발굴, 연

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의뢰, 사례관리, 정보의 처리 등 통합 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용 지원 및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합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련기관등의 장은 통합 돌봄 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 사례관리 및 사례조정 회의체, 제18조에 따른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제22조에 따른 통합돌봄 평가 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직원 등의 파견요청)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 돌봄 관련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그 밖에 통합 돌봄과 관계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시·군·구에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 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조사
2. 제14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3. 제20조에 따른 지역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4. 그 밖에 통합 돌봄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별 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시행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통합 돌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통합 돌봄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 통합 돌봄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46
----------	------

- 발의연월일 : 2021. 7. 6.
- 발의자 : 전재수 · 이장섭 · 양경숙 · 유정주
신영대 · 김정호 · 이규민 · 고영인
전용기 · 이병훈 · 민홍철 의원(11인)

○ 제안이유

최근의 급속한 핵가족화, 고령화 및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 입소하여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이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통합돌봄, 통합돌봄 대상자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마. 통합돌봄의 신청, 조사, 결정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바.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퇴원희망자등의 연계, 상담 및 홍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연계 · 협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아. 전담조직의 설치, 지역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비용 지원 및 부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전문인력 양성,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법률 제 호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돌봄”이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하 “돌봄등”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나.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다. 그 밖의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지원

2. “통합돌봄 대상자”란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가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돌봄등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통합돌봄 대상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존중할 것
3. 통합돌봄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할 것
4.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통합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돌봄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돌봄 관련 부처 또는 기관 등과의 연계 · 협력
 3.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조직 · 운영
 4. 통합돌봄 관련 법령 · 제도의 개선
 5. 통합돌봄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6.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7. 통합돌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통합돌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돌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시 · 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 돌봄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 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돌봄의 신청) ① 통합돌봄 대상자와 그 친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통합돌봄 업무담당자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통합돌봄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등이 다른 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는 해당 기관 등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돌봄 업무담당자는 해당 기관 등에 대한 신청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신청 안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질문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통합돌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및 거주환경
 2. 통합돌봄 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돌봄등에 대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욕구
 4. 그 밖에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통합돌봄 대상자와 그 친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합돌봄 대상자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돌봄의 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통합돌봄 제공 여부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돌봄의 제공 여부 및 내용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 절차, 통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돌봄등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제공 주체
 2. 돌봄등을 제공할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간 연계 방법
 3. 통합돌봄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그 연계 방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기관등에 신청 결과 통보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문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와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별지원계획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결과 통보 등의 협조 요청, 정보의 제공, 평가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누락된 통합돌봄 대상자가 적절한 통합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등으로 인하여 주거에서의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2.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여 장기간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

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원희망자등으로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4. 그 밖에 통합돌봄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입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가 예상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퇴원희망자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통합돌봄대상자가 퇴원 또는 퇴소(이하 이 조에서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퇴원등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퇴원희망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등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통합돌봄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퇴원희망자등의 요청에 따라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의 사실 통보와 신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상담 및 홍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와 그 가족, 보호자 등이 필요한 돌봄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등 및 통합돌봄의 내용·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발굴 및 통합돌봄 홍

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돌봄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통합돌봄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통합돌봄 대상자 및 가족
 6. 지역 주민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

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전담조직의 설치 · 운영)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통합돌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 · 도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 · 도지사는 시 · 군 · 구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 · 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지원 및 비용 부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및 제22조에 따른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통합돌봄 제공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돌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통합돌봄 전문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통합돌봄 전문기관(이하 “통합돌봄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 통합돌봄 대상자 특성 · 유형 분석 및 욕구 평가 기준 개발
 2. 지역별, 연령별 통합돌봄 대상자의 분포 분석 및 추계
 3. 지역 주민의 통합돌봄 필요도 및 지역자원 등 통합돌봄 추진 환경 진단 및 파악
 4. 그 밖에 통합돌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무)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조사, 결정,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발굴, 연계, 정보의 처리 등 통합돌봄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
2. 제12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3.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4. 그 밖에 통합돌봄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별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4946
----------	------

· 발의연월일 : 2021. 12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가. 2020년 10월 16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3월 29일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4월 30일 김형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6.2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9월 2일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11.24.)에 직접 회부되었음.
- 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1.11.24.)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12.2.)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자급목표 달성·유지”를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을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제17조의 제목 중 “연차보고서”를 “연차보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책 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화에”를 “표준화 및 융복합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을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표준화에”를 “표준화 및 융복합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연차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록 3

먹거리 지원 주요 정책 (우리나라+외국)

[생애주기에 따른 식품 지원정책 분류]

구분	임산부	영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생	청년	중장년	노년	다문화
도시락 급식			어린이집 급식	급식 및 간식지원 학교급식			노인대상 공공급식 노인돌봄 전달체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식재료 과일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건강과일 바구니시범 사업			실버건강 식생활사업 (과일·우유 간식도시락)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파키지 제공)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꾸러미	
보충제 제공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교육 프로그램	건강 식생활 실천 국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전체 및 생활터별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교육·상담, 영양관리 프로그램 통한 개인 영양문제 해소, 장기적으로 스스로 올바르게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건강증진 도모)							
	영양 플러스 사업 (교육제공)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관리 (유아종합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 리자원 지원센터 통한 사업)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영양관리사 업			건강위험 개선 위한 맞춤영양 관리사업 (성인특성별, 성별·생활터별, 맞춤형 영양 관리프로그램)	어르신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 영양관리 사업	
	모유수유교실		학교기반 영양관리			실버건강 식생활사업		

자료 : 전희진 외(2021)

[먹거리 지원정책 및 주요법률]

구분	정책 사업	관련 법률
임산부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플러스 사업 어린이집·유치원 기반 영양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어린이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식아동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학교 기반 건강과일바구니 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협력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복지법 (제35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침
성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맞춤 영양 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르신 영양관리 사업 실버건강식생활사업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결식우려노인 급식 프로그램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플러스 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노인복지법 (제4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영양관리 사업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푸드뱅크, 푸드마켓)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제15조, 제19조)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 제10조,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자료 : 연구진 작성

[먹거리와 영양관련 법률 검토]

법률	먹거리/영양 관련조항	시설/기구 설치 조항	먹거리, 영양, 식생활 관련 직접 내용	먹거리, 영양, 식생활 관련 간접 내용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4조 / 국가 및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 책무		x	o	
	제5조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 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농어업인을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개선 사항 포함		x	o	
	제19조, 제19조3 / 고령 농어업인의 생 활안정 지원, 영양개선	제19조3 제2항 / 영 양 취약계층 농어업 인 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치	o	o	
국민 건강 증진법	제3조 / 국가 및 지자체의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책임		x	o	
	제6조 / 국가 및 지자체는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지원		x	o	
	제15조 / 영양개선 - 영양교육사업, 영 양개선 연구 등		o	o	
	제19조 / 건강증진사업 등 - 보건교육, 영양관리 등		o	o	

법률	먹거리/영양 관련조항	시설/기구 설치 조항	먹거리, 영양, 식생활 관련 직접 내용	먹거리, 영양, 식생활 관련 간접 내용	기타
국민 영양 관리법	제3조 / 국가 및 지자체의 국민 건강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대한 책임		o	o	
	제10조 / 영양 및 식생활 교육사업		o	o	
	제11조 / 취약계층 영양관리사업		o	o	
	제14조 /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 제정 보급		o	o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 및 증진에 대한 책임		x	o	
	제22조 / 국가 및 지자체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마련		x	o	
	제23조 /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시책 마련		x	o	
	제27조 / 민간의 참여	정책 여건 조성 차원	x	x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 / 국가 및 지자체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안전 및 영양수준 개선에 대한 책임		o	o	
	제13조 /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		o	o	
		제21조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o	o	
	제24조 /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 평가		o	o	평가지표 산정에 참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책임		x	o	
	제9조 / 국민의 건강 식생활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유지 및 증대		x	o	
	제10조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 제공		o	o	

자료 : 연구진 작성

[미국의 먹거리 보장 정책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내용
비상식품지원 (Immediate Food Assistance)	기아직면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핫라인으로 도움 요청 지역의 푸드뱅크 또는 푸드팬트리(저장소)와 연결
보충영양프로그램 (SNAP: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푸드 스탬프 사업 전자 카드로 야채, 과일, 정육, 유제품, 빵이나 시리얼 등 구매
코로나19 사태 대응 푸드스탬프와 식사제공 프로그램 (Food Stamps and Meal Progra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기존 식품지원 제도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충영양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지원 금액 증액 지급 학교 무료급식 아이들에게 도시락 제공 통해 집에서 식사 가능 지원 프로그램 온라인 등록 시스템 마련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내용
영유아·임산부 대상 영양 프로그램 (WIC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 및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상담 제공
아동 학교 무상 급식 (Free School Meals for Children)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점심제공 프로그램 (The National School Food Program) 아침 제공 프로그램 (The School Breakfast Program) 우유 급식 프로그램 (Milk to children at school) 여름 방학 음식제공 프로그램 (Summer Food Service Program)
노년층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 (Free Food Programs for Seniors)	저소득층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층 파마스마켓 영양 프로그램 (Seniors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노인이 파마스마켓에서 신선한 음식을 살 수 있도록 지원 매달 식품 배달해 주는 식품보충 프로그램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매달 식품꾸러미를 집으로 배달
긴급사태 대응 보충영양프로그램 (D-SNAP Helps With Food Costs After a Declared Disaster)	긴급재난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의 거주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 긴급으로 음식을 보충영양프로그램(SNAP)의 한달 정도의 금액을 지원
코로나19 사태 대응 프로그램 (Food Stamps and Meal Progra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기존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식품지원 대상자가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방법/규모 확대, 유동적 프로그램 운영 SNAP: 보충영양프로그램, 학교 아동급식 프로그램 등

자료 : 전희진 외(2021)에서 수정

[미국 USDA, 아동·성인돌봄 먹거리 정책]

- 정책방향 :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여 먹거리가 불안한 가족에게 먹거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supplemental)의 먹거리돌봄 정책 제공(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점)
- 추진주체 : 미국 농무부(USDA) 내 식품영양국(FNS, Food and Nutrition Service) 소관
- 정책명칭 : 아동·성인돌봄먹거리정책(CACFP, The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 주요특징 : 복지 정책차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먹거리돌봄을 대체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님
- 정책원리 : 먹거리 불안은 가족 단위로 발생하므로 가족 단위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그 자녀들에게 돌봄 먹거리를 보충적으로 제공해야 함
- 지원대상 : 먹거리 불안 가족(아동·성인 대상), 18개 먹거리 불안 측정지표(설문항목) 중 3개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가족(지원대상, 아동과 성인)
- 특기사업 : 여름방학 먹거리 지원정책 (SFSP, Summer Food Service Program)
- 주요내용 :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방학 중 지속적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도록 여름방학 특별(방과후) 청소년 프로그램·캠프 등을 개설하는 지역의 비영리 공공·민간단체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
- 지원방식 : 이 프로그램에 CACFP(아동·성인돌봄 먹거리 정책)는 아동돌봄센터·가족데이케어 홈·방과후프로그램·성인돌봄센터 중 아동·노인·장애인에게 식사·간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현금 지원 (1식 25센트~2.8달러 보조)

- 지원절차 : 농무부 식품영양국이 주정부 재정 지원, 주 교육기관에서 주로 운영을 담당 (Ralston et al., 2017; 이계임 외, 2017)
- 주요의의 : ① 소득수준 기준 취약계층 선발이 아님, ② 정규 학사일정 외에도 돌봄 먹거리 지원(급식단체 아닌 단체에게 서비스 기회 제공), ③ 공동체 시설 이용 경우 비용 변제 등

[일본의 영양 및 식품지원 제도]

지원사업	지원 대상	개요
푸드뱅크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 개인, 농가, 제조업체에서 식품을 제공받아 개인에게 지원
학교급식 우유지원사업	저소득층 가구	· 저소득가구의 우유급식 – 비용 보조 및 낙농산업 진흥
생활보호	생활보호대상자	·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차액을 지원
생활곤궁자 일시 생활지원사업	생활곤궁자	· 일정 기간 숙박, 식사, 의류 및 일상 용품을 대여하거나 제공
아동부양수당	한부모 가정	· 가정의 생활안정·자립
어린이 생활·학습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 어린이	· 방과 후 식사 제공
학생중식지원사업	요보호자 및 준보호자 가구 아동	· 학기 및 방학 중 중식지원
모자영양식품 지원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 우유 또는 분유 지원
어린이 식사 지원사업	지역의 어린이	· 대체로 민간 운영, · 지자체는 어린이 식당 등 공간마련교부금 지원
고령자대상 배식서비스	일상적 식사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 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민간업체 위탁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 제공

자료 : 전희진 외(2021)에서 수정

[EU의 극빈자 지원기금(FEAD: 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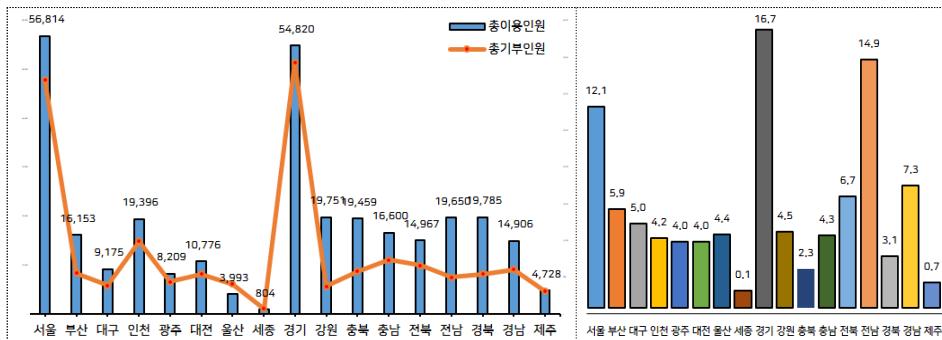
- EU 회원국이 극빈자에게 음식과 필수품을 보급하는 것을 지원(음식, 의류, 비누, 신발 등 개인 필수품 포함)
- 극빈자 지원기금을 통해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걸음 도움(물질적+비물질적, 사회통합 추진)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투자 이니셔티브 플러스(CRII+: Coronavirus Response Investment Initiative Plus) 패키지 일부로 2022년까지 추가 지원 예정

먹거리 지원 관련 주요현황

□ 푸드뱅크 및 무료급식소 현황

- 푸드뱅크 이용자(명) : 서울(56,814), 경기(54,820), 경북(19,785), 강원(19,751), 전남(19,650), 충북(19,459), 인천(19,396), 충남(16,600), 부산(16,153), 전북(14,967) 순 ('20년 기준)
- 푸드뱅크 기부자(명) : 경기(3,425), 서울(3,190), 인천(989), 충남(733), 전북(656), 경남(605), 충북(577), 부산(550), 대전/경북(542), 전남(494), 광주(433), 울산(403), 대구(384) 순 ('20년 기준)
- 무료 급식소(비율) : 경기(16.7), 전남(14.9), 서울(12.1), 경남(7.3%), 전북(6.7), 부산(5.9) 순 ('20년 기준)

[푸드뱅크 기부 및 이용자(명)와 무료 급식소 현황(%)]



□ 아동 및 청소년 급식 현황

- 학교급식(이용자, 명) : 경기도와 서울시에 집중, 경남(382,446), 인천(318,313), 부산(312,939), 경북(262,931), 대구(261,024), 충남(240,154), 전북(204,283) 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경기(13.4), 서울(10.4), 경북(10.0), 전남(8.7), 경남

(8.2), 강원(7.8), 전북/충남(6.5) 순

- 지역아동센터 : 총 4,081개소('19년 기준), 대부분 급식 실시(4,075개소), 미실시(6)

[학교급식 현황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학교 수	1,334	635	456	520	318	304	243	92	2,406
이용자	873,295	312,939	261,024	318,313	184,499	173,305	134,196	48,746	1,476,849
종사자	8,623	3,630	3,262	4,341	2,244	2,428	1,691	703	16,54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학교 수	634	479	721	775	827	926	969	196	11,835
이용자	156,731	173,487	240,154	204,283	193,717	262,931	382,446	80,150	5,477,065
종사자	2,871	2,649	3,915	3,196	3,626	4,566	5,782	1,192	71,268

[지역아동센터 현황(개소,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체 센터	4,081 (100.0)	421 (10.3)	205 (5.0)	194 (4.8)	174 (4.3)	300 (7.4)	139 (3.4)	55 (1.3)	12 (0.3)
급식	4,075 (99.9)	420 (10.3)	205 (5.0)	194 (4.8)	174 (4.3)	300 (7.4)	137 (3.4)	55 (1.3)	12 (0.3)
미실시	6 (0.1)	1	-	-	-	-	2	-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센터	767 (18.8)	164 (4.0)	178(4.4)	230(5.6)	285 (7.0)	368 (9.0)	265 (6.5)	260 (6.4)	64 (1.6)
급식	766 (18.8)	164 (4.0)	178(4.4)	230(5.6)	285 (7.0)	368 (9.0)	263 (6.4)	260 (6.4)	64 (1.6)
미실시	1	-	-	-	-	-	2	-	-

□ 노인복지시설 및 지원서비스 현황

- 노인복지관(시설, 종사자-명) : 시설은 수도권과 광주/대전/울산/세종/제주 제외한 광역 시에 많은 분포, 종사자는 경기(3,370), 서울(2,225), 전북(730), 전남(695), 충북(589), 부산(564) 순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시설-개소) 전북(54), 경남(46), 경기(41), 부산(40), 경북(37), 대구(30) 순
 - (이용자-명) 대구(6,017), 경남(3,912), 경기(3,904), 인천(3,485), 경북(3,468) 순
 - 주야간 보호서비스 및 방문요양 서비스는 수도권, 전라도, 경상도 이용자가 많음

[노인복지시설 및 지원서비스 현황]

구분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전국	398	10,806	385	38,006	1,796	2,321	47,665	23,108	2,656	49,645	41,550
서울	83	2,225	23	2,924	88	433	8,887	4,947	354	5,899	5,779
부산	32	564	40	3,199	119	102	1,981	869	125	2,506	2,112
대구	19	277	30	6,017	150	67	1,256	550	98	1,381	1,315

구분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시설수	이용인원	종사자수
인천	23	417	16	3,485	166	104	2,162	1,014	169	2,436	2,386
광주	9	263	5	295	14	95	2,119	1,327	143	3,048	2,682
대전	8	357	9	778	27	85	1,852	835	95	1,272	1,448
울산	14	193	15	1,358	45	36	682	293	38	917	710
세종	0	0	2	172	6	10	296	132	8	122	230
경기	62	3,370	41	3,904	225	510	10,361	4,956	575	9,436	9,325
강원	16	394	20	1,535	65	106	2,286	1,003	137	4,748	3,101
충북	20	589	19	1,974	108	87	1,779	992	72	740	474
충남	17	252	18	1,400	54	107	2,149	929	124	2,290	1,870
전북	24	730	54	3,390	251	161	3,609	1,518	140	2,855	1,816
전남	29	695	10	195	27	125	2,533	1,152	207	5,559	3,156
경북	21	183	37	3,468	222	137	2,366	1,192	148	2,564	2,230
경남	19	269	46	3,912	229	136	2,961	1,237	205	3,337	2,595
제주	2	28	0	0	0	20	386	162	18	535	321

□ 로컬푸드 및 선한 영향력 가계, 도시농업 현황

- 로컬푸드 직매장(개소) : 경기(93), 전남(62), 충남(60), 전북(56), 경남(50), 경북(45), 강원(43), 충북(33), 광주(24), 울산(22), 서울(20) 순 ('20년 기준)
- 선한 영향력 가계(개소) : 경기(191), 서울(137)에 몰려 있으며, 인천(39), 경북(37), 경남(29), 대구(28), 부산/대전(23), 강원/충북(18), 광주/전북(17) 순
- 도시농업 텃밭(먹거리 생산체계 활용 용이-%) : 서울(24.6), 대전(22.7), 충북(13.6), 부산(12.0) 등의 비중이 높음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개소)와 도시농업 현황(%)]

